



언론중재위원회 2008년도 정기세미나

일 시 : 2008. 11. 21(금) ~ 22(토)

장 소 : 충남 온양팔래스호텔

정기세미나 참석자 명단

- | | | |
|-----------------------|--------------------|----------------------|
| ○발표자 | 심병연 (전북중재부 중재위원) | 유영현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장) |
| 이재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최범서 (전북중재부 중재위원) | 정주호 (연합뉴스 문화부 차장) |
| 성낙송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김은미 (전북중재부 중재위원) | 류 정 (조선일보 사회부) |
| ○사회자 | ○법원「언론법 분야 연구회」 | 강성만 (한겨레 여론미디어팀장) |
| 권혁남 (전북중재부 중재위원, | 안영률 (연구회 회장, | 우종근 (한국경제 편집위원) |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심 훈 (CBS 사회부) |
| ○중재위원 | 한호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여운성 (EBS 인사법무팀) |
| 권 성 (위원장) | 변현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윤종배 (KBS 시청자서비스팀 차장) |
| 노항기 (부위원장) | 한양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임주현 (KBS 법무팀 변호사) |
| 안병준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 김성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안용균 (NHN 정책팀 차장) |
| 박영규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 양현주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김명현 (경남신문 사회부장) |
| 한국연 (서울제2중재부 중재위원) | 김시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 박병선 (매일신문 사회1부장) |
| 정학철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신용석 (수원지법 부장판사) | 한성일 (중도일보 사회단체팀장) |
| 장운환 (서울제5중재부 중재위원) | 장철익 (의정부지법 판사) | 임재업 (충청일보 편집국장) |
| 조원철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 정상규 (수원지법 판사) | 이 봉 (충청투데이 사회1부 차장) |
| 임경록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 민성철 (대구서부지법 판사) | 정기웅 (KBS대전충국 보도팀) |
| 한부환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 이영남 (광주지법 해남지원 판사) | ○사무처 |
| 이 훈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 이종훈 (서울중앙지법 판사) | 김용주 (사무총장) |
| 김용욱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 천지성 (서울남부지법 판사) | 장원상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본부장) |
| 이동근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 박기쁨 (서울중앙지법 판사) | 정희성 (제도연구팀장) |
| 문영화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 배예선 (서울남부지법 판사) | 권오근 (조사분석팀장) |
| 이광재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 ○언론계 | 여종국 (제도연구팀 차장) |
| 박석태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 김정섭 (경향신문 미디어팀) | 여운규 (홍보팀 차장) |
| 어수용 (충북중재부 중재위원) | 윤구현 (매일경제 문화부장) | 최명진 (제도연구팀) |
| 이호성 (충북중재부 중재위원) | 오희연 (서울신문 법조대기자) | 김정민 (기획팀) |
| | | 임미숙 (제도연구팀) |

〈제1주제〉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변화와 법적 쟁점

1. 문제제기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은 전례 없는 언론자유 의 가능성을 가져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표현 촉진적 매체이고 참여적인 시장으로 인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99헌마480 결정), 인터넷은 기존의 공간과 시간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박익환·장용근, 2005). 그러나 동시에 기술적 발전에 따르는 역효과로 인하여 수많은 법적 쟁점들을 야기하였다. 즉 인터넷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범주의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하여 새로운 사상의 자유시장(new marketplace of ideas)을 창조하였고(박용상, 2008, 1219쪽)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인 공유, 참여, 결사 그리고 공동의 신념구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졌으나(Carey, 1989), 갠디(Gandy, 1994)가 일찍이 예견한 바와 같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기보다는 불법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재 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물론 인터넷을 단순히 불법의 바다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못한 생각이며, 비록 부분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들도 있다(김경년·김재영, 2005; 김은미·이준웅, 2006).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은 우리가 더욱 민주적인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진, 2006).

그럼에도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이 크게 신장하였고, 인터넷 댓글로

- ☐ 미 서튼윌리노이대 박사
- ☐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 ☐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행성 사업이 번창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해 지자 인터넷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겠다는 움직임도 이러한 측면을 방증하는 것이다(중앙일보 2008. 10. 6.).

인터넷상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의 이유 중의 하나는 인터넷상의 언론의 생산과 유통 과정이 기존의 신문과 방송 매체의 그것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틀이 무너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은 기존 매체의 구조적 속성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았다(박선영, 2000a). 이와 함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지던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전처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콘텐츠의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과 전파까지 담당하던 구조 하에서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인 언론사와 정보소비자인 피해자 사이의 법적 쟁점을 해결하면 되었기 때문에 법적 해결의 당사자는 명확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그 역할 또한 혼재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이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해결구조를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명확한 분쟁의 양당사자 간의 문제해결 구조에서부터 그 법적 책임의 정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관련되는 다자 간의 문제해결 구조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들은 예를 들어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OSP의 책임, UCC 저작권 분쟁, 정보에 대한 삭제

권한 여부, 그리고 반론권 적용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하여 기존의 법조항을 개정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기존 매체와 같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매체의 기술적 발전이 가져온 언론 환경의 변화를 재검토하고, 이로 인한 법적인 분쟁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매체의 발전에 따른 분쟁의 해결은 어떠한 철학적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보 매개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터넷 포털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묵은 기사의 삭제에 둘러싼 논의,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피해구제 방식으로서의 반론권 적용상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2. 인터넷 포털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

전술한 바와 같이 한 정보제공자가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파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기존 매체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때 그 책임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묻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했다. 즉 정보제공자가 생산, 유통, 전파한 정보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제공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미디어와 1인 미디어라고 불리는 블로그가 출현하고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정보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매체와 같이 정보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져야 되는가, 그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문제가 복잡한 법

정보의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변화는
법적 문제 발생 시,
그 해결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적인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즉 문제가 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생산한 원래 행위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를 매개하고 전파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포털 미디어의 경우에는 기존 언론의 정보를 계약을 통해 수신하고 이를 매개해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통적인 정보 생산, 유통, 전파자인 신문과 방송 등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터넷 포털 미디어가 언론이나 아니냐 하는 '언론성'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만일 인터넷 포털이 언론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언론매체와 유사한 책임을 지게 되며 이와 관련한 법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만일 언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한 전기사업자와 같은 수준에서 그 책임이 규정된다. 이때 관련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최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매체의 뉴스 콘텐츠가 결집되고 인터넷상에서의 뉴스 소비가 포털에 집중되면서 포털의 저널리즘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조규철, 2007). 포털 사이트가 자신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해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언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기존 언론과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규율하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 모두에 각각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포털은 저널리즘과는 무관한 단순한 뉴스 매개자 또는 전달자라는 시각에서부터 포털은 언론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주요

한 담론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다.

1) 긍정론

먼저 포털의 언론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털의 저널리즘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포털에서의 '뉴스 소비'를 탐색적으로 고찰한 한 연구는 포털이 의제 소비 단계에서 잦은 접속과 이탈을 거듭하는 '단발성 매체'로 '의제 소비의 선차성'을 띠고 있으며, 포털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됨으로써 뉴스 제공자와 뉴스의 관계가 분리되는 '탈 미디어적 뉴스 소비'의 징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포털이 실천적 저널리즘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임종수, 2006).

이와 유사하게 조규철(2007)은 뉴스가 그것을 생산하는 원래 미디어로부터 분리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포털의 뉴스 재매개 환경 자체가 뉴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매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임종수(2004)도 변화된 저널리즘 환경 하에서 중요한 것은 매체가 어떤 뉴스를 생산하는가가 아니라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가 아니라) 뉴스가 어떤 유통과정(통로)을 통해 최종 소비자와 만나는가(누가 뉴스를 매개하는가?)라고 보았다. 문제는 이 새로운 포털 저널리즘의 대중성을 어떻게 진지한 공론장(public sphere)으로 연결해낼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포털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뉴스 유통과 소비구조가 과연 저널리즘이나 아니냐는 본원적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그것의 실질적인 형태와 대중적 영향력을 냉철하게 분석해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회완(2006)은 인터넷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을 변경'함으로써 기사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의제설정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포털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에서의 뉴스 소비는 포털의 뉴스 편집인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되고, 게이트키퍼의 결과물로서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박스'가 네티즌들의 1차 의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최민재 · 김위근, 2006), 그리고 사회적 '주요의제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이재진 · 상운모, 2008)도 인터넷을 언론으로 인정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포털은 이미 언론으로서 기능과 의제 설정, 뉴스 선별 등의 편집과 기사의 공표(publishing)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송경재, 2006).

한편, 유승현과 황상재(2006)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영역에서 논의되었던 뉴스 프레임분석을 포털 미디어에 적용함으로써 포털 미디어가 사회적 갈등 현상이 발생했을 때 특정 프레임을 선택하여 뉴스 이용자의 인식과 사고를 틀 지우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포털이 부분적으로 프레임링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포털 뉴스의 저널리즘적 성격을 긍정하고 있다.

뉴스의 재매개 역할이 언론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입장도 있다. 황용석(2006)은 인터넷 포털이 비록 제한적인 편집기능을 갖지만 기존 언론이 만든 '뉴스의 재매개' 활동 자체가 뉴스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게이트키퍼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해서 매기와 리(Magee & Lee, 2007)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 기사의 원래 출처는 상관없이 '야후'(Yahoo)와 같은 뉴스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를 해당 포털의 뉴스선정기준에 의해 선

택된 해당 사이트의 뉴스로 인식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뉴스 포털의 조직과 편집자적 역할이 그들을 신문사들과 유사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기사에 헤드라인 달기, 콘텐츠에 가해지는 카테고리 분류나 인기기사에 대한 별도의 소개와 같은 주변 콘텐츠(peripheral content)의 제공, 그리고 기사 내용의 수정과 같은 행위는 콘텐츠의 변형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격권 침해로부터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명예훼손으로부터의 면책은 사람들이 사용한 기술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행한 행위의 성격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 부정론

그러나 인터넷 포털의 언론성을 부정하는 시각들은 언론성을 긍정하는 지적들에 대해서 언론의 정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황성기(2007a)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다른 매체들과의 차별성을 갖는 요소는 '독립적인 취재 및 기사제작'과 '실질적·내용적 편집통제권'인데 인터넷 포털은 이러한 요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인식하는 언론으로 수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한다. 즉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매체'에는 해당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뉴스의 취합과 선별을 통한 편집 기능만이 아니라 '고유의 보도와 논평'을 필요로 하는데, 포털 뉴스는 정보 전달이라는 보도 기능 이외에 자체적 논평이 없다는 점에서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구본권, 2005). 한편, 박정훈(2000)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는 단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포털의 언론성에 대해선 '실제 의제설정 기능을 하고 있다'는 긍정론과 '내용적 편집 통제권이 없다'는 부정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으나 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한 입장 차이는 크지 않아

‘온라인 상거래’ 혹은 ‘단순한 온라인상에서의 뉴스 제공’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지칭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1997년 일단의 미국 언론인들은 ‘저널리즘을 염려하는 언론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간 3,000여 명이 참여한 작업 끝에 정리한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Basic Elements of Journalism)에서, 커뮤니케이션·미디어·정보라는 말이 홍수를 이루지만, 정작 저널리즘의 역할은 위축되는 역설이 왜 빚어지는지에 대해 자문하고, 저널리즘 스스로 소홀히 한 ‘기본’이 무엇인지를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으로 제시된 요소 중 하나에 저널리즘의 본질은 ‘검증의 규율’이라고 밝혔다.¹⁾

이러한 위원회의 견해를 따를 경우, 현재 인터넷 포털들은 기존 언론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정도의 자체적인 검증을 기사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따라서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²⁾

즉 인터넷 포털이 언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 확인과 검증 기능이 없는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매일경제 2006. 6. 27.).

유사한 맥락에서 정상우(2007)는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 전통적인 취재의 역할이 줄어들고 반면 수많은 정보들을 엄선하여 제공함으로써

써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진 현실임을 볼 때, 변형된 혹은 확대된 언론의 범주에 포털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포털 사이트가 가진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언론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고 독자적인 편집과 취재를 하는 기존 언론매체보다는 면책의 범위가 넓은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참여와 공유로 대변되는 Web 2.0 시대에 적합한 뉴스 서비스 형태로 평가받는 구글(Google)의 뉴스 서비스처럼 웹로봇에 의해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수집된 뉴스를 기계적인 검색을 통해 해당 언론사의 원래기사로 직접 연결시켜 주는 경우에도 포털 뉴스 서비스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가 지금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지는 아직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포털로 인한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이재진·상윤모, 2008).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인가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격권의 침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같은 반대되는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익형량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그래서 기존의 매체와

1) 동아일보 2006년 3월 24일자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3240164>)

2) 글리슨(Gleason, 1990)에 의하면, 언론은 정치권력의 협조자로서보다는 독립적인 제 4부로서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감시견이어야 한다고 한다. 포털의 언론기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포털이 담당하는 역할을 보면 포털 사이트에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기존 언론에서 생산해낸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와 논평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매체로 포털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존 매체에 적용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이때 무리하게 기존 법을 강조하기 보다는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으로 우선 포섭을 하고, 차후에 인터넷 포털의 성격을 반영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

우리 법원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는 소위 ‘전여옥 의원 판례’와 동 판례의 제2심 판결, 그리고 소위 ‘변심 애인 판례’를 들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전여옥 의원 판

<표 1> 포털 뉴스 서비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 관련 판례

판결일자 및 법원	판 시 사 항	판결 요지(명예훼손 판단관련 부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잘못된 보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포털 사 이트의 면책 여부	•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로서는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 • 기사 제공 업체와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포털 사이트 측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 할 사유에 불과하고,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잘못된 보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포털 사 이트의 면책 여부에 관한 2005가단18300의 상급심 판례임.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 두 기각)	•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의 핵심요소인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기능을 두루 갖추었으므로 언론매체에 해당함 • 네이버의 위법성조각 주장과 관련하여, 사건 기사의 경우 공익성은 인정되나 진실에 반하고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도 없어 위법성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포털 사이트의 뉴스, 지 식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원고에 대한 명 예훼손 책임을 부담하는 지 여부	•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 •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 기사 밑에 네티즌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점 • 언론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 점 •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문제된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기사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포털 사이트의 언론성 여 부에 대한 판단. 2005가합 64571의 상급심 판례	•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함 • 배포의 면에서 기사전달은 물론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 기사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형성 유도 • 편집의 면에서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사회·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화제성·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 필요시 기사의 제목을 변경 • 취재의 면에서 언론사들도 통신사에서 공급받는 뉴스를 자사에서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므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됨 • 명예훼손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글을 즉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 피해발생의 예견가능성 인정, 침해행위의 회피 가능성 부정,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기능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식적 측면에서는
포털의 언론성을 인식

례'의 제2심 판결에서 법원이 포털 사이트가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바 있으나, 그러한 판단이 언론매체의 성격을 규정짓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포털 사이트가 가진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판결에서 나타난 법원의 판단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법원은 포털 사이트가 언론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털이 언론행위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내린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비록 2007나60990판결에서 언론의 요소를 배포, 편집, 취재로 보고 포털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의 언론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에까지 논의하고 있기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언론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판례가 집적되면서 그 해석도 명확해지리라 생각된다.³⁾ 명확한 것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⁴⁾

황성기(2007b)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판단 시 고려할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례⁵⁾와 '변심 애인 판례'를 비교분석한 후, 후자의 경우 책임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모든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발생을 전제

3) 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특성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털 사이트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검색, 이메일 서비스를 비롯하여 뉴스, 블로그, 길라잡이 사이트로 설계된 페이지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속하도록 분야별 연결주소나 최신 뉴스, 일기예보, 스포츠 정보 등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화제가 게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포털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서비스란을 두고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으로부터 뉴스 기사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받아 이를 배치하여 네티즌이 열람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검색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사이트 홈페이지 및 서브페이지 상에 광고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포털 사이트는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 언론이나 신문법상의 언론에 해당하지는 않고, 부가통신사업자 내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되고 있다.

4) 미국의 경우 '통신품위법' 제230조상 '선한사마리아인 조항'의 해석을 놓고 판례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 판례가 양적으로 적으며, 아직까지 포털 사이트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손해배상(기)】[공2003.8.1.(183),1611])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실시한 요건을 완화시키거나 혹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넓게 인정해 버렸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판결에서는 상기 책임 발생 요인과 책임 제한 요인을 일별한 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판결문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소위 '변심 애인 판례'에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사에 따른 댓글, 검색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 등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포털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러한 자료들이 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보 매개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 사이트에게 상시적인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적검열을 부추길 것이고, 중국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언론의 자유로운 유통과 정보의 공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박용상, 2008; 이재진, 2006).

이에 대해 박용상(2008)은 종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피해자로부터 관련 정보 삭제제를 요청받은 후에만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포털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포털에게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들고 있는 책임발생요인들이 너무 막연하여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인격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통지나 구제청구가 있거나, 포털이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이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이에 대한 조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인석(2002)은 우리 대법원 판결(2001다36801)의 요지는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책임을 인정하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조화점을 찾으려는 고민이라고 보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서 '예견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⁶⁾

3. 목은 기사의 삭제 요청에 관한 논의

인터넷상의 변화된 정보 생산, 유통, 전파 구조의 특성 중의 하나는 정보 저장 능력의 확장으로 인한 정보의 영속화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기존의 매체는 그 유효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정보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읽거나 시청한 후 며칠 또는 길어야 몇 개월이면 다시 찾아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개 잊혀졌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일단 정보가 게재되면 그 유통기한은 따로 없이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몇 년 심지어 수 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정보가 재생된다. 이러한 인터넷의 저장능력의 확장과 퍼나르기 등의 기능은 자칫 인격권 피해를 영속화

6) 이인석(2002)은 2001다36801판례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 의무 판단 시 피해자로부터의 통지만으로는 바로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요구를 근거로 삼은 것은 그 통지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 될 경우에만 예견가능성이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묵은 기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삭제요청이 수용되어야, 그러나 삭제요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접 관련된 판례도 아직 없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에 관한 특칙에서 수용되는 반론권이나 ‘고침’, ‘바로잡음’ 등의 피해구제절차로는 해결될 수 없다. 지속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관련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 특히 관련 정보가 범죄와 관련되거나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1) 삭제 요청의 근거와 언론사의 대응

삭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언론 환경이 변화하면서 DB화 된 인터넷 신문이나 포털 그리고 개인 블로그 등에 정보가 영속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⁷⁾ 정보가 개인의 인권침해와 직결되

며 범죄와 관련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처벌을 받는 이중의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⁸⁾ 그리고 언론의 보도 태도나 방식이 변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해 관행적으로 피의자나 범죄자를 실명으로 보도하지 않는 점⁹⁾ 등을 들어서 삭제요청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재진·구본권, 2008).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적 공간에 복사된 기사들에 대해서 기사 관련자가 공식적으로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황용경, 2005).

이러한 삭제 요청에 대해서 정보제공자인 언론사들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치를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한다. 언론사는 무엇보다 묵은 기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삭제 요청의 수용은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⁰⁾ 좀 더 구체적으로 언론사는 인격권을 침해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사가 아

7) 한국언론재단 기사데이터베이스(www.kinds.or.kr)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절도 & 구속’으로 검색한 결과 표출된 수많은 기사 중 한 건(아래)은 10여 년 전 당시 신문기사의 사생활 침해 수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순 절도 범죄에 불과한 기사에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 거주지 및 전과 누범사실을 비롯해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 나이까지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특정 신문만의 경우가 아니라, 당시의 모든 신문에 해당하는 사례다.

‘가전제품 상습절도’ [한국일보, 1991-01-13 22면]

서울시경 특수대는 12일 김○○ 씨(35·전과4범·서울 영등포구) 등 2명을 상습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 씨(26)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고향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7일 상오 10시께 경기 부천시 중구 강○○ 씨(30) 집의 잠긴 문을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VTR 1대를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8백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다.

8)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이중처벌 금지를 밝혀놓았다. 아울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전과기록과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9) 우선 법원은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죄판결 확정 전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1999년 1월 대법원은 소위 ‘산업스파이 오보 사건’에서 수사 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시키려면,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등과 이로 인한 권리 침해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1999.1.22. 선고 9710215 판결). 이 판결 이후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관행이 개선되고 사건 당사자의 실명 보도에 관한 기준 또한 상당히 엄격해졌다(이재진, 2006).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언론이 정보원에 접근할 권리와 취재내용을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함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밝혀놓았다.

나라면 기사 내용이 사실을 보도하며 일종의 사료로서의 기록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삭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그 시한이 지난 기사의 경우에는 청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¹¹⁾ 사실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없는 경우에는 기사는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¹²⁾

또한 언론사는 비록 삭제 요청이 타당성이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현실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한다. 즉 법적 근거가 만들어 지고 언론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삭제 가능한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이재진·구본권, 2008), 삭제를 위한 청구 대상의 기한을 어느 정도까지 잡을 것인지 명확치 않으며, 과거 기사 삭제에 따르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와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포털 등을 통해서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면 인터넷의 속성상 한 곳의 기사, 예를 들어 언론사의 DB에 남아있는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실제로는 별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고 피력한다. 결국 언론사는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삭제는 어렵다고 인식한다(이재진·구본권, 2008).

아울러 언론사는 기사에 대한 법의 모순적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즉 묵은 기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

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으며, 비록 언론사가 공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기사는 행정적 효력을 갖지 않은 사적 기록물로서 사적 소유의 성격을 띠며, 대개 기사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내용이며(박용규, 2001), 아울러 언론보도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은 채 법률적 논의와 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법률중심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언론의 본질적 속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법리적 해결책의 모색

피해자와 언론사의 상충되는 견해를 비교형량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요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묵은 기사(과거 기사)를 삭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법리적 검토가 쉽지 않은데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논의와 판례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터넷에 올라간 기사가 형법상의 처벌이 종료된 이후에도 잔존하여 이중처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 재판을 통해 형사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 국가 기관이나 언론 등에 의해 성범죄 내용이나 신상이 공표되거나 보도되는 일로 인해 이중처벌 논란이 벌어진 경우가 있었으며(박용상, 2003a; 2003b), 또한 2003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에 있어서도 이중처벌 논란은 계속되었다.¹³⁾

법률상(형법) 우리나라는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죄추정원칙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죄 등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법규정은 언론의 핵심적 기능인 보도를 통한 사회감시라는 공적 기능과 충돌하는 경

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12) 우리 대법원은 사실성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표된 사실이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사한 바 있다(1999.1.26. 선고 97다10215/97다10222 병합).

13)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미와 배경', <문화일보>, 2001년 8월 30일; '성범죄 신상공개 합헌 의미와 배경',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26일.

범죄 관련 목은 기사에 대해서는 이중처벌,
과잉처벌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 무죄 추정
원칙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우가 많다(이재진, 2006; 박선영, 2003). 즉 기록 매체의 역사적 속성이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적 법익의 보호와 충돌하게 됨에 따라 기사의 삭제 요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은 기존의 쟁점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피의사실 게재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04년 6월 26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위헌 심판 청구에서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2003.6.26. 선고 2002헌가14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무방한데, 이는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보다 공익적 요청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현재의 결정에 대해서 재판의 공개가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 보장의 목적을 띠므로 형벌 사실의 공개가 위헌이며(김경제, 2003; 2004), 신상공개가 당사자에게 창피를 주려는 목적이므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문재완, 2003)과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범죄자 신상공개는 형식적인 면에서 형벌로 볼 수 없다는 지적(김상겸, 2003)이 대립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실명보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으로 추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인격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지적(류승삼, 1992)과 형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실명으로 보도되어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은 법에 의한 처벌보다 더욱 가혹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박용상, 2003a; 2003b). 이러한 점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1998년 판결(소위 '남편 폭력 청부사건')에서 범인과 혐의자에 대한 보도는 범죄 자체에 대한 보도만큼 공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기사 게재의 경우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에도 언론의 과거 기사 유통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정보공개라는 측면과 함께 동시에 이중처벌 또는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떠한 기본권이 더 중요한지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인터넷 게재는 피의사실 공표죄와 무죄 추정 원칙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범죄수사를 통해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의 보도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관심사로 인정되는 사안에 관해서는 일상적으로 피의사실이 보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이재진, 2006). 이러한 피의사실에 관한 기사가 인터넷에 실리는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공개수사가 필요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 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가질 사항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박선영, 2000b)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가 생산, 유통, 전파되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나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보다 이를 조정할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

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는 언론사별로 자율적으로 내부적 기준을 설정하고 독자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과거 기사의 삭제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판단해 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뉴욕 타임즈>의 경우 퍼블릭 에디터를 중심으로 비록 역사적 기록의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는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하는 등의 문제해결책을 세워나가고 있다(Hoyt, 2007).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과거 기사를 수정 및 삭제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종이신문에 실린 글은 수정이나 삭제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인터넷에 실린 글을 전자적 정보로 인정하여 수정, 삭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근거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제10조)과 형실효효상의 과잉처벌 금지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언론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 근거하여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간의 비교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형이 집행된 이후에도 과거의 피의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형기를 마친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면이나 복권과 같은 법률적인 절차의 효과는 무의미해지며 동시에 행복추구권도 적용되지 못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들이 이 정보에 대해 무한한 접근의 자유를 누린다면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¹⁴⁾

4. 인터넷 반론권 적용상의 논의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파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언론분쟁은 이제 더욱 증가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인격권 침해를 신속하고 조화롭게 구제해 줄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중재법상 인정되고 있는 반론권 제도 적용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⁵⁾

14) 인터넷으로 인해 새로이 생겨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권리의 개념화와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해 이재진과 구본권(2008)은 프라이버시의 확장된 개념으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법제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프라이버시권이 개념화되고 법제화되기 시작한 19세기 말엽의 경우에는 '간섭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 충분했으나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기사화 되지 않고 기사화 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로 수정이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인 '잊혀질 권리'가 개념화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또한 H. Kato 등이 주장하는 커뮤니케이트권의 일부인 'right not be communicated' 개념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인의 정보가 타인들에 의해서 이용되거나 소통되지 않도록 할 권리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유일상(2007), 『언론윤리법제론』, 서울: 박영사]

15)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반론권은 현재 유럽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다(Lee, 2008). 각 국은 각 국의 상황에 맞는 인터넷 반론권 제도를 형성해 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네소타대 실하연구소(Shilha Institute, 2003)에서 유럽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볼 수 있듯, 인터넷에 반론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인터넷 운영자는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 필자에게 수정을 강요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전검열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막는 장벽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인터넷에 반론권을 인정한다면 표현행위에 위축효과(chilling effects)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흐름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힘들어지며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권 관련 규정은
기존의 방송·신문 등 매체와 동일, 매체적 특성을
반영한 반론권 행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 있어**

1) 반론권 적용의 요건

인터넷 신문이 종래의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방송과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의 대상이 된 것은 2005.1.27. 제정·공포되고 2005.7.28.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하 언론중재법)에 의해서다.¹⁶⁾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반론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언론중재법상 인터넷 신문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의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 즉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¹⁷⁾ 이에 따르면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신문에 포함되지만 종속형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이나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¹⁸⁾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하는데 있어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으며(제14조 제2항),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요하지 않는다(제2조).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고(제14조 제3항), 피해자는 반론권 청구에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26조). 만일 언론사가 피해자와 반론보도에 합의하게 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론보도를 방송 또는 게재해야 한다(제15조 제3항).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인터넷신문의 반론권과 관련된 규정은 기존의 신문·방송과 유사하다. 이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에 기존의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에 단순히 인터넷신문을 추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절차나 적용에 있어서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인터넷에서 제대로 반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2) 반론권 조정 신청 및 문제점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이후, 2005년에 47건이던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16)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언론기본법,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에 규정된 ‘중재’는 실제로는 ‘조정’이었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의 ‘중재’는 ‘고유한 의미의 중재’와 ‘조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7) 신문법 시행령 제3조는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것”을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8) 황용석·강원(2001), 『언론사 닷컴:현황과 과제』, 서울:한국언론재단, 163~169.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뉴스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많다. 또 뉴스의 주제가 제한적이지만 심층적인 경우가 많다.

포함한 조정 신청 건수가 2007년 11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잡지, 뉴스통신에 대한 조정신청 건수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무엇보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에 있어 2007년의 경우 조정성립률은 38.9%, 피해구제율은 65.0%로 전체 매체의 피해구제율 64.8%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2007년도 합의 44건 중 반론보도문 게재를 전제로 한 것은 30건이다.

조정신청인 별로 분류했을 때 일반인이 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업과 단체가 각각 16건, 공인 9건 등의 순이었다. 여기서 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청인들은 부읍장, 하위직 경찰관, 영화감독, 교장, 그리고 국회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나 정부가 신청한 경우에 국회의원이 6건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 3건, 정부기관 1건 등으로 나타나 수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매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반론권을 남용한다는 지적과는 다소 어긋나는 것

이다. 기각 또는 각하된 10건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6건), 인터넷신문이 아니어서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2건), 보도 내용의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경우(2건) 등이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반론보도·정정보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명확한 것은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존의 매체와는 그 게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문의 내용, 크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성립된 것은 30건으로, 반론(정정)보도문 보도(게재) 형식은 기존 신문·방송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게재 시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신문·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가 보도 횟수와 보도문의 크기를 중요시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사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게재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는 반론(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 간

<표 2>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 처리 결과

연 도	청 구 수	처 리 결 과									피해구제율 (%)
		조 정 성 립	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동의	이 의	계 속						
2005	48	15		2		13		6	12(10)		59.5
2006	77	34		2		13	5		23(18)		72.2
2007	113	44				22	5	5	37(23)		65.0
계	238	93		4		48	10	11	72(51)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에 같은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19) 피해구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조정성립된 경우, 조정에 같은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 중 양 당사자 이의 없이 동의된 경우, 취하, 조정불성립 결정 또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조정에 같은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 중 정정이나 반론보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피해구제율은 이 피해구제 건수를 기각·각하 건수를 제외한 조정 건수로 나눈 것이다.

인터넷 특성에 맞는 반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게재시간, 글씨체, 원 기사와 링크 등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조정성립 된 30건 중 13~24시간이 17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24시간 초과~48시간 이하 3건, 48시간 초과~72시간미만 4건, 72시간 초과 3건, 12시간 이하 1건으로 집계됐다. 1개월 동안 게재하기로 조정성립 된 것도 1건 있었다. 게재 날짜만 지정하고 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시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1건이 있다.

둘째, 게재 위치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쇄매체의 경우 원래 기사가 게재된 곳에 반론문을 실는 것이 원칙이다.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에서 몇 번째 꼭지에 반론문을 보도하느냐가 중요하다. 연구결과 인터넷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초기화면에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 것이 19건이다. 단순히 초기화면에 게재하기로 조정성립 된 8건을 합치면, 모두 27건의 반론보도문이 초기화면에 게재된 것이다. 나머지 3건은 게재 위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원 기사가 초기화면이 아닌, 하위 메뉴에 배치된 것과 상관없이 초기 화면에 반론문을 게재하기로 조정성립 된 것은 피해의 심각성을 양 당사자가 함께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을 주로 배치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인터넷에 저장된 원 기사에 반론보도문을 링크하도록 조건을 추가로 다는 경우가 11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매체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반론권 부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글자 크기와 자체(字體)이다.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원 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하고 본

문은 원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게재하기로 조정성립 된 것이 18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12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신문의 경우 다른 매체와 달리 글자 크기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크기와 아울러 자체에 대한 논의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의 경우 동일 화면이라 하더라도 글자 크기가 다르고, 고딕체나 또는 명조체냐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는 글자 크기와 함께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반론보도문의 자수(字數)이다. 반론보도문의 그 내용 못지않게 자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자수가 반론문 효과의 기본적인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91조 제5항은 “방송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쇄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원문 보도보다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석 결과 조정성립에 이른 30건 가운데 300자 이상의 보도문이 게재된 것은 3건이며, 이 중 가장 긴 것은 740자에 이른다. 참고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소송과 관련해 반론(정정)보도문 판결 40건을 분석한 결과 글자 수가 300자 이하가 25.0%이며, 301~400자가 42.5%, 401~500자가 12.5%로 나타났다.²⁰⁾ 이는 인터넷신문이 기사를 게재할 공간적 제

20) 언론중재위원회(2008).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 57쪽.

약이 다른 매체에 비해 덜하다는 점에서 장문의 보도문이 게재될 여지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보도문이나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취하한 후에 게재된 반론(정정)보도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사 삭제 요청이다. 기존 매체에서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삭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30건 가운데 10건이 삭제를 전제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중 1건은 다른 요구사항 없이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성립이 이루어졌다. 또 4건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제의 기사를 삭제하는 동시에 이 기사가 게재된 포털 사이트에서도 기사를 삭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강한 정보 전파력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 매체 운영 기술상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권리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이재진·구본권, 2008).

이러한 견해 이외에도 현재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권에는 이미 기존 매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반론권 청구 자격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정도 문제, 포털 사이트에 대한 반론권 적용에 있어서의 기술 및 효과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인터넷 중재부를 두는 것을 포함해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권 쟁점은 기존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포털 사

이트를 포함해서 점차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반론권 청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5. 요약 및 결론

기존의 언론관련 법제는 언론사 중심의 정보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래서 언론사가 생산하고 유통한 정보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사의 특징인 보도의 광범위성, 신속성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패러다임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즉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주요 정보 생산자였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졌으나, 현재는 개인들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포털처럼 단지 정보를 매개할 수도 있는 환경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인터넷 매체가 처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의 '언론성' (언론여부) 논의, 묵은 기사 또는 과거 기사의 삭제 청구권 논의,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의 반론권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와 같은 쟁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개정과 판례의 집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통합인터넷법을 만들어 인터넷 매체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법을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도록 적절히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는 현재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명확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

**향후 인터넷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이를 전담하는 전문 중재부의 설치도
생각해 봐야 할 시점**

을 당분간은 계속해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비록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법원은 점차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저널리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편집, 취재, 배포의 요인을 통해 고려컨대 언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문법과 언론법의 통제를 받으며, 아울러 반론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개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오래된 정보(특히 묵은 기사)에 대한 삭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나 운영자의 자발적인 조치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래된 정보나 묵은 기사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가 영속화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반론권의 행사도 인터넷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서 반론권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실행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인터넷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전담하는 전문 가들로 구성된 중재부를 중재위원회 내부에 별도로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결론적으로 기존 매체와는 다른 생산, 유통, 그리고 전파 체계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언론중재법을 적절히 개정하는 것이 시급

한 일이다. 그러나 그 개정은 가장 표현 촉진적 매체인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영향력으로 인해 침해되기 쉬운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적절한 비교형량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매개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포털이 뉴스를 공급받아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한 행위와 의도를 고려하여 책임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뉴스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오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우의 구제책은 비교적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인격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거나, 온라인상의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우의 구제책을 체계적·통일적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인터넷 포털에게 지나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려는 태도는 자칫 인터넷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

〈참고문헌〉

- 구본권(2005).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뉴스가 되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경년·김재영(2005). 오마이뉴스 독자의견 분석. 난장으로서의 공론장 가능성 탐색. 『한국방송학보』 19(3), 7-40.
- 김경제(2003). 평등권·평등원칙의 검토방법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공법연구』, 32권 4호, 92~112.
- 김경제(2004). 과잉금지의 원칙의 검토방법. 『사법행정』, 45권 3

- 호, 24~37.
- 김상겸(2003).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 합치여부를 중심으로.『헌법학연구』, 9권 4호, 175~203.
- 김은미·이준웅(2006).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65-94.
- 임종수(2004). 미디어로서 포털.『한국언론학회 2004 가을철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 류승삼(1992). 실명보도와 인권.『언론중재』, 43호(여름), 28~37.
- 문재완(2003).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 미국의 매간법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헌법학연구』 9권 2호, 333~369.
- 박선영(2000a). 인터넷 신문·방송과 반론보도.『언론중재』, 74호.
- 박선영(2000b).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공법연구』 제28집 2호, 159~180.
- 박선영(2003).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헌법학연구』, 9권 4호, 152~168.
- 박용규(2001). 한국 신문 범죄 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156~185.
- 박용상(2008).『명예훼손법』.서울:현암사.
- 박용상(2003a). 범죄 보도와 익명 보도의 원칙 1.『언론중재』, 88호(가을), 68~86.
- 박용상(2003b). 범죄 보도와 익명 보도의 원칙 2.『언론중재』, 89호(겨울), 36~53.
- 박익환·장용근(2005).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세계법학연구』, 11권 2호, 114~128.
- 송경재(2006). 포털의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네이트, 다음 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사회이론』, 봄호, 178~210.
- 유승현·황상재(2006). 포털미디어의 뉴스 프레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디어 다음,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비교를 중심으로.『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호, 197~232.
- 유일상(2007).『언론윤리법제론』. 서울: 박영사.
- 이민영(2007). 초점: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정보통신정책』, 19권 12호, 1~23.
- 이인석(2002).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저스티스』, 67호, 175~201.
- 이희완(2006).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목 바꾸기로 뉴스의 진정성 하락.『신문과 방송』, 2월호, 128~132.
- 이재진(2006).『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재진·구본권(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한국방송학보』, 22권 3호, 172~212.
- 이재진·상윤모(2008). 매개된 뉴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 방안 연구.『방송연구』, 13권 1호, 265~296.
- 임종수(2006). 온라인 뉴스 양식과 저널리즘의 변화.『커뮤니케이션이론』, 2권 2호, 37~73.
- 조규철(2007).『포털 뉴스의 의제설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와 다음의 메인 뉴스 박스 기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민재·김위근(2006).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제공된 뉴스와 선택된 뉴스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437~464.
- 황성기(2007a).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 2007-1, 197~232.
- 황성기(2007b).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 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호, 149~190.
- 황용경(2005).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언론중재』, 97호(겨울), 108~115.
- 황용석(2006). 한국 온라인저널리즘 연구의 주제와 접근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커뮤니케이션이론』, 2권 1호, 128~169.
- 황용석·강원(2001).『언론사 닷컴: 현황과 과제』. 서울:한국언론재단. Gandy, O. H.(1994). "The information of superhighway as the yellow brick road," The National Forum, 74(2), 24~28. Hoyt, C. (2007). When bad news follows you, New York Times Public Editor Column, 2007.8.26. (<http://www.nytimes.com/2007/08/26/opinion/26pubed.html>)
- Lee, J. (2008). "The right of reply," 4411~4415, in Wolfgang Donsbach(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Vol. X. Malden, MA: Blackwell.
- Magee, R. G. & Lee, T. H.(2007). Information conduits or content developers? Determining whether news portals should enjoy blanket immunity from defamation suits,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12(4), 369~404.
- Silha Center(2003). Comments of the Silha Center for the study of media ethics and law, 1~11. University of Minnesota.

〈제2주제〉

언론판례상 면책법리의 현황과 과제

I. 들어가며

우리 법원은 올해 사법 60주년 행사를 개최하여 사법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명해 보았다. 사법부의 과거를 회고하고 현재의 좌표를 확인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개최된 행사였다.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나라의 기초를 닦은 지 60년 만에 국력의 신장에 걸맞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둔 발자취를 확인함과 아울러 사법부의 향후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법원은 인적·물적 규모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판례의 축적, 우리 환경에 맞는 사법시스템의 개발 등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민주국가 건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확보를 위한 투쟁과 희생은 사법권의 독립을 지켰고, 법의 지배를 통한 사회질서를 구축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법관들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굳건한 소명의식과 헌신이 어우러져 이루어 낸 값진 성과로 평가하고 싶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법리의 발전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독재, 군사정권 하에서 국민적 저항으로 힘겹게 조금씩 언론 자유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 지난날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특히 1990년대를 전후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 등이 증가되고, 법원도 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여진다.

성 낙 송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 ☐ 전 법원행정처 공보관
- ☐ 전 사법연수원 교수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시키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물론 표현행위자가 주체로 삼는 영역마다 상충되는 이익과의 비교 형량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 헌법적 보호의 범위와 정도는 상이할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법원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요구되는 언론법리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언론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언론계에서도 판례이론의 검토를 통하여 일응의 행동준칙을 정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는 어떠한 경우에 표현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이른바 면책법리의 설정과 운용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있는바, 아래에서 명예훼손소송에서 인정되는 면책법리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명예훼손소송에서 판례상 인정된 면책이론

가. 일반론

대법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언론관계 소송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면책법리를 제시하여 언론(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는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여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소송에서 전면적으로 면책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사실의 적시의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2가지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독특한 위법성 조각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나. 순수한 의견에 대한 면책이론

(1)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¹⁾은 “민사상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의견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과연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 의하여도 민사상의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²⁾은 위 98다31356 판결과 같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1) 공 1999, 458.

2) 공 2000, 1925. 원고 등이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검찰수사 등이 거론되고 새로 출범할 정부가 경제위기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 풍자만화를 기고하여 이를 일간지에 게재한 경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임.

대법원은 사실적시, 의견 표명을 구별하여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더 나가 의견을 순수의견과 혼합의견으로 나누고 순수의견 또는 논평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를 확립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종래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을 구별하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의견을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른바 순수의견과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의견으로 나누고,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후에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계속되고 있다.³⁾

형사판례이긴 하나,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미간행)⁴⁾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에서 “박○○는 ◇◇과 계열의 이단이다.”, “박○○는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기재부분은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함께 기술하면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종교적·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고, “박○○가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하며 자기들을 드러내기만을 고집하려고 시도하였다.” 또는 “박○○의 시도를 막아 우리 고장 대전이 이단들이 발호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고장 대전과 우리 가정 및 자녀를 지켜내자.”라는 등의 기재부분이나 “성경 위에 활동하는 마귀나 벌

레 등을 짓가락으로 집어내는 형상”을 희화한 그림 부분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일 뿐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는 ‘성경세미나’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시민에게 다가가다.”라는 기재부분 등은 박○○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하여 종교적 비판이 ‘의견 내지 논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여 자유로운 종교적 비판행위의 영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판례의 분석

사실이나 논평 등 의견의 표명이 언론기관의 활동 영역 중에서 주된 것이라는 점,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이 개개인의 인격의 발현이나 민주주의의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대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길을 열어둔 판례의 입장은 활발한 의견 표명을 허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⁵⁾

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006다21507 판결 (미간행). 신문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역정가에선 ‘조선인 ○○○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데다가 지난해 구청장 선거 공천과동에 이어 대선을 거치면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고 면책시킨 사안임.

4)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소속 목사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피해자 박○○가 대전지역에서 ‘성경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는 광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자 유인물 30만부 가량을 제작한 다음, 일간지의 간지 형태로 불특정다수 구독자들에게 배포한 사안임.

5) 동지, 한위수, 법원과 언론, 언론과 법의 지배 연구시리즈 2007-1 58면, 박영사 (2007).

물론, 위 99다6203 판결에 의하더라도,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여 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의 적시와 의견을 포함한 혼합의견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므로,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여 면책되는 범위가 좁게 인정될 염려가 있으나,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범위를 가급적 넓게 설정하는 판례이론을 전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 법리

(1) 서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이외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명예훼손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명예훼손책임을 널리 인정하게 되면 민주정치의 초석이라 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⁶⁾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특유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⁷⁾

대법원은 민사상 명예훼손에도 형법상의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988. 10. 11. 선고 85다카29⁸⁾ 판결에서 “우리가 민주정치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가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이러한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헌법 제9조 후단)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헌법 제20조 제1항)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위 형법 조항이 민사사안에서도 유추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민사상 명예훼손소송에서 명예훼손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의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그 후의 판례에서 확고한 준칙으로 자리잡고 있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6) 한위수,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고찰, 사법 창간호 (2007) 사법연구지원재단, 41면.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852호) 제5조 제2항은,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8) 공 1988, 1392.

위법성 조각 법리 중 공공성이 부정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진실성 요건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없어 실무상
명예훼손소송 관련 쟁점은 상당성 안정 여부

(2) 위법성 조각 법리의 내용

(가) 일반론

판례에서 인정된 위법성 조각의 법리에 의할 경우, 행위자는 그 행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공공성 요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거나(진실성의 요건)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상당성의 요건)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⁹⁾

그 중 공공성의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⁰⁾고 하여 공공성의 요건

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실시하고 있고, 그 후의 대법원의 민사판결에서도 프라이버시가 명예훼손과 함께 문제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공성이 부정된 예는 찾아볼 수 없다.¹¹⁾

진실성 요건도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진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찾기 어렵다.¹²⁾

자연적으로 실무상 명예훼손소송 관련 주된 쟁점은 대부분 보도 내지 주장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¹³⁾ 많은 판례가 보도나 주장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경우 어떤 정황이 있다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아직도 많은 언론관계소송에서 상당성 판단이 주된 쟁점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 상당성의 법리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본다.

(나) 상당성의 법리

i) 위 대법원 85다카29판결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판단에 관하여 상당성의 법리가 제시된 이후 그 후의 판례에서 위 법리는 확고한 준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당성의 법리는 형법상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인

9)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예훼손행위를 한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례로는,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공 2004,594) 등 참조.

1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공 1996, 3297.

11) 전원열,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 : 이른바 ‘상당성의 원리’ 일반, 언론관계소송 재판실무연구(1) 언론관계소송 120면. (2008)

12) 그러한 취지에서 진실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진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여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84면. (2001).

13)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민사재판편) 법원행정처 (발간중), 467면.

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언론의 면책범위를 확장한 판례이론으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 특히 언론기관의 활동영역을 폭넓게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기관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성질상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사를 신계되기 마련이고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거나 본인을 취재하기보다 제3자를 취재한 결과를 기사로 신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인데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하게 되고 따라서 그만큼 언론의 활동공간이 넓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¹⁴⁾

ii) 상당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으로,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¹⁵⁾은,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¹⁶⁾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¹⁷⁾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를 근거로,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한 사안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당성을 부정하고 있다.¹⁸⁾

iii) 판례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시점은,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후에 드러난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도 참고하여야 한다.¹⁹⁾

iv) 위와 같은 내용의 상당성 법리는, 개별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서 얻는 이익, 가치와 인격

14) 한위수,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고찰, 사법 창간호 (2007) 사법연구지원재단, 52면.

15) 공 1997, 3279.

16) 공 1998, 2766.

17) 최근의 판례로는 대법원 2008.2.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미간행) 참조.

18)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공 2008, 779).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공 2006, 318).

19)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공 1996, 2776),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공 2008, 355).

**대법원이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 두어야
한다는 언론의 면책 법리를 제시한 후,
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

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례는 상당성 유무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추상적이거나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개별 생활영역에서 확보되어야 할 언론 내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제시함과 아울러 그 영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실제로 언론 내지 표현의 활동규준을 정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생활영역별로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²⁰⁾

(다) 새로운 심사기준 제시

앞서 본 상당성의 법리는 표현 내지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부담시키고 나아가 언론기관에 의한 보도의 경우에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 또는 조사활동'을 요구함으로써 언론사가 대법원에서 상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이 종래의 현실이었고,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언론계 및 학계로부터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²¹⁾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위축되는 폐단을

초래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었다.²²⁾

대법원은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²³⁾에서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개개의 사안에서 요구되는 이익과 가치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 우선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엄격한 책임 인정기준을 설정하여 다양한 각종 생활영역에서 요망되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 또는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주장이나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의혹제기, 종교적 비판, 그리고 언론사간 상호 비판 및 감시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개별적 생활영역에서 요구되는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입장은, 상당성의 법리와는 별개로 명예훼손에 대한 새로운 면책법리를 전개하여 언론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²⁴⁾

아래에서 생활영역별로 나누어 위법성 조각의 법

20) 이에 대하여 상당성의 법리는, 어떠한 경우에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언론매체의 성격,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뢰성, 진실확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 잠재적인 소송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명예훼손의 시비가 법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명예훼손소송을 증가시키는 폐단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하는 견해가 있다 [문재완,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법리의 비교연구”, 언론중재 90호, 언론중재위원회 (2004), 5면].

21) 문병찬, 명예훼손과 판례상의 면책심사기준 재판과 판례 제13집 (2005) 대구판례연구회 47면.

22) 한위수,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고찰, 사법 창간호 (2007) 사법연구지원재단, 63면.

23) 공 2002, 522.

24) 한위수,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고찰, 사법 창간호 (2007) 사법연구지원재단, 69-70면.

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III. 영역별 위법성 조각의 법리

1. 정치·행정적 영역

가. 일반론

1990년 후반부터 정치인, 고위공직자, 심지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공적 인물(public figure)에 의한 언론관계소송이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공적 인물들이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훼손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에도 기인할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사인에 비하여 좀 더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대법원의 New York Times v. Sullivan U.S. 254(1964) 사건에서 인정된 ‘현실적 악의의 법리’(actual malice rule), 즉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인지의 여부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고 이를 공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²⁵⁾은, “언론의 특성상 공직자의 윤리 및 비위 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²⁶⁾에서도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그대로 도입하는 경우 공인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부터 구제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인에 대한 무책임한 보도를 부추겨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²⁷⁾

나. 특수한 심사기준 제시

대법원은 2002년부터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공공적·사

25) 공 1997. 3279,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공 1998. 1575)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공적인 인물이므로 피고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하였음을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언론기관에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현실적인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6) 공 2004. 594.

27) 한위수, 공적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제기와 명예훼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1권 (2002), 636-639면, 우리나라에서는 명예에 대한 관념이 미국과는 달리 명예훼손에 대한 감수의 정도를 달리하고,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언론자유가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명예 등 인격권과 대등한 지위로서 이익형량에 의하여 허용여부가 결정되며,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이른바 증거개시(discovery) 제도가 없어 원고 측에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실적 악의의 법리’는 미국 자체에서도 비판이 있어 개혁논의가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논거로 하고 있다.

대법원의 2002년 판례는 공인과 관련하여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정면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이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정치·행정적 영역에서는 비판의 폭을 확대하는 일방 명예훼손책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정면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이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⁸⁾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적 존재 내지 공적인 관심사안의 구별

대법원은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²⁹⁾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

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여 공적 인물의 경우 인격권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우선 고려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 판결은 공적 존재 및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보도나 비판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정치·행정적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를 통한 자유로운 비판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정치인, 정당에 대한 표현행위와 관련된 명예훼손소송 등에서 위 심사기준에 따른 판례가 계속되고 있다.³⁰⁾

(나)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

위 2000다37524,37531판결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비판행위 등에 대하여,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하고,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므로,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28) 동지, 김재협,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기준, 언론중재 23권 4호 (2003. 12.), 28면.

29) 공 2002, 522.

30) 대법원 2006.3.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공 2006, 713), 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28365 판결 (미간행) 등 참조.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하여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하여는 상당성의 요건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³¹⁾도 같은 취지에서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나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나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정치적 이념에 대하여는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고, 그 토론과정에서 파생하는 비판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특히, 이념 문제의 공방에 있어서는 오신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의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진실성의 판단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보아주어야 한다는 것

을 최초로 밝힌 판례로서 이 분야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³²⁾,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그 후 정당의 정치적 주장, 공직자의 청렴성 등에 대한 의혹제기 등 다른 정치·행정적 영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다) 정당 내지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주장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³³⁾은 야당 대변인이 절도범의 진술을 믿고서 여당 도지사가 사택에 미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도난당하였음에도 검찰이 축소 은폐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한 사안에 관하여,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여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대하여는 정당활동의 자유의 보장 차원에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³⁴⁾은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

31) 공 2003, 425.

32) 한위수,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고찰, 사법 창간호(2007) 사법연구지원재단, 66면.

33) 공 2003, 1683.

34) 미간행, 여당대변인이 국가정보원 해직자들의 단체에서 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은폐시도를 하고 있다며 야당에게 그 정체를 밝히고 이를 해체하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이 문제된 사안임.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널리 인정되나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경계해야 하며, 표현에 있어서도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어휘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는 아니 된다”고 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야 위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결과 정당 내지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주장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비판 내지 검증을 허용하여 정치권 내부에서의 공방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정당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언론의 활동범위를 폭넓게 허용하여 민주정치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라)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제기

위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³⁵⁾은,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선거법위반사건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하여는 정당 내지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주장과 비슷한 정도의 심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의 활동범위를 폭넓게 허용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마) 표현의 한계

공적 존재 및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보도 내지 주장과 관련된 선도적 판례인 위 2000다37524, 37531 판결은, 공인 또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언론 자유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

35) 공 2003, 1770. 이는 야당 소속 변호사가 여당원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으로 검사가 이미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던 횡령고소사건을 즉시 제기하여 아무런 수사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그 변호사를 정치적 보복기소한 것처럼 기자회견한 사안이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공 2003, 1936, 대전지역 검사들이 변호사의 불륜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보도에 관한 사안임),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공 2004, 594, 검사가 착오로 이중기소를 하였다는 보도에 관한 사안임),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공2006, 1020),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29379 판결(공2008, 127) 등이 있다. [앞의 두 판례는 언론 보도에 관하여 면책을 인정한 사례인데 반해, 위 2004다35199 판결, 2007다29379 판결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보도로 상당성이 없다고 보고 면책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다.]

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언론의 자유에 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다음 당해 사안에서 노동단체의 투쟁방법을 ‘공산계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하여, “비록 그 표현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체의 투쟁방법을 그에 비유한 평가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산계릴라식 빨치산전투’라 함은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적의 배후에서 파괴와 살상 등으로 기습, 교란하는 비정규부대의 유격전투를 뜻하는 표현으로서, 그 비유가 지나치고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여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하며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³⁶⁾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³⁷⁾은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정치·행정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도 일정한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바) 판례의 분석

판례이론을 종합하면, 정치·행정적 영역에 관하여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 간에 심사기준을 달리하여야 함을 전제로, 언론의 감시 내지 비판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고도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에 준하는 정도로 언론의 활동범위를 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치·행정적 영역에서의 정보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자유롭게 유통되고, 그를 기초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활성화도록 하여 바람직한 정치사회나 행정조직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나아가, 판례는, 유형별로 그 생활영역에서 요망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적절한 한계도 설정하여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언론 자유의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적절히 규율하여 민주정치제도의 발전이나 건전한 공직

36)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공 2003, 425)도 같은 취지에서 관련 기사 중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그 프로듀서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그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고, ‘주사파’가 그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37) 공 2006, 1020, 방송사가 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동인들이 사건 신고를 받고서도 사건을 조사하기 전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고발인을 미리 만났고, 고발인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몸수색을 하였으며, 또한 사건과 관련 없는 고발인의 친구를 사무실로 불러 다리를 걸어차는 등 구타하였다고 보도한 사안에 관하여, 이는 경찰 공직자들의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대한 단순한 의혹 제기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공2008상,127)도 같은 취지에서 신문 기사에서 공직자가 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한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하여 보도한 사안에 관하여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사는 통상의 공인과는 달리 스스로 반론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 폭넓은 상호 비판 및
감시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 제시할 수 있어

사회의 형성을 위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언론기관 등의 표현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2. 언론사에 대한 비판 및 감시

가. 일반론

1999년 말에 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 사주의 조세 포탈 혐의 조사 및 구속과 이에 대한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행태나 보도태도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언론사간의 비판 내지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다. 특히, 요즘은 언론매체가 미디어비평이라는 형식으로 다른 언론매체에 대한 비평을 다루는데다가 이념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활발하게 상호비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론사간의 분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간의 상호비판 내지 감시활동은 언론이 하나의 성역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의 현실에서 언론계 내부에서의 자율적 규제와 통제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경쟁 상대방 언론사의 언론보도에 대

한 왜곡되거나 편협한 시각에 기초한 분석과 비판, 때로는 경쟁에 치우친 악의적인 비판으로 인하여 언론사간 상호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고 독자나 시청자로부터도 언론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고,³⁸⁾ 언론사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있어 명예훼손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자유로운 언론보도에 대하여 상당한 위축효과를 낳게 될 우려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³⁹⁾

언론사도 그 설립목적이나 감시와 비판, 여론형성 등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인 또는 공적 존재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적 존재 내지 공적 인물에 관한 법리를 이용하여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은 언론사나 그 소속 기자가 피고로 된 일반의 소송형태와 달리 언론사가 직접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는 점에서 유형적으로 구분이 되는데다가 언론사는 통상의 다른 공인과는 달리 스스로 반론 수단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한 반론을 할 수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고, 언론 매체에 의한 공개적인 주장과 반박 등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기대될 수 있으므로 보다 폭넓게 상호 비판 및 감시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의 심사기준을 어느 정도로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⁴⁰⁾

최근에 언론사간의 상호 비판 및 감시활동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

38) 김재협,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 기준, 언론중재 23권 4호 (2003) 16면.

39) 배병일, “언론사간 매체비평과 소송의 한계”, 『언론중재』 2001 겨울호, 4면.

40) 김재협,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기준, 언론중재 23권 4호 (2003) 18-19면.

한 판례가 계속 선고되고 있다.

나.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⁴¹⁾

(가) 공적 사안에 대한 법리의 적용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며 언론사에 대한 비판 및 감시활동에 대하여는 공적 사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전제로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나) 개별적 심사기준 제시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나아가 “위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취득한 주식 수를 사실과 달리 보도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 오류 내지 과장이 있으나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는 정치·행정적 영역에서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의 법리를 그대로 언론사간 상호 비판 및 감시활동 영역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후의 판례에서도 같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⁴²⁾

(미간행)

위 2003다52142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한 후,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언론사들 사이에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적인 과장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을 신문을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1) 공 2006, 713. 갑 방송사가 을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를 다루면서, 언론사로서의 힘을 이용하여 썬 이자로 돈을 대출받은 의혹이 있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고 보도하였다.

42) 갑 신문이 을 신문을 여당의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아니고, 강제투입부수만을 무가지부수로 보아 무가지 비율을 산정한 후 을 신문의 무가지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도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을 신문이나 다른 신문에서도 무가지 비율을 혼동하여 게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무가지 비율의 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믿었고 이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언론사 간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당성에
대한 기존의 심사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악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결**

- (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⁴³⁾
(미간행)

위 2003다52142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한 후,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취재경위 등에 비추어 보도의 주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전 사주의 친일행적 보도는 대부분 진실이고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친일행적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⁴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적인 과장 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운 인터넷 게시물에 근거한 위 발언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반 사정상 위 기사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므로 그 명예훼손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종전의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과는 달리,⁴⁵⁾ 명예훼손행위가 적시사실의 진실성이나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심사기준을 벗어난 경우라도 악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아울러 악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언론사나 나아가 정치·행정적 영역을 비롯한 다른 생활영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다. 판례의 분석

판례를 종합하면, 언론사 상호간의 비판 및 감시활동에 있어서는 공적 존재인 언론사가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치·행정적 영역에서 허용되는 특수한 심사기준과 유사한 개별적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43) 갑 신문이 을 신문사의 사옥이전거부나 지하철 1호선이 을 신문사의 사옥을 우회하면서 급곡선으로 시공된 것이 언론권력의 부당한 압력 행사로 인한 것처럼 느낌을 주는 표현을 써서 기사를 게재하고, 을 신문사의 과거 친일행적이나 기자 대량 해고 사태 등에 관하여 비판적인 기사, 만평 등을 게재하였다.

44) 공 2008상, 779. 갑 언론사가 정치강연회에서 초청연사가 한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을 언론사를 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보도하는 기사 등을 게재하였다.

45) 종전의 판결들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개별적 심사기준을 일반론으로 제시하면서도 결론에 있어서는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거나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심사기준이 기존의 상당성의 법리와 어떻게 달리 작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사 상호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언론계 내부의 철저한 상호비판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3. 종교적 영역

가. 일반론

우리 헌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종교의 자유에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원적 종교사회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종교를 믿으며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는 것과 유사할 정도의, 특정 종교의 우대 또는 박해 등으로 인한 종교 간의 극심한 대립은 없지만, 종종 종교단체간의 갈등 내지 분쟁이 발생하고, 때로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의 종교적 의견 및 세계관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즉 선교적 측면에서 다른 종교집단의 교리에 대하여 그 이단성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일로 말미암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에는 특정 종파에 속하는 신도들이 기존에 공인된 정통적인 신앙을 공격하며 적극적인 전도행위를 함에 대하여 기존의 정통교단에서 교단 소속 신도들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특정 종교집단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의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또 다른 주요한 분쟁형태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의 사회적 비리를 고발하는 언론보도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종교보도는 대상 종파나 신도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받게 되어 그 보도를 둘러싸고 심각한 긴장관계를 초래한다. 종교단체는 집단 전화협박·집단 시위 및 사옥 봉쇄 등 비합법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⁴⁶⁾ 출판·방영금지 가처분 등의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판례상 종교적 영역에서의 언론 내지 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형태의 위법성 조각법리로 보호받고 분쟁이 해결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⁴⁷⁾

나. 대법원 판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판례를 살펴본다.

(1) 이단성 지적을 비롯한 종교적 행위

(가)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⁴⁸⁾

46) 1999년에는 MBC가 특정 종파에 대하여 방송을 하자 그 종파 신도들이 주조정실을 점령하여 처음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47) 미국의 경우 종교적 신념이 개재된 쟁점을 포함하는 명예훼손적 진술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종교의 자유로서 보호된다. 종교분쟁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특정 종파에 편들게 된다는 점과 종교적 신념은 법원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판례는 이를 법원에 제소할 수 없는 의견으로 본다.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461면 참조.

48) 공1996, 2983. 갑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그 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 장로인 자들이 다른 교단 소속의 기도원운영자를 비판하고, 그에 맞서 기도원운영자가 갑 노회 소속 회장 등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관한 사안임.

**대법원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천명

i) 위 판결은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하며,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하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은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비하여 강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ii) 나아가 위 판결은,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면서, 그러한 비판으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범,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각 관계자들의 지위,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범위의 광범, 그 표현 방법, 비판 내용 및 명예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을 비교 교량하는 방법으로 위법성의 판단을 하여 그 한계를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iii)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으로 다소 과장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종교적 비판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보다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9755 판결⁴⁹⁾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나)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⁵⁰⁾

위 판결은 위 96다19246, 19253 판결과 같이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비록 (군종장교가 작성·실시한) 이 사건 책자와 설교의 내용 중에 원고들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49) 공 1997, 2882. 갑 교단은 그 교리를 보호하고 신자들의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버이단문제상담소를 설립, 운영하면서 그 상담소 소장으로서 하여금 을 교단 소속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한 후 그 목사의 이단성을 문제삼은 총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와 동일한 내용을 위 상담소가 발행한 자료집에 그대로 게재하여 갑 교단 산하의 지교회 등에 배포한 사안임.

50) 공 2007, 772. 군종목사가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단종교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이단의 의의, 이단이 군에 미치는 영향, 2003년도 현재 공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00파 등 18개 사이버 종교단체의 폐해와 실상, 그 교리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단 종교에 관한 교육책자를 발행한 사안임.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 아니라 장병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 사건 책자를 발행·배포하거나 이 사건 설교를 행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위 96다19246, 19253 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판례의 분석

위 판례들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은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개개 경우에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을 비교 교량하는 방법으로 위법성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목적과 대상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다른 특수한 심사기준을 채택함으로써⁵¹⁾ 위법성 조각사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종교적 언론의 자유를 고도로 보장하고 있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의 보호는 종교적 비판행위를 폭넓게 순수한 의견 내지 논평으로 봄으로써 명예훼손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둘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⁵²⁾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종교계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호비판을 통하여 교리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선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종교의 자유 내지 그 영역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고도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언론의 종교보호

(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3437 판결(미간행)⁵³⁾은, 앞에서 살펴 본 상당성의 법리를 전제한 후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한국내 이단교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단교주들과 마찬가지로 정욕적이고 호색적인 성격이거나 성문란, 가정파괴 등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종말을 빙자하여 부를 축적하는 등의 반종교적, 반윤리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이 사건 기사를 기독교신문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서도, 이단의 일반적인 특징을 적시한 것이지 원고를 지칭하여 그와 같은 보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만 할 뿐, 거기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

51) 한기택, “광의의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판례해설』 32호(99년 상반기), 1999, 286면.

52)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미간행] 참조.

53) 피고들이 김○○의 이단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는 먼저 “정체위장하고 교회 침투”라는 소제목 하에 이단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대개 교주는 정욕적이고 호색적인데, 외형적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윤리적인 결점을 갖는 경우가 많다. 성문란은 물론이고 가정파괴 등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정당화한다. 집총거부, 독신강요, 금욕주의 등도 나타난다. 금전을 강조한다. 곧 종말이 온다면서도 교주는 부를 축적하며 교인들의 맹목적인 기부와 헌금을 유도한다. 이들 사상의 대부분은 이원론이다. 영의 세계와 물질세계를 존재론적으로 이원화시켜 세상을 선악의 이중구조로만 생각하는 지나친 이원론에 젖어 있다. 김○○의 귀신론이 이원론을 극단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삼위일체, 부활 등 정통기독교의 기본교리들을 부인한다. 가정 등 기본 생활을 내팽개치고 오직 집단에만 맹목적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보도하고, 다음 “이단들의 계보 존재해”라는 소제목 하에 한국 이단들과 서구 이단들의 특징을 비교한 후 김○○을 이단계열의 하나로 보도한 사안임.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하지만, 종교 관련 보도라 하더라도
공적 사안과 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구별된 기준 적용**

을 비판할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28365 판결 [미간행]⁵⁴⁾ 도 앞에서 본 상당성의 법리 및 공적 사안 및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구별된 기준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함을 밝힌 후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나) 판례의 분석

판례를 종합하면, 언론의 종교보도 영역에서는 정치·행정적 영역이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특수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사회비리 고발에 준하여 언론의 활동범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특정 종교집단이 종교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신도들 및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특히 종교집단의 대표자는 다수의 신도들에게 영향력이 크고, 최고도의 도덕성이 기대되는 인물인 점등에 비추어 보도의 공공성이 높고, 해당 종교집단의 극렬한 반발등을 고려하여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심사기준을 발굴하여 종교보도에서 요망되는 이상적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언론기관의 범죄보도

가. 일반론

우리의 언론현실을 보면 범죄보도 기사가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한다.⁵⁵⁾

그러나, 언론매체 간의 취재경쟁과 선정적 보도경향에 따른 무분별한 보도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격권에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수사중인 상태에서 진범으로 단정하는 보도를 하거나 그 혐의사실 이외의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보도하는 경우 이러한 보도는 개인의 명예 등에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발생한다. 나아가 범죄보도는 그 표현방법 내지 방식, 더 나아가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⁵⁶⁾ 그런 점에서 범

54) 갑 방송사가 을 교회의 목사 및 교회에 성추문, 신격화, 미국원정도박, 신도들의 헌금 및 보증, 질병 치유 과장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고발하는 방송을 하자, 을 교회의 목사 등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5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 1998, 2108) 참조.

56) 2008. 1. 1.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형사재판에서 배심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범죄보도가 배심원들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절차의 공정하고 순조로운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죄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내지 공공의 알 권리와 피의자 등의 개인적 이익 내지 재판의 공정성 측면 등을 고려한 이익의 조화와 절충이 요구된다.

언론기관이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진실한 사실만을 보도하여야 하다고 하면 범죄보도 자체를 차단하게 되어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게 될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도 아닌 언론기관에게 보도된 범죄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그러기에 범죄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에서 어떠한 형태의 면책법리를 적용하여 언론의 범죄보도를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나. 대법원 판례

(1) 언론사의 조사확인 의무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⁵⁷⁾은,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

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언론사에게 보도 전의 충분한 조사확인 의무가 요구됨을 밝히고 있다.

(2) 상당성 판단의 고려사항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⁵⁸⁾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상당성 판단시 요구되는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후에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계속되고 있다.⁵⁹⁾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⁶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7) 공1999, 330.

58) 공 2001, 497.

5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공 2002, 133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공 2006, 1020),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미간행].

60) 공 1997, 3279.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받고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직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정적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경우,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 사안임.

**범죄보도의 상당성 인정 여부는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
정보원의 신뢰성,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이
유리한 상황인가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범죄보도에 관한 사례는 아니지만,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⁶¹⁾은,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의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대상자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 공표의 주체가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하겠으나,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 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표 주체의 광범한 사실조사 능력, 그리고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그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범죄보도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유형별 사례 검토

(가) 증거자료의 확실성과 신뢰성

대체적으로, 수사당국 또는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실질적인 변경 없이 보도한 경우에는 취재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이 요구되며 언론기관에 사실탐지능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확인취재를 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⁶²⁾ 그러나, 수사 당국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에 비공식으로 수사당국을 취재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보도한 경우,⁶³⁾ 당국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라도 발표를 오해하거나 과장, 각색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첨가하여 범인으로 단정하여 보도한 경우⁶⁴⁾에

61) 공 1998, 1712.

62) 한위수,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고찰, 사법 창간호(2007) 사법연구지원재단, 55면.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공1999, 339)[신문기자가 담당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그 진위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 및 확인 없이 보도했으나 위 기사의 취재원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인데다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고 위 발표 및 배포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었으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사안] 및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4406 판결(미간행) [포르말린 사건으로 알려진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발표에 근거하여 보도하였다가 나중에 무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가감없이 보도한 언론사를 면책한 사안] 등 참조.

63)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미공간) [택시노조활동을 하던 사람이 택시회사 근로자 및 기업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오다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거나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64)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 2108). 보도자료에는 폭행, 업무 방해, 감금 사실밖에 없고 수사 기록까지 열람하였으면서도, 일간지 기자가 ‘피해자가 춤바람이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보도하거나, 피해자에게 확인도 아니한 채 수사 경찰관과 비공식으로 만나 고소장을 입수하여 “피해자가 춤바람이 나서 간통까지 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다.”고 보도한 사안임.

는 상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언론기관이 수사당국이나 국가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취재하여 의혹보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증언을 두루 취재하는 등 수사당국이나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기초로 경우보다는 보다 고도로 증거자료의 확실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⁶⁵⁾ 그리고, 다른 신문이나 잡지 등을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그 증거자료 외에 이를 근거로 다시 확인해서 보도해야만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⁶⁶⁾

(나) 사실확인의 용이성(반론기회의 부여)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관련자와 접촉하는 등으로 사실확인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는 상당성이 없다고 본다.⁶⁷⁾

(다) 명예훼손의 중대성 및 보도의 신속성

명예훼손의 내용이 중대할수록 피해의 심각성은 증대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의 속성상 보도의 신속성 또

한 무시할 수 없는데,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강조하게 되면 상당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질 것이고, 보도의 신속성을 중시하면 상당성의 인정은 넓어질 것이다.

판례의 입장을 보면, 명예훼손의 심각성에 대한 고려를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⁶⁸⁾은,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사안에서, 한 일간신문사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위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간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것이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⁶⁹⁾

그러나, 보도의 신속성도 고려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⁷⁰⁾은 피의사실에 관한 범죄보도의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

6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공2002, 1352) [초등학교교사의 과도한 체벌로 피해아동이 입원까지 하게 된 사건에 관한 보도가 문제된 사안인데, 피해아동 측에서 원고를 상대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피해아동 및 그 부모나 처음부터 피해아동 측을 대변하여 온 학부모단체 관계자의 말만 듣고는 학교 측에서 원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원고 측의 해명을 들어 보려고 시도하지 않은 채 원고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게재한 사안].

66)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공 1996, 1973)은 일간신문사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관련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였거나 그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하자, 더 이상의 사실확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만연히 기사를 작성한 경우, 그 언론매체에게 그 기사의 취재 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공 2002, 1336)도 같은 취지에서 일간신문사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위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6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공1994, 1643) [10대 가출 소녀에 대한 기사인데, 피해자의 딸이 가출하여 동거 중 임신하게 되자 피해자가 ‘강제로’ 딸을 집에 가두고 ‘일방적으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사실과 달리 표현한 사안에서, 담당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보는 등 필요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사안] 및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68) 공 2002, 1336.

69)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공 1996, 1973)도 같은 취지이다.

70) 공 1999, 330.

범죄보도 시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돼

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신문기자가 담당 검사로부터 취제한 피의사실을 그 진위 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 및 확인 없이 보도했으나 위 기사가 검사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 및 배포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다. 판례의 분석

언론의 범죄보도 영역에 있어서는 일반적 상당성

의 법리로 면책법리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고, 정치·행정적 영역 등에서는와 같은 특수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범죄보도의 공공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의 침해의 측면을 중시하여 언론 자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 범죄보도의 심각성, 피해 회복의 곤란 등 범죄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갖가지 폐해를 고려할 때 판례의 입장은 수긍된다. 범죄보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아쉽긴 하나 사례의 집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경제적 영역

가. 일반론

언론기관의 보도 내지 광고를 통하여 특정인이나 회사의 영업활동 또는 경제상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⁷¹⁾ 그 표현은 동시에 그 영업이나 신용의 주체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⁷²⁾ 그에 대한 위법성이나 책임 인정 여부를 어떠한 기준에서 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현재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없고 학설들 역시 명확한 입장을 밝

71) 과거 광고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별개로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근래 정보전달적 기능을 갖는 광고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주로 규제법적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불법행위법적 측면에서 광고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72) 대법원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9780 판결 등 참조).

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경제적 영역에 관한 표현행위의 민사책임이 문제된 사례들 중 대표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면책법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나. 관련 판결례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⁷³⁾

- 파스퇴르 사건 -

(가) 사안의 개요

피고 우유회사는 원고 회사 등 기존의 분유업체들이 분유를 생산함에 있어 비위생적인 재래식설비를 사용하고 있고 인체에 해로운 성분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를 통하여 여러 신문에 공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 회사 등도 반박광고를 게재하였으며 다시 피고 회사가 재반박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소위 광고전쟁이 일어났다. 원고 회사가 허위의 비방광고임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 회사 역시 반소로써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였다.

(나) 사안의 경과

제1심 법원은⁷⁴⁾ 피고 회사의 주장은 허위로서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으로서 대응광고비용과 장래의 비방광고금지청구 및 위반행위 1건당 간접 강제금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대응광고가 피고 회사의 도발광고에 대한 해명적 성격을 띠고 있고 대응광고로서의 허용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제2심 법원은⁷⁵⁾ 제1심 법원의 판단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대응광고비용을 일부 증액하고, 원고 회사의 무형적 손해액을 추가로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제1심 판결의 내용

제1심 판결은, 피고가 자신이 한 광고의 내용은 모두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오로지 국민건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일 뿐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이 경쟁업체의 제품과 자신의 제품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신문이나 T.V.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행하는 경우, 그 광고의 내용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의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러한 광고방법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당해 광고의 표제와 문구, 광고 문안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연결방법 등 당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피고는 기업윤리에 충실한 기업인 반면 원고를 포함한 기존 유가공업체들은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이윤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할 것이어서, 위 광고들이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73) 공 1996, 1486.

74) 서울지방법원 1992. 6. 9. 선고 91가합3081, 84677 판결 [하집 1992-2, 108].

75) 서울고등법원 1993. 7. 2. 선고 92나43779, 43786 판결.

행정상의 공표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인의 행위보다
무거운 주의의무, 광범위한 조사 능력, 진실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이 없으면 상당성 인정받기 힘들어

있고, 또한 피고가 한 이 사건 광고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게 원고를 비방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광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2)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⁷⁶⁾

- 이동막걸리 사건 -

(가) 사안의 개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원고 회사의 쌀막걸리에서 첨가금지된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발표를 하자 원고 회사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문제는 원고 회사의 상표를 도용한 가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고 채취한 시료가 원고 회사의 동종업자들 사이에 협의된 공급지역 외에서 구입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판시 내용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의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대상자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 공표의 주체가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하겠으나,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표 주체의 광범한 사실조사 능력, 그리고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그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 없이 제조자의 직접 공급지역 외에서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단지 외관만을 보고 구입한 시료를 바탕으로 ‘이동쌀막걸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것은 공표의 기초가 된 시료가 원고 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표 내용의 진실성을 오신한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⁷⁷⁾

- 과장광고비판 사건(부스터 사건) -

76) 공 1998. 1712. 이 사건의 제1심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수익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1997. 11. 11. 선고 96나20354 판결)은 일반소비가자가 구매하는 형태로 시료를 채취하였고 원고 회사의 막걸리를 공급구역 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그 시료를 원고 회사에 의해 생산, 판매된 것으로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발표가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한 사안임.

77) 공 1999. 2292

(가) 사안의 개요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연비 향상장치들에 대한 시험결과 원고의 제품은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제품들은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연비향상장치 모두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도되자, 원고가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시 내용

대법원은 피고 방송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텔레비전 뉴스 담당자들이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도 하에 보도 첫머리에 “부스터 효과 없다”라는 제목을 화면으로 내보낸 다음,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그 연비향상장치 제조자들의 선전이 과장 선전임을 암시하게 하고, 원고를 비롯한 제조업자를 등장시켜 제품 설명을 하도록 한 후, 제조업자들이 선전 근거로 제시하는 각종 시험결과의 부정확성을 밝히면서 그와 대비되는 시민단체의 시험결과를 그 허구성을 밝히는 자료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자들의 선전은 과장선전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들에게 그와 같은 광고공세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하는 말로 보도를 끝맺고 있는 경우, 보통의 주의를 가진 일반의 시청자로서는 위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방식의 영향으로 보도 앞부분에서 한 제조업자의 제품에 대한 설명은 보도 첫머리의 뉴스진행자의 암시대로 그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험결과에 의하여 허구임이 밝혀졌으며, 그 보도에 등장하여 제품을 설명한 제조업자는 뒤에서 허구임이 밝혀진 효과 없는 제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제조업자 및 그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은 그 제조업자와의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한 보도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4)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4406 판결

(미간행)

-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

(가) 사안의 개요

검찰이, 원고회사가 수입 원료인 번데기에 고의로 포르말린을 첨가하여 번데기 통조림을 제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를 하면서 공식기자회견을 하였고, 피고들(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위 공식기자회견을 토대로 ‘이 사건 보도’를 하였는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후 피고 언론사들은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보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시 내용

이 사건 보도는 일반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원고가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다는 인상을 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점은 인정되지만, 거기에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에 관한 것으로서 보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보도 자체에도 긴급과 신속을 요한다 할 것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기자들이 검찰의 공식기자회견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윤색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

**경제적 영역에서는 경쟁제품에 대한 수사적
과장이나 공격적 비판이 쉽사리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

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사건은 언론사가 검찰의 공식기자회견의 내용을 그로 보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배척된 사안이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경영상의 손해에 관하여 언론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심리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가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과 관련된 보도로서 보도의 필요성과 긴급·신속성을 요한다는 사정을 상당성 판단의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42609, 42616

판결 (미간행)

- 메디슨 사건 -

회사의 경영자에 대한 정경유착의 의혹을 제기한 사건으로, 원고 회사가 거래관계에 기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피고가 원고 회사의 비리 및 권력비호의혹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신문에 광고를 내고, 원고 회사가 이를 고소하자 피고가 맞고소를 하는 한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원고 회사의 권력비호의혹을 제기한 사안이다.

제1심 법원은⁷⁸⁾ 피고의 제보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며, 공익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 2억원을 배상할 것과 정정광고를 게재할 것을 명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상고도 기각되었다.

다. 시사점

위 판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경제적 영역에서의 표현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설정 시 고려요소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1) 공격적 표현행위의 지양

정치·행정적 영역이나 언론사 상호간의 비판활동 등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파스퇴르 사건 판결을 대비해 보면 경제적 영역에서는 경쟁제품에 대한 수사적 과장이나 공격적 비판이 쉽사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인다.

(2) 의혹제기의 제한

공직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과 위 메디슨 사건을 비교해 보면,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의혹제기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그 경영자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쉽사리 허용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익명보도원칙의 후퇴

통상 공적인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나 비리보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고유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 목적의 보도라는 요건은

78) 서울지방법원 2000. 9. 27. 선고 99가합89715, 2000가합50881 판결.

일을 충족된 것으로 추정하나, 공인이 아닌 사인에 대하여 실명을 언급하거나 초상을 보여주면서 하는 보도는 범죄보도나 비리보도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보도의 진실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이 공익성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⁷⁹⁾

따라서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⁸⁰⁾

위와 같은 익명보도의 원칙은 부스터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영역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한 종류의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품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익명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는 오히려 신뢰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르말린 사건에서 ‘보도내용이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에 관한 것으로서’ 보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보도 자체에도 긴급과 신속을 요한다라고 판시하여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상당성 판단의 요건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해식품 등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경제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명보도를 해야 할 급박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인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소결론

오늘날 경제활동, 특히 기업의 운영은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영위된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광고나 언론보도 등의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의 제품생산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는 시장의 자유경쟁과 소비자의 객관적 평가에 맡겨져야 한다. 그러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 표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기업의 경우 사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지배기업이 광고주로서의 힘을 동원하여 경쟁기업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이러한 정보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경쟁기업은 시장의 자유경쟁원리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도태되는 셈인데, 이런 결과를 용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경제적 영역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정치·행정적 영역 등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특수한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고도로 보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적어도 일반 사기업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정치·행정적 영역, 종교적 영역 등에 비하여 훨씬 더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면책법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언론 내지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기업활동의 보호라는 상충되는 법익을 절충·조화시킬 수 있는 면책법리에 대한 연구와 적절한 실무사례의 축적을 기대한다.

참고로, 하급심에서 경제적 영역에서의 표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한 소송이 진행

79) 대법원 1998. 7. 14. 선고 17257 판결 참조.

80)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참조.

각종 생활영역에서의 폭넓은 면책 인정을 포함한
법리적 발전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여건 조성과 더불어 그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더욱 성숙된 민주사회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일명 ‘황토팩 사건’⁸¹⁾으로, 황토휘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가, 피고 방송사의 자사 제품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도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매출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경제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어떤 사정하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IV. 마치며

1990년 대 후반부터 언론판례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언론판례상 면책법리도 개인의 인격권 등의 보호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더욱 더 보호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정치·행정적 영역을 비롯한 각종 생활영역에서 적절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설정이나 순수한 의견에 대한 폭넓은 면책의 인정은 언론의 자유의 법적 보장의 적정성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비교법적인 선험으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러한 법리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터잡은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더욱 성숙된 민주사회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면책법리의 발굴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다. 향후 학계의 심도 깊은 연구 검토와 실무상의 법리개발을 통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하나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8235 사건. 이 사건에서의 피고 방송사의 방송 보도의 요지는, 황토휘 제품에서 중금속이 일반 화장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고, 황토휘 속의 중금속이 피부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황토휘 제조회사가 피고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 등이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로 원고가 피고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하여, 제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8. 선고 2007가합24153 판결, 원고 청구 일부 인용)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 2008나51993호로 계속 중이다.

2008년도 정기세미나 토론내용 요약

권혁남 전북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변화와 법적 쟁점〉과 〈언론판례상 면책법리 현황과 과제〉라는 두 가지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언론인들은 언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재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언론의 활동 공간이 조금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판사들은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두 가지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의 판례는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주제 토 론

권혁남(사회자, 전북중재부 중재위원) : 이재진 교수님의 발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포털을 저널리즘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묵은 기사의 삭제 문제, 인터넷 반론권에 대한 것이다. 참석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길 기대한다.

유영현(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부장) : 온라인 신문의 고민은 묵은 기사 처리에 관한 것이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정치인들이 묵은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다. 심지어 음주나 절도 관련 기사 등도 삭제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이다.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모든 상황이고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 기준이다 보니 이에 따른 처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도 모르겠다. 혹시 묵은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한 거부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다. 또 만약 관련 기사 DB를 삭제한다고 해도 블로그나 카페에 남아 있는 기사들이 있다. 즉 생산자가 DB에서 기사를 삭제해도 2차 생산자나 가공자의 것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관련 가이드 라인이 있었으면 한다. 신문은 역사의 기록인데 항상 좋은

것만 기록할 수는 없다. 결국 반론권을 모두 받아주어 기사 삭제를 하다보면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좋은 기사만 남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기사만 남기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다.

여운성(EBS 법무팀) : 묵은 기사와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 논의는 역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사의 모든 기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묵은 기사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과 사를 구분해서 공적인 범위의 기사는 삭제를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사적인 범위의 기사는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법원 재판부가 판례를 축적하기도 하겠으나 공인의 경우에는 모든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되어 자신과 관련된 묵은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다. 언론사는 묵은 기사의 삭제와 관련해 스스로 공사와 경중을 가리는 기준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상규(수원지법 판사) : 묵은 기사의 삭제요청과 관련해서 말씀이 많은 것 같다. 법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격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삭제 요청은 법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기사 삭제에 관한 판결은 아직 없었으

나 안티 사이트 관련 사건에서는 폐쇄까지도 허용된 판례가 있다. 결국 폐쇄청구, 삭제청구가 가능하냐고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익형량의 문제다. 해당 기사가 어느 정도 해를 끼치느냐, 아니면 유용한 측면이 있느냐를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사의 극히 일부분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다를 것 같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원고들이 많지만 재판부에서는 책임을 인정할 때도 명예훼손 정도에 따라 정정보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익균형을 맞춰 손해배상만 판결하기도 한다. 삭제 요청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블로그 등 2차 게재의 문제도 원고가 지적을 했을 때 피고가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피고가 알아서 발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원고가 권한이 있는 자를 정해서 그를 상대로 청구한다면 이론적으로 삭제청구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시철(대법원 재판연구관) :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 이전에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미국의 공인과 관련된 판례는 특별법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일반화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발제자가 인용한 판례와 유사한 내용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상이한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일반 원칙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인격권 침해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언론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ISP가 발언자(Speaker) 혹은 발행자(Publisher)에 해당하느냐 또는 인지하고 있는 배포자(Distributor)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반 통신업자(Common Carrier)가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 결국 이와 관련한 문제는 입법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 일본, 독일의 각국 법을 보면 국가별로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미국의 것이 일반원칙

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여건에 맞춰 일반원칙 내지 특별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독립형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는 Speaker의 입장이고, 기사를 수정할 경우에는 Publisher의 입장이 된다. 법률관계를 적용할 경우는 작위나 부작위냐에 따라 소멸시효 진행 시점에도 차이가 있다. 책임의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경우 업로드할 때 작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 그 이후에는 일반 종이신문과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그것이 우리사회에 맞느냐 아니냐는 일반 법리를 검토한 후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부분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법리적 일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예시한 '변심에인사건' 같은 경우도 작위와 부작위 책임을 구별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윤종배(KBS 시청자서비스팀 차장) : 시청자 상담실 책임을 맡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초상권, 명예훼손 등에 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1년에 약 50만 건의 상담을 하는데 이 중에 제작파트나 방송 원로분들이 알아야 할 사례 1만 7천여 건을 모아 종합보고서를 만들었다. 시청자 의견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을 싣는데 여기에 보면 초상권에 관한 문제, 묵은 기사에 대한 삭제 요청 관련 사례가 많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KBS의 경우에는 시청자 수신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청자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시청자 입장에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은 대부분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사전에 해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단초는 시청자, 독자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조정하느냐에 있다. 이 교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인가를 발표하셨는데 법적 해결 이전에 언론사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풍부한 사례를 추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사 사례 연구를 통해 어떻게 인터넷 매체 관련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접근하면 생산자와 수용자 양쪽을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안용균(NHN 정책실 차장) :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언론이나 아니냐의 문제는 포털 사업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포털은 언론이 아닌 새로운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언론성 여부의 문제보다 포털 서비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중재위원회나 국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며칠 전 증권 투신사를 운영하던 사장님의 자살 기사가 있었는데, 관련 기사에 고인이 모교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다. 해당 학교에서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지만 자신들과 직접 연관이 없고, 학교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포털에서는 기사에 먼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기사 삭제, 변경, 수정 권한은 해당 언론사에 있다고 이해를 시켰다. 포털의 전파성 때문에 피해확산의 우려가 크다면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게시금지 결정 등을 해주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포털 입장에서도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권혁남 : 발제자도 포털을 저널리즘으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포털에서 제목을 변형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사실인가.

안용균 : 조선일보에서 네이버가 기사 제목을 바꾼다고 보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언론사와 계약을 할 때 제목을 바꾸지 않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기사 제목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정정보도성 반론보도가 나간 바 있다. 90년대 중후반 포털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 없었을 무렵에는 간혹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제목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김정섭(경향신문 미디어팀) : 촛불시위를 계기로 인터넷상 표현 문제가 불거져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또 현재 미디어 기술 발달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를 포털에 국한해 볼 것이 아니다. 이미 IPTV까지 출범한 상황이다. 포털을 언론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공익적 기능이 앞서는가, 상업적 기능이 앞서는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세부 기준을 세워서 공익성과 상업성을 따지면 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할 것인지, 상업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고, 구체 관련해서도 그에 맞는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자리에서 포털이 언론이냐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의 속도를 법제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 속도를 너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이 시점에서는 진전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언론과 보도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면책범위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공인의 개념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판례를 보면 배포, 편집, 취재행위 및 논평 기능까지를 보통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 과거에는 신문과 포털과 관련한 논쟁만 있었지만 현재는 방송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법 규정에 의하면 뉴스란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한 영역을 다루면서 논평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을 기초로 보면 뉴스 채널이 아닌 기타 일반 드라마, 연예정보, 경제정보, 문화정보 등의 채

널이 경제, 사건, 연예, 문화정보를 스크롤 뉴스로 만들어 보도하는 것은 뉴스에 속하는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다. 실체는 그와 같은 채널들이 보도채널이 아님에도 뉴스를 보도하고 있고, 연예인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과 보도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IPTV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방송, 전자상거래도 가능하게 한다. 또 포털과 마찬가지로 뉴스를 유통하기도 한다. 이미 KT 상품의 경우는 신문보기 서비스 제공에 이어 포털이 하나의 채널로 들어가 있다. 네이버 등 포털의 문제가 IPTV까지 확산된 것이다.

또 한미, EU FTA 규정을 보면 저작권과 관련하여 IPTV 등 쌍방향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는 일시적 저작이나 복제를 해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양국 간에 합의되어 있다. 이는 신문, 방송, 포털 등을 통해 보도된 뉴스를 다시 유통시키는 것이 양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도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늘 논의의 장을 기점으로 언론 및 멀티미디어 개방시대를 위한 언론법제 정비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내에 각 분과를 설치해 논쟁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우리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동근(광주중재부 중재위원) : 발제자는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 언론학자들은 대체로 언론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올렸을 뿐이기 때문에 취재 기자와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포털이 언론인지의 여부는 사건 자체 내용을 취재자가 변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취재보도 방식을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건 현장에서 기자

가 직접 취재하는 것도 취재보도이지만 기존 언론의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일부만을 선별하여 보도하는 네이버 등 포털의 행위도 결국 편집행위(Journalistic Decision)이다. 발로 뛰는 취재보도뿐만 아니라 상품화된 기사 중 일부를 자사의 편집방침에 따라 선별해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저널리즘이라 생각한다.

민성철(대구서부지법 판사) : 포털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목적 하에서 논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논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기타 신문 규제 등 언론사로서 규제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목은 기사 삭제 요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어떤 기사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허위의 보도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기사만 삭제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사 삭제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10년의 소멸 시효가 있는 것과 같이 보도의 시점에서 1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상규 : 언론을 바라볼 때 국가와 언론기관이라는 헌법적 측면의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불법행위적 측면에서 개인의 명예 회복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선 포털과 관련해서 통신망위법(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과거 영미법상 언론을 규율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 분류가 있다. 발행자(Publisher), 배포자(Distributor), 일반 통신업자(Common Carrier)가 그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발행자는 유책, 배포자의 경우 알고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유책, 일반 통신업자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사건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면책을 한 사건과 책임을 물었던 사건이 모두 있는데 유

책을 인정 한 경우는 ISP가 편집권을 행사했느냐를 따졌다.

CDA법이 만들어진 후 미국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ISP는 Speaker나 Publisher로서는 책임을 안 진다고 했다. 그러면 Distributor로서의 책임은 따져봐야 하는데 연방법원은 ISP가 Distributor로서도 책임을 안 진다고 결정했다. ISP가 인터넷에 올리는 콘텐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전재계약을 통해 실리는 뉴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게시판들 통해 일반 개인들이 올리는 콘텐츠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재계약을 통한 뉴스를 논의했는데, 일반 개인들이 게시판에 올린 내용에 대한 판결이 2~3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다. 여기서 법원은 게시판을 통해 일반 개인이 올린 내용에 대해서도 ISP가 책임을 안 진다고 판결했다. 미국은 결국 CDA를 통해 ISP에 일부면책을 만들어 놓았고, 법원을 통해 완전면책의 길로 간 것이다.

과거의 영미법 논리, 보통법·판례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 독일은 앞서 얘기한 언론을 규율하는 세 가지 분류와 비슷한 논리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완전 면책이라는 다른 논리 전개를 했나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헌을 접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독특한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은 언론의 책임을 공인이론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갖고 있다. 따라서 면책의 범위는 넓지만 한 번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결국 포털이 책임의 주체가 됐을 때 해당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피고가 됐던 회사들은 아메리카온라인(AOL), 프로디지(Prodigy) 등 강력한 ISP들이다. 이들이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을 맞게 된다면 산업 자체가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인터넷 강국인데 전 세계적 산업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면책의 범위를 넓게 보지 않

나 추측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포털에 책임을 지운다고 해서 경영상의 제약을 가져올 정도로 큰 손해배상을 물릴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전 재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둘 사이의 내부 계약관계에 의해 포털만 책임을 지지도 않을 것이다. 언론사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본다. 구상관계를 따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책임 비율이 정해질 것이다.

김시철 : 포털이 Speaker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언론사와 계약에 의한 것일 때는 해당 언론사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댓글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시판 운영자와 댓글을 올린 사람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성립이 검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과도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해서 저작권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사삭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뿐 아니라 기사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재진(발제자, 한양대 교수) : 언론사의 대처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그런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둔다면 법적 소송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이전에 언론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CDA 230조에 보면 ISP의 면책과 관련된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 조항이 있다. 그러나 ISP가 Distributor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냐의 문제에 있어 기존의 완전 면책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Distributor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댓글 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징적인 문화다. 최근 미국에서도 Speaker의 역할을 하진 않지만, 네티즌들이 어떠한

정보를 만들도록 유인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댓글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 것에도 책임을 묻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된 판결 전체 47건 중 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면책보다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로 미국의 판례경향이 자리잡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미국의 통신기사 인용 면책 주장(Wire Service Defence)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언론사는 아니지만 언론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자고 한다면 기존의 언론사와 동일한 면책을 적용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도 이러한 조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도 사실 대법원 판결이 없어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마다 다르다. 일본은 최고 재판소에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 법원도 인정하지 않는다.

언론이나 아니냐를 따지기 보다는 언론에 의한 피해를 적절히 구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실익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포털에 언론사 출신이 많은데 이와 연관되어 의제설정 기능도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보도의 선택 행위를 저널리즘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누구나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할 만한 기사를 포털들도 앞서 배치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 중재부를 두어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으면 한다. 언론관계법이 개정이 될 예정이고 포털도 뉴스서비스사업자로 포섭이 되어 언론사로 규정되진 않더라도 언론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방법이 마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담부를 두어 해결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제2주제 토론

권혁남 : 기사라는 것은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의 결합이다. 저널리즘의 변화를 살펴보면 50~60년대는 객관적 저널리즘이 지배적인 시기였다. 사실 중심으로 가다보니 언론의 무책임성이 강조됐고 그것이 비판받았다. 그래서 70년대부터는 탐사적 저널리즘, 80년대부터는 해석적 저널리즘으로 변화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사실보다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잡고, 관련 자료 확보에 노력한다. 해석적 저널리즘이 자리를 잡은 이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송사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논의된 범죄보도, 경제보도, 종교보도 등 5가지 면에서 면책범위에 관한 논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성일(중도일보 사회단체팀 팀장) : 소개된 판례사건을 보니 대전 사건이다. 우리 신문도 관련 있고, 오랫동안 파장을 가져왔었다. 종교기사를 쓰다보면 조심스러운 점이 많다. 대전 MBC의 시사PLUS에서 신천지 사건을 다뤘다. 예고 방송이 나가고 신천지 교도의 위협이 있었다. 경찰의 호위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 방송 후에는 신천지 사람들이 계속 전화로 협박하고 서버를 다운시키기도 했다. PD가 2편을 준비하다 포기했다. 방송을 진행하던 변호사는 얼굴이 알려져 협박을 많이 당했다. 종교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부분을 많이 고려해 줬으면 한다.

오동연(서울신문 법조대기자) : 언론기관의 범죄보도와 관련해선 판결중심의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다른 언론사에 뒤지게 된다. 예를 들면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당시 중앙일보에서 2단으로 내보냈다. 그 보도가 안 나갔다면 진실이 밝혀졌을까. 판례중심으로 갔다면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 밖의 사건에서도 언론의 보도가 아니면 문힐 사건이 많다. 언론의 속보성도 관대하게 인정을 해 줬으면 한다.

김정섭 : 언론사에서 기피하는 영역이 실존한다. 사이버 종교 단체, 특정한 장애인 단체, 최근 북파공작원 등이 기피하는 대상이다. 이성적인 소구로 설득이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도의 실익보다 외적인 갈등이 더 심해서 그렇다. 그렇다고 성역으로 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설득의 묘미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보도 원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발제와 관련해서 공인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대해서 봐야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 공인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면책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과거에는 공인이 공직자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다양한 직종이 생기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공인의 범주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판결을 할 때 법리에서도 공인의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다.

김명현(경남신문 사회부 부장) : 법조출입 시 변호사 법조비리 기사를 썼다. 변호사를 A라 하고, 브로커를 고용해 영업을 했다고 폭로한 사무장은 B로 익명 처리하여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했다. 그러나 결국은 소송을 당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는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변호사 관련 기사도 쓰기 싫어 한다.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는 공인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봤다.

권혁남 : 경제보도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삼양 우지라면 보도 사건도 과장보도가 문제되어서 회사가 망했다. 불량만두 사건으로 그 당시에 자살한 사람도 있다.

조원철(서울제6중재부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 : 보도 추세가 사실보도에서 논평위주로 가고

있다. 뉴스 소비자는 객관적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보도 추세와 함께 매체 간 경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논평하는 사람이 구미에 맞는 사실을 구성해서 보도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논평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보도하기 전에 반론기회를 주는 것을 취재활동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경우도 많다.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법리에 의해서는 면책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보도한 경우, 논평위주 보도의 추세에 비춰 보면 그 자체로서 위법성 근거로 봐야하지 않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근거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김용옥(광주중재부 중재위원) : 광주중재부에는 지역의 군 단위 신문의 보도 내용으로 인한 사건이 많이 들어온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자 소양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기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일간지는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안다. 사실상 교육이 필요한 것은 군 단위의 신문들이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기쁨(서울중앙지법 판사) : 범죄보도의 경우 일본은 판결이 나온 이후 이를 위주로 보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언론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 범죄사건에 대해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자체만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 밀착취재 과정에서 보도가 과장되면서 문제가 된다. 경제보도의 경우 기업 소송이 들어오면 재산적 피해 액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임재업(충청일보 편집국장) : 일선에서 경영하고 제작하다보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문제 제기를 하면 다 걸린다. 언론사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률적 시각으로만 보면 쓸 기사가 전혀 없다.

이재진 : 미국에도 기업과 관련된 보도가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공적 존재로 봐서 공적 존재에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실제로 미국은 기업을 공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정부 관할 기업, 그 다음은 기업 보도 내용이 대단히 공익적일 경우는 기업을 공인으로 봐야한다는 원칙이다. 면책 범위를 좁게 한다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공기업과 일반 기업은 달리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잘못된 기업보도가 피해를 남기기도 하지만, 면책 범위를 좁게 한다면 꼭 있어야 할 보도도 힘들게 되는 측면을 고려해 기업도 구분을 해서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시철 :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인이론은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다. 처음 출발은 공직자(Public Officer)이다. 여기서 공적 인물(Public Figure)로 확대해 나간다. 공직자에 하급 공무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공인은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 연장에서 공인은 유추적용이 된다. 당연히 유명인은 셀러브리티(Celebrity)라서 공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공직자가 아니라 공인에서 출발해서 개념이 흔들린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이 아닌데 국가권력에 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인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앞에 단계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확대된 개념에서 시작하면 이론 정립이 안 된다.

또 피의사실 보도가 자주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보도 관행과 연관이 있다. 언론이 범죄보도를 할 때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쓰지 않는다. 보도가 강하게 나간다. 그러다 보니 단정적으로 표현이 돼서 문제가 된다.

임경록(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 언론이 사회의 큰 권력이긴 하다. 그러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권력이다. 최근에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 일반 범죄자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법원이 언론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한다.

김시철 : 문제가 생기면 원칙에 따라 영역을 따져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을 만드는 법이 없다. 누가 제기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다.

권혁남 : 언론계 현실에서 보면, 마감이 압박해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 생기는 부작용이 많다.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상규 : 오늘 소개된 판례들은 거의 공인이 아니거나, 공적 영역과 상관없는 것이다. 대부분 사인과 관련된 것이다. 공인은 보도와 관련해 거의 문제가 없다. 익명성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확인만 거치면 된다.

김용옥 : 언론사의 충분한 조사 의무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기자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자는 수사권이 없다. 국선변호사에게 확인해도 정확하게 말해 줄 것인지 의문스럽다.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사실을 따지기보다 자신이 맡은 사건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상규 : 국선변호인에게 확인을 한다고 해서 진실을 알 수는 없겠지만 언론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럴 경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사의 책임은 다르다.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일이고, 언론기관은 상당성 법리로 가는 것이다.

민성철 : 언론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언론사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편집권을 가지고 의제를 설정하고 독자의 의견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어떤 범죄보도를 할 때, 언론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그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피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 대법원에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언론사가 100% 사실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당성의 논리로 면책 범위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유영현 : 경제보도 영역은 기획기사가 많다. 이런 기사는 많은 검증을 거친다. 그런데 일부 결과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한다면 경제 영역은 보도를 하지 못할 것이다. 소송을 할 경우 소송액도 매우 크다. 확인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영역은 성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호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기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느끼고 있다. 기자는 진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다. 법원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재판을 걸고 있다. 법원은 기준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데 당하고 있어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하라고 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 판례가 발전하는 것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무시할 수 없어서 책임을 야기한 쪽에 일정부분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보도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범죄관련 보도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적다. 법원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언론사에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양 당사자를 비교형량하고 어느 쪽을 보호할지 생각하다 보니 반대 당사자가 조금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동근 : 흔히 언론을 제4부라고 한다. 언론의 역할에는 사법부 이상의 역할이 있다. 같은 사건 보도라도 판사가 보는 시각이 있고, 기자가 보는 뉴스 가치가 있다. 기존의 법질서에는 어긋나지만 공론장을 확대해서 기존의 법을 바꾸는 역할을 언론이 하기도

한다.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현장 검증을 할 경우, 실정법에 따르면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언론에서 그런 파렴치범의 얼굴은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을 모아 법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오동연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 피신청인 대리인으로 차장이나 담당 기자를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가려고 한다. 중재부장들이 심리를 진행하면서 형사재판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좀 더 부드러운 진행을 바란다.

성낙송(발제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법원과 언론은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한다. 진실이 뭔지 밝히는 데 협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오늘 토론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해석적 보도의 문제는 어떤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해석적 보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해석보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영역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의 산정은 일반 사건보다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보도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언론계의 조사확인 의무와 관련해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조사확인 의무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 범죄보도를 할 때 보도를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보도인가는 언론계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판례가 언론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보도하자는 쪽으로 하나하나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종전에 관행으로 치부되던 영역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안영률(법원 언론법 분야 연구회 회장) : 공동 주최자

로 참여한 데 감사한다. 같이 참석하여 보니 분위기가 열을 띠어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2000년부터 언론사건 재판을 해왔다.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사건보도의 질은 엄청난 발전을 보였고, 사건 수는 크게 줄었다. 언론관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린다.

권 성(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별히 발제를 해주신 이재진 교수님, 성낙송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님, 사회를 맡아주신 권혁남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발표의 내용이 치밀하고 분석이 탁월한 논문이라 생각한다.

토론과 직접관계는 없으나 좋은 말씀을 몇 분이 해 주셨다.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의 마이너 언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다. 적절한 지적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76회의 교육이 있었다. 그 중에 25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교육이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의 마이너 언론사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그런 곳을 배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금년에 신청사건이 줄고 있다.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이유를 알았다. 언론사 자체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오펜연 대기자께서 부드러운 진행을 말씀하셨다. 중재위원회에 와서 시간이 나는 대로 조정심리에 참여하고 있다. 조정에 참여하면서 많이 놀랐다. 조정심리에 들어가 보니 중재위원들이 참을성 있게 당사자 얘기를 다 듣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다른 중재부도 마찬가지로 민주적이고 친절한 태도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오늘 토론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을 할 때 포털 사이트 댓글의 위력을 느낀 적이 있다. 탄핵 재판을 할 때 변론과정에서 청구

인 쪽 대리인에게 석명을 구한 적이 있다. 며칠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다. 대부분이 원색적 욕설과 위협이었다. 2주일 정도 계속되다 어느 순간 중단이 됐다. 그 때 댓글의 파괴력, 영향력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근간인데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비난한다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법이 먼저 언론의 개념을 확정짓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피해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 하는 쪽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인격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언론이 그동안 군사 통치에 대한 저항, 민주화를 위한 몸부림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기여를 했고 공을 세웠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과정에서 언론의 논조가 과격하고 때로는 균형을 잃은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심한 표현과 절제 없는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았다. 이런 것이 일반국민에게는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할 때는 저런 것도 다 용납이 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한다. 일반 시민들의 댓글을 보면 모욕적이고 균형을 잃은 언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군사 통치도 끝났고,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언론의 품위,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의 품위도 격상되어야 한다. 언론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에 대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로 헌법상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면, 이것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상관관계에 있다. 알권리는 원칙적으로는 국가 권력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되는 기본권이다. 국가권력이 아닌 개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국가에 요구하는 정도로 개인에 대한 알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개인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있다. 이것을 지키고 보호받는 것도 중요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알권리를 국가권력과 동일한 정도의 강도로 일반 사인에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는 개인주의가 아닌가 한다. 개인이 가지는 인격, 명예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설사 내 종아리에서 털 한 오라기를 뽑아서 천하가 이로울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안 하겠다는 말이 있다. 이같이 예로부터 개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사상이 있는 것처럼, 오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원칙으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권 보호는 표현의 권리에 못지 않는 기본권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면책의 법률을 따질 때 공인,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공공의 이익을 따질 때 자칫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주의 정권, 독재정권은 항상 공공의 이익을 앞세웠

다. 그러나 현실의 경험에서 보면 자칫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남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행사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 측면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논어에 보면 道聽而塗說(도청이도설)은 德之棄也(덕지기야)라는 말이 있다. 길에서 들은 이야기를 길에서 흘리는 것은 덕에 반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일부 인터넷에서 보면 우리가 사적인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농담, 험담, 잡담을 공개된 장소로 끌고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언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언론과 똑같은 범주에서 생각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한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언론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업무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관계법 개정 작업에 의견 진술할 기회가 있으면 오늘 토론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겠다. 또 법원의 판사님들에게도 재판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한다. □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와 그 침해의 구제 방안¹⁾

양 경 승
판사, 사법연수원교수

I. 인터넷 공간상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1. 인터넷의 보급과 폐해

최근 탤런트 최진실 씨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 인터넷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 인구는 전체 인구의 75%가 넘는 약 3,500만 명으로서 세계에서 그 보급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과 표현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가상공간이 표현욕구와 본능의 배설구이자 화장실 벽의 낙서판으로 변함으로 써, 근거 없는 악소문의 전파,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생활폭로 등이 범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자살, 정신장해, 사업실패 등 그 역기능이 심각한 실정이다.²⁾

기존의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서 인터넷은 용이한 접근성과 저렴한 비용, 쌍방향적 정보교류를 통한

증폭·상승·확대재생산 효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은밀성으로 법익침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고, 그 파급효과 역시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음란한 정보나 타인의 명예 등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될 경우 그 피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 반면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구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통신, 방송기술과의 융합에 따라 인터넷과 기존 매체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기존 매체 간에도 그 장벽이 무너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매체를 전통적인 시각으로 구별, 분류할 수도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규제와 피해구제 역시 단편적으로 대응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근래 인터넷과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전통적인 법적·제도적 규율수단의 유효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

1) 이 논문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심포지엄에서 발제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2) 최근의 사례만도 최진실 씨 외에 지난해 자살한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도 성형 논란 등 악플에 시달렸고, 그것이 자살의 한 원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가수 나훈아 씨 관련 괴소문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본인이 열거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야 가라앉았다. 이와는 유형이 다르지만 잘못된 거나 근거가 없는 의료지식이나 영터리 의학정보도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2008. 10. 6.자 5면 참조).

발하다. 특히, 인터넷상의 표현활동에 따른 피해를 규제,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바, 인터넷산업의 발달이 현저한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그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그 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그 위에 필자의 의견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가부

헌법의 문리적 규정에는 언론, 출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이는 널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으로서 담화, 연설, 토론, 연극, 방송, 음악, 소설, 도화, 사진, 조각 등 그 표현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상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³⁾이다.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는 그 수단으로 인간의五官으로는 직접 수용할 수 없는 디지털 암호나 부호가 게재되나, 이 역시 인간이 표현행위를 위해 미리 안출, 약속한 상징언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문자나 말, 그림 등과 달리 보아야 할 이치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도 인쇄매체나 방송과의 결합 형태는 물론 그 자체로서도 헌법상의 '언론, 출판'에 속하며 똑같은 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절대불가침의 권리라고 할 수는 없다. 즉, 표현행위는 타인의 명예나 신용, 프라이버시, 업무 기타 인격권 등 개인적 법익이나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등 국가적·

사회적 법익의 침해를 불가피하게 야기하는바, 이러한 법익 역시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서 타인이나 청소년 등 사회성원의 존엄성 유지와 행복추구, 인격완성에 필수불가결하므로 양자의 균형과 조화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등 다른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이익형량, 적정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 법적 제한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등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⁴⁾

따라서 인터넷상의 표현행위 역시 이 같은 원리에 의한 규제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런데 기존의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인터넷은 그 범위와 대상이 워낙 넓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한 한계로 인해 그 규제나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고 다종다양한 데에다 그 정보 유통량이 막대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기술변모가 매우 빨라 근원적으로 규제에 한계가 있고, 작금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실명제나 사이버모욕죄 등을 도입할 경우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언론이 위축되고 비판기능이 축소될 수도 있어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한 반영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미국식 방임형과 유럽식

3)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바17 결정.

4)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등 결정.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간여형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행위 역시 그 기술적·수단적 특성에 불구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기존의 매체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타율적인 법적·제도적 규제가 불가피하다.

우리 대법원 역시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기존 매체에 대한 것과 같은 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등 다른 권리의 균형과 조화라는 대명제 하에, 인터넷 공간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고 인터넷 기술과 문화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기존의 법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보완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그 순기능을 신장하는 동시에 그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인터넷의 속성에 따라 기존 매체와는 다른 수단과 내용의 규제와 피해구제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또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 피해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역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인터넷 비용의 증가, 통신 지연 등의 사회적 비용이 뒤따른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II.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

1. 규제의 대상

오늘날 인터넷 공간은 다종다양하며 그 공간 내에서의 표현활동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①전자우편(e-mail)이나 채팅 같은 일대일 공간, ②포털로 대표되는 인터넷서비스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⁵⁾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사이트, 게시판(bulletin board)이나 대화방, 토론방 등의 공개광장(public forum), ③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과 같은 이른바 전자언론 공간, ④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령하는, 학교, 기업, 관공서, 개인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블로그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①은 공연성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의 우려가 거의 없고, ③, ④는 댓글 등에 의한 피해 발생의 여지가 있으나 기존 신문·방송매체보다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들이 언론으로서 보호되고 규제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활동 형태에 따라 규제와 구제수단의 방향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⁶⁾

현재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은 복잡 다양하지만, 이를 크게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대분할 수 있다. 전자는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과 같이 취재, 편집(편집성), 보도, 논평, 해설 등을 통해 여론 및 정보의 전파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언론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⁷⁾ 반면 후자는 전기통신설비나 그것과 컴퓨터를 결합한 정보통신체제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하는 행위자

5) 인터넷 공간의 주체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정보를 제공·전달·저장하는 등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ISP와, ISP가 제공하는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다. ISP는 OSP(Online Service Provider)라고도 불리는데 정보통신망법은 유사한 개념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고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로 한다.

6) 규제의 상대방은 ISP, 홈페이지 운영자, 게시판 등 커뮤니티의 관리·운영자, 이용자가 될 것인데, ISP의 규모와 기능이 가장 크고 중요하여 근래 규제의 중점은 ISP로 모아지고 있다.

7) 언론중재법 제2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으로 약칭함) 제2조, 방송법 제2조 등 참조.

로서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용자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⁸⁾

한편, 언론중재법은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 의한 피해구제를 본령으로 하며, 그 특유의 구제수단으로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권을 인정하여 권리행사의 요건과 구제절차 등에 있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의 언론활동 중 언론중재법의 유일한 규율 대상은 ‘인터넷신문’으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할 때 이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인터넷신문’ 외의 인터넷 공간 전부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서비스의 이용 촉진과 그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체제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을 꾀하는 것을 주안으로 한다. 다만, 이 법에서도 그 유통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직접적으로 삭제와 반박내용의 게재 청구권을 부여하고, 간접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심의와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언론중재법의 규율 대상이 매우 좁아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 전부가 이에 포함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근래 그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포털의 뉴스서비스 기능과 언론사닷컴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형태와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더욱 그 확대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인터넷신문’ 외에 다른 인터넷 언론매체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되, 그 포섭기준을 위와 같은 ‘보도’ 활동에 두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의 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면 이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회적이거나 간헐적인 것은 포섭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의 ‘인터넷신문’ 대신에 이를 ‘인터넷언론’으로 하고, 그 구성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계속적으로 전파할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타인이 취재, 편집, 집필, 편성한 기사를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인터넷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 이렇게 되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포털,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언론사닷컴)는 이에 포함될 것이나, ‘보도’ 활동을 주된 업무로서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 공공기관, 회사, 학교, 개인 등의 인터넷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은 제외될 것이다.

2. 보호법익

인터넷 공간에서도 개인적 법익,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이 모두 침해될 수 있다. 이들은 민법, 형

8)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2조 참조.

9) 현재 ‘인터넷신문’은 신문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그에 따른 많은 규제를 받는데, ‘인터넷신문’ 외에 뉴스서비스를 하는 인터넷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언론’까지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신문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성격이나 구조 등 여러 면에서 타당치 않다고 생각된다.

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실정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개인적 법익의 경우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초상, 성명 등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모든 법익이 다 포함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법상의 그것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3. 구제수단

가. 손해배상

(1)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으로 법익을 침해한 경우 민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①침해행위(표현행위)와 손해의 발생, ②침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③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④침해행위의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한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정보의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데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문제는 그 정보를 매개·전파한 자의 지위이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라 하더라도 기사 제공자(contents provider)로부터 받은 정보를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그 정보를 편집하는

경우도 있으며, 스스로 취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이들의 지위를 논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배포자(distributor) 또는 단순 운송자(common carrier)¹⁰⁾의 지위에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기술적으로 그 정보를 통제·관리할 수 있으며, 신문이나 방송이 통신사나 독자 등에게서 제공받은 기사를 보도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들 역시 면책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힘을 얻고 있다.

(2)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이 작성한 불법정보를 매개하여 게시한 경우 그 자체로써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 서비스 제공자가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같이 자신의 취사, 선택을 거쳐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편집권 또는 이에 유사한 권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당해 정보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통상 교양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였다면 고의, 과실이 있게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¹¹⁾ 그러나 카페, 블로그, 대화방, 게시판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에게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히 기술적 매개 역할만을 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를

10) 이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표현행위를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고의, 과실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11) 네이버가 노컷뉴스로부터 뉴스정보를 제공받아 제목을 축약하는 변형만을 한 후 자신의 뉴스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의 위 행위가 취재, 편집, 배포의 면에서 일반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 이를 언론매체로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상고 없이 확정됨).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아 게시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행위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므로(단, 뒤에서 보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굳이 언론매체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게시하도록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불법한 정보의 게시를 거부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나친 책임을 부과하게 되고 인터넷상의 신속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타인이 게시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심사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긍정할 경우 정보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통신과 유통이 지연, 감소되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인터넷이 갖는 긍정적 순기능이 대폭 제약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3)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이 게시한 불법정보를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삭제할 의무를 지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미국의 경우 Zeran 사건에서 법원은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피해자의 삭제요구를 받고서도 악의적으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닌 이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하였다. 또한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전달하거나 자신의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제8조 제2항) 서비스 제공자의 심

사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런 법규가 없는 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자신의 업무로서 취급하고 그를 통하여 영리를 얻고 있으며, 당해 불법정보에 대한 게시의 계속 또는 중지, 삭제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등으로 이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위험지배자의 위험배제의무 이론에 따라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같은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상태, 종사자의 수, 유통되는 정보의 양과 질, 정보 제공자의 지위와 신뢰도, 서비스 제공자의 영리 목적 유무 등 경제적인 면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¹³⁾

(4) 마지막으로, 포털이 통신이나 다른 언론사로부터 뉴스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원형 그대로 또는 의미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한 후 게시한 때의 책임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그 후 원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주로 발생하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이때 언론사의 정보를 믿고 전제한 데에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도 연관되어 있다.

우선, 포털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행위를 한 자도 당연히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게시한 정보의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

12) 앞서 미국의 Zeran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게시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안인데,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내용심사를 한 경우 publisher로 취급되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므로, 통신품위법 규정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같은 부담을 제거하여 정보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책임을 부정하였다.

13)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의 이익에 합치될 경우 그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언론사 등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게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포털 등은 독자적인 취재인력을 갖추지는 않고, 언론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전적으로 신뢰한 채 단순히 제목을 새로 달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외에 그 배치공간을 정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한 후 이를 그대로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의 사이트로 링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건은 기사를 언론사가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이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신문·방송사가 통신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뉴스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 ①그것이 신뢰할 만한 뉴스 수집기관으로부터 받았고, ②그 뉴스가 허위인지 몰랐으며, ③그 뉴스 자체의 문면상 그것이 부정확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사항이 없고, ④제공받은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때에는 명예훼손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통신사 제공 기사의 항변(wire service defence)’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¹⁴⁾

그러나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전제하고 있는(언론사와의 계약이나 약관에 의하여 기사의 수정·편집권을 언론사에게 유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믿어서는 아니 되고 따로 조사·확인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의 현실적 조건 및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활동이 갖는 기술적 특성과 그를 통한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전파 기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한편, 당해 기사가 소재한 언론사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그 사이트로 링크되도록 조치한 경우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1216 판결이 참고가 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문기사 등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그 기사가 원래 게재된 웹사이트로 링크시켜 놓은 행위는 일응 이미 일반 대중에게 공표된 정보를 그대로 인용(전재)한 것이거나 그 정보가 소재한 웹사이트의 주소를 선전 또는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문기사 등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인터넷의 게시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전재 또는 링크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원문기사 등을 단순히 인용 내지 소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원문기사 등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그 원문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만 원문 작성자와 동일한 내용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나. 정정청구

현행법상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정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에 의한 때는 동

14) 앞서 본 미국의 통신품위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당연히 면책된다.

법에 의해, 기타의 경우에는 민법(제764조)과 공직선거법(제8조의2 제5, 6항, 제8조의3 제3, 6항, 제8조의6 제1, 2항)에 의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인터넷 언론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내용의 게재,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만을 규정하고 있어(제44조의2, 제44조의7) 권리구제에 미흡하다. 반론이나 반박은 피해자의 명의로 게재하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피해구제에 부족하므로¹⁵⁾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정정청구권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정정문의 게재 의무자이다. 당해 정보의 게시자가 서비스 제공자인 때에는 그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양자가 다른 경우이다. 이 경우에 게시자를 상대로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는 매개체인 정보통신망을 소유, 관리하지 못하는 자이므로 필경 다른 언론매체의 광고란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그 실현성이 낮은바, 이런 경우에도 굳이 정정을 원하는 피해자는 민법에 의해 이를 청구하면 될 것이다.¹⁶⁾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작성 또는 게시

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도 정정의무를 지는가?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통신이나 다른 언론사, 기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보도된 경우에도 그 의무가 인정되고 있고, 이는 위험 야기자의 책임 원리, 인격권의 준물권적 절대성¹⁷⁾ 등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가 그 작성자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정정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며,¹⁸⁾ 작성자, 게시자의 동의 없이 정정하는 경우 작성자나 게시자의 저작권권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도 문제가 된다. 전자의 문제는 원문을 변형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없으나, 정정을 용이하게 하고 양자 모두를 상대로 한 정정청구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절차에서 양자를 동시에 참여시켜 하나의 절차에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방안으로서 양자를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원래 이들 양자가 공동 피고가 될 경우 이들의 관계는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에 있고, 그 1인의 소송행위 또는 그 1인에 대한 소송행위 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데(민사소송법 제66조),

15)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등 결정 참조. 민법 제764조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이나, 이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언론중재법의 그것과 달리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매우 좁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16) 공직선거법상, 문제된 보도 후의 정기간행물이 선거일 이후에 발행되는 경우 그 반론보도문을 다른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참고가 된다(제8조의4 제2항).

17) 소유권의 방해자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214조와 관련하여 법원은, 그 방해를 직접 야기한 자는 물론 그 같은 방해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자도 그 의무자가 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18 판결).

18) 이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권 행사에 있어서도 현저하다.

법률로써 이들의 관계를 필수적 공동소송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취급할 경우 양자의 실제적 법률관계에도 반하고, 반드시 양자를 공동으로 하여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에도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일방에 대하여 추가로 제소 등 구제절차를 취하게 하고 이를 하나의 절차에 병합하는 방안도 제척기간의 도과나 심리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문제가 많으며, 일방에 대한 조정이나 판결의 효력을 다른 일방에 미치게 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기판력제도의 본질에 어긋나 채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 중의 당사자추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양자 중 일방만이 구제절차의 피고가 된 경우 피해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누락된 다른 일방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68조나 제70조는 양자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거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만 적용 가능하므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특별규정을 신설하여 소송절차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분쟁조정절차에 이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반론청구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는 쌍방향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원래부터 반론이 허용되고 자유로운 것이지만, 그 반론에 있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민법 제764조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할 것이 필요하다.¹⁹⁾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도 피해자의 반박내용 게재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고 이를 피해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제44조의2).

반론권 행사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피해자 스스로 이미 반론적인 내용을 충분히 게시한 경우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이 같은 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1호). 둘째는, 이미 문제된 기사가 삭제된 경우이다. 삭제된 후라면 이에 대한 반론의 필요가 약하다고 할 것이나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원하고 그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와 정보의 게시·제공자가 다른 경우의 문제는 정정청구의 그것과 같은 차원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라. 기사의 삭제

(1) 영구삭제

인터넷 공간에서 문제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피해구제 수단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요구권을 부여하는(제44조의2 제1, 2항) 외에,

19) 이른바 대항언론(more speech) 이론에서는 인터넷 공간상의 침해자와 피침해자의 접근 동등성에 주목하여, 피침해자는 원칙적으로 침해자에 대한 반론으로써 그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그것만으로 피해구제가 현저히 불완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라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직접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4조의 7,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8조), 공직선거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82조의4). 민법 제764조도 그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도 삭제할 수 있다.

이 같은 삭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이는 사후심사에 의한 것이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관청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음은 의문이 없다. 그런데 정보 제공자나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 정당한 근거가 없을 경우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와의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는 약관이나 규약이 있을 때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²⁰⁾ 그 같은 약관 등이 없을 때는 법률이나 조리에 의할 것인데,²¹⁾ 당해 기사가 위와 같이 위법하고 그 삭제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그 삭제에 의해 구제되는 피해자의 법익이, 이를 방치함으로써 얻어지는 게시자의 법

익에 비해 우월한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적법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통신품위법은, 음란·외설 정보나 타인을 괴롭히는 등의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선의로 접근차단 등의 자발적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제230조 C). 또 앞서 본 일본의 법률도, 그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권리의 침해를 받는 자로부터 그 정보의 송신 방지 조치를 요구받고 서비스 제공자가 발신자에게 그 송신 방지 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회하여 발신자로부터 7일 내에 부동의한다는 답변이 없는 때는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송신 방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송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우리의 경우 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기사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그 판단의 주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게시자 등 정보 제공자의 이의신청권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²²⁾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외부의 지시, 명령에 의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체 판단에 의해 삭제하는 경우 모두 게시자

20) 대법원은, 게시된 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내용일 경우 서비스 제공자(하이텔)가 삭제할 수 있기로 약관에 규정되어 있고, 실제 그 게시된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면 서비스 제공자는 약관에 따라 이를 삭제할 수 있고, 그러한 약관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어서 약관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21) 앞서 본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의 사안은 약관이 없었던 경우다.

22) 공직선거법 제82의4에서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당해 정보의 게시·전송자에게 3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등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고, 삭제처분에 대하여 신속히 이의나 재심을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며, 그 최종적인 처분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사법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주어야 할 것이다.²³⁾

(2) 임시삭제

영구삭제가 안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면 임시삭제도 유효한 피해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은 없고, 다만 임시적 수단으로서 일시적인 접근차단만이 인정되고 있는바, 영구적 삭제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임시로 삭제된 기사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삭제요구 등 원래의 기사에 대한 이의가 철회, 취소된 때, 법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궁극적인 처분에 의하여 기사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임시삭제 역시 기사 게시자 등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사전 의견진술권, 이의신청권 등을 부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인터넷 언론 중 일부를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흡수할 경우 삭제청구권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언론중재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하여도 삭제가 피해구제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에 그 필요성과 유효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언론중재법에 도입할 경우 그 근거와 행사요건

등은 민법 제764조에서 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을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고, 또 민법에 의할 경우 그 권리행사 기간이 너무 길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권과 동일하게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고, 그 권리행사 기간을 단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이나 중재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문제된 기사의 임시삭제나 아래와 같은 접근차단, 게시중지 등 임시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준사법적 분쟁조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점과 그에 대한 불복수단이나 절차가 마땅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강제적 조치는 쉽게 도입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으로써 이를 구함이 타당하며, 언론중재법 제6조의 적용 대상에 위 ‘인터넷언론사’를 포함시켜 고충처리인을 두게 하고 임시삭제 조치 등의 권고도 그의 직무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접근차단,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이용정지, 이용해지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제44조의7), 공직선거법(제82조의4),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8조)은 문제된 인터넷 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²⁴⁾ 제한, 접근차단과 함께 그 게시자,

23)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840 결정 참조.

24) 취급정지는 게시의 중지로서 실질상 임시삭제에 해당할 것이다.

전송자에 대한 이용정지, 이용해지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피해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도 그 같은 조치의 정당한 근거의 유무가 문제되는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약관에 의할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러한 조치를 명령, 요구할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게시자 등의 법익 형량, 필요성, 다른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에 가처분으로써도 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 역시 게시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관하여 게시자 등의 정당한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의견진술권, 이의신청권, 사법심사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인바, 위 법령의 규정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구제기관, 구제절차

언론중재법의 제정, 시행으로 종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하여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구제절차가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의한 조정, 중재, 소송절차로 일원화되었으나, 인터넷 언론은 그 대부분이 이에 포섭되지 못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분쟁조정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언론 중 일부를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으로 흡수할 경우에도 이 같은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나, 위와 같이 '보도' 활동을 주로 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관장에 두는 것

이 좋다고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중재절차는 소송과 같은 대심적 구조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리와 분쟁해결을 도모하므로, 그 절차나 비용, 심리의 부담 등에 있어 보다 신속·간이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까지 이를 통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5. 부수적 장치

가. 자료의 보존, 유지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문제된 정보의 삭제, 편집, 게재 등이 용이하므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래의 상태를 보존,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내용을 일지에 기록, 비치하고 그 실시결과를 1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방송된 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6월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제83조). 또 언론중재법은 정정이나 반론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제16, 17조 제3항).

인터넷 정보의 다양성과 그 막대한 생산·유통량 등을 감안할 때 그 보존·유지 기간은 1월 이하의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많은 경우 피해자는 그 입증을 위해 해당 기사를 인쇄해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언론중재법의 위 규정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본인확인조치(실명제)

(1)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5)과 공직선거법(제82조의6)은 익명의 정보 게시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사후 제재를 위한 목적에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보를 게시할 경우 일정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또는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권리침해가 그 대부분 익명의 기사에 의한 것이므로 실명제가 그 대안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적용 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1일 평균 이용자가 20만 명 또는 30만 명 이상인 게시판 등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근 그 적용 대상 사이트를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²⁵⁾

(2) 위와 같이 이미 실정법에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²⁶⁾ 과연 이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금지, 평등권, 프라이버시권 등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표현행위에 관하여 자신의 신분이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밝히지 않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권리)에 포함될 수 있고,²⁷⁾ 그 정보가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도록 법으로써 강제하면 헌법 제12조 제2항에 반하여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²⁸⁾ 이로써 표현활동이 사전에 금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는 국가권력이

25) 현재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약 51%, 약 38개 사이트가 그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그 사이트는 250여 개로 늘어나리라 한다(대한변협신문 2008. 10. 13.자 1면 참조).

26)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는 2005. 8. 4.부터, 정보통신망법의 그것은 2007. 7. 27.부터 시행되고 있다.

27) 미국 연방대법원은 예술작품의 창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과 이익에 불구하고 저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힐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경제적 혹은 직무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사회로부터의 추방에 대한 염려, 또는 단순히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등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익명의 작품을 사상의 자유시장에 들어오도록 허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의심할 바 없이 그 전제조건으로서 신원공개를 요구하는 이익보다 훨씬 크며, 따라서 익명을 취하기로 한 저자의 결정은 그 출판물의 내용을 삭제,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며, 성명,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채 후보자의 당락을 유인하거나 금전을 출연케 하는 내용의 신문, 잡지, 전단, 팸라 등을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오하이오주 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Joseph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514 U.S. 334, 115 S. Ct. 1511(1995) 참조). McIntyre는 교육세 부과를 반대하며 그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반대투표할 것을 주장하는 전단을 익명으로 작성, 배포했다가 오하이오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이 같은 연방대법원의 견해는 이미 1960년의 Talley v. California 사건에서도 표명된 바 있다(362 U.S. 60 참조).

28)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의 '진술의 강요'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사실상(물리적) 강요는 물론 법령에 의한 강요 역시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진술'은 구두진술에 의한 언어적 표현은 물론 문자나 그림, 기호 등에 의한 진술서의 작성, 신체동작이나 표정에 의한 표현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또 '형사상 불리한 내용'은 유죄판결의 기초로 되는 사실은 물론 양형상 불리한 사실이나 범인 추적의 단서가 되는 등의 간접사실도 이에 속하므로 그 신원을 고지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1997. 7. 16. 선고 95헌바2, 97헌바27 결정 등 참조).

실명제를 채택한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하면 인터넷 공간에 게시자의 성명, 주소 등 그 신원을 직접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 거래 등에서와 같은 본인인증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그 게시자에게는 자신의 신원이 사후적으로 사법당국에 의해 밝혀져 처벌을 받게 된다는 위협을 가하여 표현행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는 실명인증자료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의하여 법원, 검사,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이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82조의6 제3항 참조), 이들 자료가 수사와 재판 외에 여러 형태의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는 데에 사용될 우려도 있다.

나 권력자, 사회기득권층에 불리한 정보의 출현을 억제하여, 인터넷이 가진 여론의 형성·전파 기능과 자유민주사회의 유지를 위한 비판과 견제·감시 작용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²⁹⁾ 에이즈환자, 성전환자나 동성애자 같은 성적 소수자,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내부고발자 등과 같이 신분을 밝혀서는 자유롭게 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계층의 목소리를 사회로부터 퇴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전적 내용규제로 이어지게 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 있다.

(3) 실명제를 찬성하는 가장 큰 논거로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익명에 의한 정보 게시가 가능함으로써,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 품위 없는 표현행위로 유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 이 같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표현행위가 오프라인에 비해 쉽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때문이라기 보다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신과 상대방이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비대면성(非對面性)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일부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 같은 불량정보 유통이 오히려 증가세에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보면 실명제가 불량정보 유통을 감소시키는 기능은 그러한 정보의 게시자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우려하여 이를 자제함으로써 발현되게 된

다. 언뜻 생각하면 이는 매우 실용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실명제 실시 후 별다른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함을 감안하면 이 역시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된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를 자신의 진술(법률에 의한 신분 확인의 진술)에 의해 적발, 체포해 처벌하는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범인 처벌을 위한 도구로서는 시인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2항이 있고, 범인의 체포와 수사는 수사당국이 자신의 권능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지 범인 자신의 강제적인 진술이나 자수·자복에 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 기술의 한계상 IP주소의 추적만으로는 불법정보 게시자를 완전하게 발견, 확정해 낼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범인의 완전한 추적, 확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IP주소의 추적 등에 의해서는 범인 체포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또한 그것이 범죄의 예방과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것이라도, 이를 허용할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실명제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범죄예방 및 피해방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29) 민주당 장세환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 5.부터 하루 두 차례씩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들을 모니터링해 청와대 외에 대검과 경찰청 및 42개 부처에 전달하였다고 하는바(중앙일보 2008. 10. 6.자 5면 참조), 이 같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감시활동은 그 표현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있고, 그로써 달성하려는 법익이 그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보다 현저히 우월하여야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실명제에 의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정보 유통에 의한 법익침해를 예방할 수가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자 등이 편집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적자치 규범인 약관에 의하여 사전심사를 통해 그 취급을 거부함으로써 정보의 게시를 막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전심사가 불가능하여 침해적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라도, 서비스 제공자 또는 피해자의 사후검색을 통해 일찍 이를 발견하여 즉시 구제조치를 취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자의 법익 침해보다 표현활동이 제약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훨씬 커서 사회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이미 많은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모니터링과 필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실명제를 채용하더라도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는 등의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도피를 완전히 막을 수도 없으므로,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대안으로서 그 실효성을 백퍼센트 장담할 수 없으며, 이제까지 시행된 실명제에 의해 법익침해 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다는 실증적인 결과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강제할 경우 결국 과잉금지에 해당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배된

다.

익명기사의 상당부분이 원기사에 대한 댓글달기, 이른바 악플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기사 내용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닌 때는 서비스 제공자 등이 댓글 달기를 금지함으로써 법익침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방향으로 인터넷 문화를 개선·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³⁰⁾ 실명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자 등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³¹⁾

다. 형사적 제재

(1)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여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법과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법정형도 더 무겁게 하고 있으며, 형법상의 그것과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다(제70조). 반면에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제311조)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의 모욕행위, 즉 이른바 사이버모욕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너무 낮으므로 이를 무겁게 하고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증가일로에 있는 사이버 모욕행위에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여론이 비등하고

30) 이러한 방향으로의 인터넷 문화 개선은 사회단체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보서비스제공자에게 자발적인 준수를 권고하는 방법 등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1) 동지 : Al Teich 외, Anonymous Communication Policies for the Internet, The Information Society, Vol. 15, No. 2, 71-72(1999); 성선제, 사이버스페이스의 헌법적 함의, 헌법논총 제14집(2003), 288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모욕행위는 사실 단순한 구두 모욕행위에 비해 그 파급효과 등이 커서 피해가 중하고 범죄행위의 질도 나쁘므로 이를 더 무겁게 처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만, 형법이 명예훼손의 경우 신문·잡지·라디오·출판물에 의한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구별하여 그 형의 크기를 달리하면서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그 형을 지나치게 무겁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단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그것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인터넷 언론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여론 형성 및 비판기능을 감안하여, 이 기회에 모욕죄에 대하여도 이 같은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²⁾

한편 사이버모욕죄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많은 사이버모욕행위를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선택 없이 공평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³³⁾ 또 굳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처벌의사표시가 없는데도 막대한 수사력을 쏟아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2) 처벌법규의 통합 요부

현재 인터넷 공간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전기통신기본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분산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 처벌규정을 ‘인터넷정화법’ 등을 신설하는 형태로 통합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각의 법률은 그 범죄의 발생 영역이 다른 데에 따른 것으로서, 굳이 하나로 통합할 필요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과 같이 형법에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형법에 흡수·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II. 맺는 말

임금님 귀가特异한 것을 본 사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서워서 말 못하고 끄끙 앓다가 급기야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쳤을 만큼 인간은 말을 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면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법익과 그 실효성, 침해정도가 적은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여야만 한다.

현대 기술의 총아로 등장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를 정보의 바다로 만들었고, 인터넷 공간은 인간의 표현욕구를 배설하는 대숲으로 자리잡

32) 판례(대법원 1959. 12. 23. 선고 4291형상539 판결)와 다수 학설은 모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3) 최진실 씨 자살사건을 즈음하여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 사회단체 등의 격양된 비판을 계기로 서울중앙지검은 사이버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도 10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방경찰청의 사이버 수사요원 900여 명을 동원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하였다고 하는데(법률신문 2008. 10. 9.자 9면 참조), 이 같은 수사활동이 상시적으로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았다. 이로써 자유화, 민주화가 촉진되고 다방면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불건전하거나 진실되지 못하거나 악의적이며 품위 없는 언사와 정보가 넘쳐나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근래 잇따른 연예인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인터넷의 부정적 기능과 그들에 불신과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개선안과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기회로 우리의 인터넷 법제와 문화 전반을 깊이 있고 넓게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자칫 우리 사회의 병폐인 냄비여론에 편승하여 한견주의식 실효성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표현활동을 최대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법조계, 언론단체 및 관련 학계와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등으로, 유럽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Foundation)과 같은 조사·연구 기구를 발족시켜 그 대안을 추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³⁴⁾ □

34) 인터넷의 부정적 역기능에 중점을 두고 그 개선대책을 높게 주장하는 견해 가운데는, 마치 현재 인터넷언론에 대한 규제수단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인터넷 공간은 무책임과 방종 속에서 어떠한 법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자유와 특권만을 누리고 있으며,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의 적용, 실명제의 강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등만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처럼 근거 없이 채색된 것들이 다수 있다.

언론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

남 재 일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충북중재부 중재위원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 23일 대전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재일 중재위원이 「언론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대전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110여 명의 참석자들은 황성주 중재부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I. 들어가는 말

언론분쟁은 언론사와 보도로 인한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분쟁을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언론분쟁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헌법 21조 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동조 4항에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건의 조정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했을 때 절충점을 찾는 것이 요체이다.

언론의 신뢰도 하락이 언론의 상업성에 손상을 주는 지경이 된 현재의 상황에서 ‘법의 테두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취재관행의 정착은 언론의 상업성을 유지하는 ‘문화자본’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문직업인주의의 시작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최근의 언론분쟁에 자주 나타나는 분쟁의 쟁점을 통해 ‘법의 테두리’를 제시하고 관련된 취재관행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장기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취재행위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피해사례의 발생 배경과 취재관행

1. 오보의 개념과 발생원인

주제논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오보에서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오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허위보도, 사실을 과장한 과장보도, 사실을 왜곡한 왜곡보도, 공정성을 훼손한 편파보도 등을 포괄한다. 지시범위가 분명하게 조작적 정의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보도”, “어떤 형태든 피해를 준 보도”로 초점을 좁혀 보았다.

오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보연구는 오보발생의 원인을 언론산업의 구조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원인과 기자들의 행위 수준에서 비롯된 원인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오보발생의 원인을 산업적이고 구조적인 요인과 정보 수집 및 전달과정에서 기자개인의 자질 문제로 양분하는 것은 오보발생의 원인을 추론하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산업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기자 개인의 문제는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다. 기자들의 취재관행은 언론의 산업적 속성에 적응한 결과이고, 기자들의 개별취재 행위도 취재관행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귀책사유를 개별 기자로 분명히 할 수 있는 단순한 사실의 확인 소홀도 그 기저에는 속보경쟁의 일상적 작업방식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오보의 유형별 원인과 취재관행

1) 취재망의 구조적 성격과 오보

뉴스매체는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뉴스를 공급하기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한 취재망

을 구축하고 있다. 취재망은 뉴스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리적 공간과 영역을 커버하면서도 최소의 인원으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재망은 ‘공간적 분할’과 ‘전문영역적 분할’로 구성됐다.(Tuchman, 1978)

‘공간적 분할’은 지리적 공간을 바둑판처럼 나누어 각 관할구역(beat)에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등이 주로 이 방식으로 조직된다. ‘전문영역별 분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담당하는 전문분야를 경계로 취재망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대개의 언론은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서 취재망을 구성한다.

이 취재망 안에서 실질적인 취재는 출입처 취재와 현장취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입처는 정보가 집결되는 정보의 병목이다. 현장은 뉴스 사안이 발생하는 지리적 공간이다. 이상적인 취재는 이 두 가지 방식이 교차되는 것이지만, 대개의 취재는 보다 효율적인 출입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입처 취재는 효율적인 반면 중간에 취재원을 매개해서 정보를 얻는 단점이 있다. 즉 정보를 얻는 경로가 현장관찰이 아닌 취재원 인터뷰(타인의 입을 통해 정보를 얻는 모든 취재행위)에 의존하게 돼 있다. 여기서 오보의 위험성이 발생한다. 취재원의 의도적인 정보조작, 취재원 자체의 잘못된 정보 습득, 전달과정의 기자의 실수 및 곡해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2) 상업주의 경쟁과 오보

오보의 발생원인 중 언론산업의 속성에서 기인

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이 상업주의 경쟁이다. 언론의 상업주의 경쟁은 크게 속보성 경쟁과 선정성 경쟁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마감시간의 존재는 그 자체로는 상업주의 경쟁의 산물이라기보다 정기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기 위한 뉴스생산 공정의 구조적 장치이다. 하지만 마감시간을 당겨서 경쟁매체와 속보성을 다투는 형태로 상업주의와 연관된다. 언론산업의 속성 중 속보성은 광범위하게 뉴스 생산 관행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속보성이 오보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객관적 오보’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객관적 오보’는 날짜, 시간, 장소 등 기사에 표기되는 파편적 사실의 부정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객관적 오보는 행위 차원의 잘못이지만 많은 기자들은 ‘속보성’을 상황적 요인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오보 발생의 기저에는 속보성이라는 구조적 차원이 있지만 속보성이 기자의 잘못을 정당화할 만큼 직접적인 경우는 드물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면서 매우 긴급한 상황인 경우, 즉 사실 확인을 위한 물리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만 오보의 구조적 차원의 요인으로 속보성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고 긴급해야지, 상업주의 경쟁의 관점에서 긴급한 것은 내부사정일 뿐이다. 상당성에 대한 판정에서 보면 기자가 생각하는 ‘필연성’과 ‘긴급성’은 상업주의의 관점에서 그런 것일 뿐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상당성’에 대한 인정을 받기 어렵다. 대부분의 ‘객관적 오보’는 기자들의 행위차원의 실수로 볼 수 있다.

상업주의 경쟁의 또 다른 형태는 선정성이다.

3) 기자 집단의 이익을 위한 취재관행의 전유와 오보

취재관행은 언론산업의 구조적 성격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기자들의 작업방식이다. 이런 의미의 취재관행은 언론사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정립된 것이다. 즉 기자들의 묵시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유하고 있는 직업적 관습으로 언론윤리강령을 통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취재관행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개별기자들의 직업적 이익을 위해 2차적으로 형성되는 ‘부정적 양태’의 취재관행들이 있다. 낙종을 피하기 위해 무리지어 다니는 패거리 저널리즘(pack journalism)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패거리 저널리즘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자들의 경쟁적 취재가 가져다주는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세함으로써 오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출입처 취재제도에 의존해서 출입처의 발표 자료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 적는 ‘발표 저널리즘’도 기자집단의 편의를 위해 출입처 제도를 전유한 ‘부정적 양태’에 해당한다. 한 기자의 기사를 여러 명이 동시에 제공하는 기사 풀(pool)제도도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 현장기자들이 노동력을 아끼려는 편의적 취재관행이다.

4) 개별기자의 실수 및 자질부족과 오보

오보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오보 발생의 원인이 구조적 차원과 직접적 관계없이 기자

주제논문

의 행위차원의 문제로 귀인 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기자의 실수, 심리적 편견, 취재경험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등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기자의 나태로 인한 사실 확인 소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기자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로 숫자나 이름 등의 오기와 같은 ‘객관적 오보’로 오보의 계기가 실수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 ‘나태로 인한 사실 확인 소홀’은 주로 일방적 주장이나 불분명하고 미심쩍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서 오보를 일으키는 경우로, 사실 확인의 필요는 느끼지만 추가적인 확인 취재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오보의 유형은 ‘주관적 오보’가 많다. ‘심리적 편견’은 사안에 대해 일방향적 시각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한 측면만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경우로 역시 ‘주관적 오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Ⅲ. 언론분쟁의 유형별 쟁점과 취재관행의 문제점

1. 피해구제 제도로서의 언론중재제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은 민·형사 소송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 제도는 법원이 아닌 법정기구에 의해 언론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이다. 언론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취지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겪지 않고도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언론사와 언론피해자 양자에게 모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침해 유형으로 본 언론분쟁의 쟁점과 취재관행

언론분쟁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법적 보장 범위를 둘러싼 충돌이다. 그래서 언론분쟁의 쟁점은 결국은 소송사건의 판결 기준을 둘러싼 해석의 충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싸움은 일차적으로는 소송 대상 보도가 인격권 침해의 법적 구성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고, 이차적으로는 인격권을 침해를 했다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지의 문제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격권 침해의 유형별 법적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에 중요한 취재관행의 행태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명예훼손

(1) 성립조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 특정, 구체적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피해자 특정’은 보도내용 중 기사의 당사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이다. 구

체적으로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본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진위 검증이 가능한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의 범위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우회적으로 암시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말 그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피해자 특징이 인정되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없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 부분은 사실의 진위여부와 관계없다. 허위일 경우가 대체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요건이 성립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와 같은 증명이 없더라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거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2005. 7. 15. 선고)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적기구나 언론사이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 비판의 수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언론자유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분쟁의 쟁점과 취재관행

① **피해자 특징** : 언론은 익명처리 했다고 판단했지만 기사에 나타나는 다른 단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게 된 경우이다. 분쟁의 쟁점은 기사에 표시된 단서들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공표되는 효과를 갖느냐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동시에 익명화 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나 집단인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과정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 : 이 요건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여부, 의견 표명이 단순한 의견개진이었는지 인신공격이었는지 여부가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 이 요건은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를 판정하는 포괄적인 규정이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느냐 않느냐에 관한 기자의 판단은 동시대의 통념과 상식에 대한 감각을 요구한다.

이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재관행은 피의 사실 보도관행이다. 속보경쟁을 하느라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마치 범죄혐의를 받은 사실을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적 어투로 보도하는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④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중요한 논점은 공적 관심을 공익을 위해 보도했느냐 여부, 보도사실이 진실이나 여부, 진실이 아닐 경우 상당성의 인정 여부 등이다.

2) 초상권 침해

주제논문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또는 사회통념상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상)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초상권은 촬영·작성 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초상권 침해는 주로 동의 없이 촬영 공표되거나 동의했다 라도 동의의 범위 이상 이용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초상권 침해의 분쟁의 주요 쟁점은 동의의 판단 근거, 동의의 범위 규정,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의 경우 상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연성과 긴급성 여부 등이다.

IV. 맺는 말

언론분쟁은 산업적 속성 때문에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기자들의 행위 차원에서 비롯되며, 노력을 통해 상당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분쟁을 일으키는 취재관행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기자들의 자각과 성찰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의 핵심을 취재관행의 문제로 돌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언론분쟁의 대부분은 명예훼손 사안이며, 주로 사건사고, 탐사보도, 폭로성 고발기사 등에 집중된다. 이 분야의 기사가 주로 공격저널리즘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인데,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비교적 연조가 낮은 기자로 취재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자들

이다. 인력배치에서부터 언론분쟁의 소지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허위 사실의 보도는 취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일방향으로 사물을 재단하고 반대 입장에 대한 취재를 통한 사실 확인 절차를 소홀하기 때문에 비롯된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허위보도를 줄여야 하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힘들면 상당성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저하게 취약하다.

셋째, 상당수 언론분쟁이 제목 및 기사 본문의 과장된 표현 때문에 비롯된다. 이는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성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넷째, 타인의 글이나 말을 인용하는 부분 때문에 언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언론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자 재교육을 통해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기자들이 타인의 말을 인용할 때 전체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법의 테두리'를 인식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다. '상당성'에 대한 개념을 취재과정에서 떠올려보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공익적 내용의 보도에서 시민의 초상을 사용할 때 긴급성과 필연성을 따져보기를 바라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 언론이 사건중심보도 관행을 탈피해 점점 해설과 내러티브 중심으로 기사체를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주관과 감정 개입의 폭도 이전보다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기사가 복잡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취재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법의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취재 및 기사작성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거세질 것이다.

그렇다면 기자들의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먼저 기자 개개인이 오보가 속보성 때문이 아니라 행위차원의 부주의와 나태 때문에 생긴다고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론윤리강령과 보도준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취재과정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편집국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취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기사 생산의 스케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직적 차원의 변화를 통한 취재관행의 혁신이 없으면 언론분쟁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토 론

사 회 황 성 주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중재부 중재부장

황성주(사회자, 중재부장) : 주제발표해주신 남재일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대전KBS 기자) : 발표자께서는 패거리 저널리즘의 폐해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언론현장에 있는 기자로서 언론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거리 저널리즘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패거리 취재를 하려고 해도 기사를 한 줄 잘못 보도하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이의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하게 됩니다.

기사 풀(pool)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기자의 경우 풀에 의해 공급되는 기사도 보도하기 전에 기자는 기사내용을 신뢰할 만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 확인한 다음에 보도하게 됩니다. 방송에서는 현장 그림이나 자료화면, 녹취자료 등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보도

토 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풀 기사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성주 : 현장 기자의 취재현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남재일(발표자, 중재위원) : 언론의 취재관행 중 패거리 저널리즘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최근 3·4년 전부터 취재기자단이나 출입처 제도 등에 대해 언론계 스스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취재관행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원선(한남대 법학과 교수)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하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느 것을 더 보호하여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이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판단할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진실한 사실인지, 진실하지 않다면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

반면,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책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황성주 :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송인준(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중재위원) : 공익적인 관점에서 비리가 발생한 언론사의 이름을 게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언론이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 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 실명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은중(대전충남기자협회장, 연합뉴스 부장) : 과거에는 기자들이 기사를 한 번 쓰면 그것으로 끝이었는데, 요즘은 기사를 잘못 쓰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 바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올바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보성을 띠는 통신사에 근무하면서 소송에도 많이 휘말려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기사는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언론의 기능도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공주에서 발생한 기자 비리 사건의 경우 일부 기자들은 무늬만 기자이지 기자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구속된 기자는 전과 기록이 A4 용지가 한 장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기자 개개인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종사원들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고용하고 있는 언론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재일 : 지역신문의 실패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문제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건설사가 언론사를 만들고 언론사는 그 건설 회사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희섭(대전KBS 편성제작팀장) : 오늘 황토팩 관련 보도 문제로 KBS 담당 PD가 기소되었습니다. 충청 패트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대전에 있는 모 오피스텔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여 경매에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사회 공익적인 측면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명예훼손 우려 때문에 그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를 특정하지 않고 방송하였습니다. 비리 기업들의 실명을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황성주 :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면 실명을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재영(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재위원) : 언론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할 때, 언론사 자체적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의 질의 중 비리기자의 소속 언론사에 대한 실명 공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

시하지 않는 것은 동종 업종의 봐주기 관행인데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히 밝혀야만 회사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명예에 치명타를 입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낚은 관행은 타파해야 합니다.

이규호(변호사, 중재위원) : 언론은 보도에서 당사자를 특정 하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발프로그램에서는 명예훼손성립 여부를 생각하지 말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먼저 신경 써야 하며 위법성만 조각된다면 시행사와 시공사 명칭을 그대로 특정해 보도해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한상곤(변호사) : 신문과 방송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더욱 상업화되고 있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자극적이고 임팩트가 강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송사는 방송영상과 멘트를 함께 보도하기 때문에 영상과 멘트가 결합되어 피해를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방송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과 기준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황성주 : 최근 인터넷매체가 생활 속에 편입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의 기술적인 발전에 맞추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토 론

권 성(언론중재위원장) : 발제자께서 일선 기자의 경험과 학문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표해 주셔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사회자께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두루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교육교재를 만들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장도 교육수요가 있는 곳에 나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피해구제에 관한 축적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 조정중재 사례를 분석한 조정중재사건 분석보고서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나온 법원의 언론소송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나 자료실에 오셔서 널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선 기자들은 취재보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어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전체주의적인 역사를 경험하였는데 민주화되면서 개인 인격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가양적인 개인 인격권이 있다는 것이 시대정신이며 헌법의 기본정신임을 생각한다면 취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주제발표해주신 남재일 위원과 사회를 맡아 수고해주신 황성주 중재부장, 각계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예인 자살 보도로 돌아본 자살 사망 보도의 문제와 대안

최 민 재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위원

자살은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선택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개인이 처한 고통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시련이고,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개인의 비극을 언론은 기사화 한다. 언론이 개인의 자살사건을 보도하는 이유는 개인의 비극이 기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공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 인물의 사회적 인지도 때문에 기사가치를 지니고, 공인이 아닌 일반시민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사회적 맥락 때문에 기사화를 한다.

즉,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가장의 자살이나 가장과 가족들의 동반자살¹⁾ 사건을 보도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자살사건을 보도한다. 또한 수능이 끝나면 성적을 비관한 수험생의 자살문제를 다루고, 우울증 관련 조사결과가 나오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보도된다. 노인문제가 부각되면 노인의 자살사건이 보도

된다. 또는 특수하게 인터넷상의 자살 동호회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청부자살, 동반자살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건은 큰 이슈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이 당사자인 사건은 사회상황이나 연구결과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기사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 단신으로 기사가 끝나기 때문에 당사자 개인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는 낮다. 그렇지만 자살을 한 당사자의 심리적 원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반면에 공인이 당사자인 자살사건의 경우 자살사건과 관련된 보도는 단순한 사건에 대한 보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내러티브 형태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집요한 보도를 하게 된다. 특히 그 공인이 연예인인 경우에는 신문 및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예정보 프로그램, 스포츠지, 연예전문 인터넷 신문 등에서 전문성이 있는 기자가 아니라, 연예인이나 리포터 등에 의

1) 가족의 동반자살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대부분 1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회생을 자살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손현균·김이영·안동현(1997). 한국의 동반자살 : 신문보도를 통해 본 동반자살의 분석. 『정신건강연구』, 제16집, 181~193.

해 무분별하게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영화 배우 ‘이은주’, ‘정다빈’ 가수 ‘유니’ 사건을 비롯해 최근에 발생한 텔런트 ‘안재환’, ‘최진실’ 자살 사건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살보도의 영향력과 올바른 자살보도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안재환’, ‘최진실’의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살사건 보도의 영향력

언론보도가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언론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연구테마 중 하나다. 언론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매스미디어 등장 초기부터, 선거와 여론형성,

미디어의 노출에 의한 폭력성 증가, 범죄와 연관성, 성적 행위나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정서적 경향 등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의 효과에 대한 연구 중에서 폭력성과 범죄에 대한 노출에 있어서 와텔라(Wartella)²⁾는 기존의 이론들을 토대로 세 가지 기초적 이론모델을 제시한다. 첫째는 ‘사회적 학습이론’으로 이는 아동들이 미디어가 제시하는 모델로부터 어떤 행동이 칭찬받고 어떤 행동이 벌 받을

**자살 관련 보도가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등
자살 사건 보도와 보도효과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편**

것인지를 학습한다는 이론이고, 둘째는 ‘점화(priming) 효과이론’으로 사람들이 폭력을 봤을 때, 폭력과 관련된 생각이나 평가를 기폭시키거나 활성화시켜, 대인간의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셋째인 ‘각본이론(script theory)’은 상황에 반응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각본’에 의해 사회적 행동이 제어된다는 이론으로, 공격적 성향을 담은 각본의 결과로 공격적 성향을 담은 텔레비전의 폭력성은 공격적으로 기호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폭력성이나 범죄에 대한

노출이 수용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디어의 보도나 여타 콘텐츠들이 자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지닌 원인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동과 미디어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변인들이 개입되기 때문이다.³⁾

하지만, 자살 사건 보도와 보도효과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는 편이며, 자살 관련 언론보도가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즉, 미디어의 광범위한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는 ‘모방자살(copycat suicide)’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전염성이 있다는 점에서 ‘베르테르

2) Wartella, E., Olivarez, A. & Jennings, N. (1998). Children and television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In U. Carlsson & C. von Feilitzen (eds.), Children and Media Violence (pp. 55~62). Göteborg : University of Göteborg.

3) McQuail, D. (2005). Mass Communication Theory (5th ed). 양승찬 · 이강형 역(2007).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 나남.

효과(the Werther effect)⁴⁾라고 부르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⁵⁾ 김연중⁶⁾의 연구에서는 자살보도가 직접적으로 자살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미국, 헝가리, 호주, 일본 등에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가 자살률을 확실히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이때 주요변인은 미디어의 보도량과 보도기간 그리고 미디어의 지명도 등이었다고 밝히고 있다.⁷⁾

또한 스택(Stack, 2000/2003)⁸⁾의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실제 영향을 미치는 데 작용하는 주요 변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유명인에 해당하는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는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대한 보도보다 14.3배나 더 후속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자살의 실재성 여부로, 자살 모방효과는 매체나 장르의 종류에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이나 허구의 내용을 전달하는 드라마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자살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구적인 내러티브에 기반을 둔 드라마나 영화, 소설의

경우 보다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실기사가 자살에 미치는 효과가 4.03배 높게 나타나, 실제에 기반을 둔 언론보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셋째, 신문보도와 텔레비전보도의 비교에서는 텔레비전의 짧고 일회적인 보도 보다는 신문의 자살보도가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묘사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반복성으로 인해 자살의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⁹⁾

또한 국내 자살예방 관련 단체들의 연구결과들은 연예인의 자살보도가 일반인의 자살률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13일에 있었던 '자살보도 개선방안' 포럼에서는 국내 신문·방송의 모니터링(2006년 1월 ~ 2008년 8월) 결과 신문은 72%, 방송은 80.6%의 기사가 자살사건을 부적절하게 다루었으며, 실제 2005년 영화배우 이은주 씨 자살 후 자살건수는 당초 2월 700명에서 3월 1,300명으로, 동일한 자살방법도 2월 300건에서 3월 75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히면서, 언론보도에 따른

- 4) 1774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the Sorrow of Young Werther)'이 출판되자 유럽 젊은이들의 권총을 사용한 모방자살이 늘어나면서 유럽에서는 이 소설의 판매를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자살의 전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짝트기 시작했다. 김영옥·허태균 (2005). 자살과 미디어 : 한국 일간 신문의 자살 보도. 한국자살예방협회 심포지움 발표 자료.
- 5) Philips, D. P. (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icide :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40~354.
- 6) 김연중 (2005).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 행태 분석.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40~165.
- 7) Gould, M., Jamieson, P., & Romer, D. (2003). Media Contagion and Suicide Among the You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9), 1269~1284.
- 8) Stack, S. (2000). Media impacts on suicide : A quantitative review of 293 findings. Social Science Quarterly, 81, 957~971.
Stack, S. (2003). Media Coverager as a Risk Factor in Suicid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 238~240.
- 9) 김연중 (2005). 앞의 글, 146쪽.
- 10) 민왕기 (2008. 11. 19). 제대로 된 자살보도가 생명 구한다. 『한국기자협회』.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되었다.¹¹⁾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자살사건의 경우 연쇄 자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생명인 권본부에서는 1996년 1월 1일 서지원의 자살, 1월 6일 김광석의 자살, 1월 13일 이상민의 자살시도가 이어졌으며, 2004년에는 2월 4일 안상영 부산시장, 3월 11일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4월 30일엔 박태영 전남지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2007년에는 1월 21일 유니 자살, 2월에는 정다빈의 자살이 이어진 것을 예로 들면서 선정적 연예인 자살보도는 자살 홍보효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하였다.¹¹⁾

다른 폭력이나 범죄의 경우와 달리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자살을 고려하려는 사람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기인한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유명인에 대한 상세한 자살 보도는 자살을 실재화하는 방아쇠(triggering)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방아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으로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¹²⁾

2. 자살사건 보도 시 지켜야 할 보도원칙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잠재적 자살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제정한 ‘언론의 자살 보도기준’¹³⁾이다. 이 보도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기

여야 한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둘째,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살을 고려하려는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살보도가 자살을
실재화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어

11) 조현호 (2007. 2. 12). 선정적 연예인 자살 보도, 홍보효과 초래. 『미디어오늘』.

12) Blumenthal, s., & Kupfer, D. (1986). Generalizable treatment strategies for suicidal behavior. In J. Mann & M. Stanley (Ed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487, 327~340. : 김연중 (2005), 앞의 글, 147쪽.

13) 한국자살예방협회 (2004). 『자살예방전문가가 권고하는 언론의 자살 보도 기준』.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경우는 예외이다.

셋째,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넷째,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하다.

다섯째,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자살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자살이 유행하고 있거나 특정 지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등의 표현을 피한다. 둘째, 헤드라인에 자살이라는 말을 쓰거나 사인이 자해라고 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살한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헤드라인에 이름, 나이, 거주지를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세 부적인 표현도 ‘자살’, ‘자살하다’ 보다는 ‘자살로 사망하다’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히 유명인사 자살의 경우 흥미위주로 다루는 것을 피해

야 한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앓고 있었을지 모르는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특히 자살한 사람이나 자살 장면, 자살 방법에 대한 사진 등을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 1면 머리기사로 신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넷째, 어떤 방법으로 자살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정한 장소를 묘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선호하게 된다. 다섯째, 실연, 실업, 질병 등의 고통스러운 사건들 자체가 유일한 자살의 원인은 아니다. 자살은 다수의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단정적인 원인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자살한 사람을 미화하지 않도록 하고, 자살한 사람의 사망 사실에 대한 애도를 강조해야 한다. 일곱째, 자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밝혀준다. 즉, 자살에 대한 기사에는 자살에 대한 편견과 정신적 충격으로 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겪을 고통이 언급되어야 한다.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신체적 후유증(뇌 손상, 사지마비 등)을 입을 수 있음을 자세히 보도하면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덟째, 자살보도 시 자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이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최신허치법 등의 정보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¹⁴⁾ 이러한 자살과 관련된 보도지침은 해외의 보도지침과 유사하다. 미국의 굴드(Gould)교수가 미국자살예방협회에 권고한 자살보도 지침¹⁵⁾이나, 오스트리아 자살예방협회(ÖVSKK)의 언론보도 지침¹⁶⁾에서도 자살의

14) 한국자살예방협회 (2004), 앞의 글, 7~10쪽.

15) 하규섭 (2004, 6), 부추기는 것인가, 말리는 것인가?, 『신문과 방송』, 통권402호, 106~109.

16) 허태균 (2005), 자살관련 미디어보도가 후속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들, 『사회과학논집』, 제22권 2호, 205~220.

모방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도 시 유의해야 할 지침들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자살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준칙마련과 언론과의 공유노력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3. 국내 언론의 자살 관련 보도 태도와 대안

자살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영옥·허태균의 연구에서는 주요 일간지 4개사의 1,500여 건의 자살 보도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자살 보도가 자살 현상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 임무에 충실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자살 보도는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보도 관행이나 경제 등 사회적 상황과 자살 현상과의 관계에 대한 기자의 주관적 판단 등 여러 가지 ‘우연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의 증가와 자살 현상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살 사건을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자살 사건 기사를 지배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살 예방 차원에서 요구되는 자살 보도의 기준들,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목에서 자살이라

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자살 방법이나 장소 등 정황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권고 사항들이 썩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 사건의 보도에서 권고되는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안내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¹⁷⁾고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연중의 연구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자살보도가 특별히 뉴스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잠재적 자살 가능자에 대한 배려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¹⁸⁾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자살 보도 준칙 등을 기준으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텔런트 ‘안재환’과 ‘최진실’의 자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나친 언론보도와 중계 방송식의 보도 선정성을 들 수 있다.

지난 9월 8일 있었던 ‘안재환’의 자살사건과 지난 10월 2일 있었던 ‘최진실’의 자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재환’의 사건이 있었던 지난 9월 8일의 방송 3사의 보도에서는 메인 뉴스에서 사건 발생에 대한 보도가 1건 혹은 2건 정도로 보도되었고, 중앙 일간지의 경우 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3건에서 10건 정도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신문과 일간지들의 인터넷 판에서는 하루 동안 많게는 30건의 기

자살 관련 연구들은 언론의
자살 보도에 대해 자살 현상에
대한 고민 부족과 잠재적
자살 가능자에 대한
배려 부족을 지적

17) 김영옥·허태균(2005), 앞의 글, 19쪽.

18) 김연중 (2005), 앞의 글.

사를 생산한 언론사도 있었다. 신문보도에서는 일부 ‘모방효과’를 우려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자살장소와 방법에 대한 묘사, 동기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지나친 상세한 묘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방송보도에서는 ‘안재환’이 발견되었던 차량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 구성이 많이 노출되었다. 또한 ‘최진실’의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는 방송사의 경우 메인 보도 형태로 5~8건의 보도가 이루어졌고, 각 신문사들의 경우도 대부분 1면 톱기사로 다루면서 10여 건의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또한 신문사들의 인터넷 판과, 인터넷신문에서는 각기 20~30여 건의 기사를 쏟아내었고, 이들의 기사들이 통합하여 제공되는 포털에서는 사진과 기사를 포함하여 1천여 건의 기사들이 당일 생산되어 제공되었다. 또한 기사의 내용 중에는 ‘최진실’의 자살에 사용되었던 도구와 자료화면을 활용한 화장실 장면이 공개되는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에 대해 ‘모방효과’를 우려한 보도나, 자살이 단순한 원인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자살보도 준칙’에 부합하는 기사들도 등장하였으나, 여타 기사들의 양적인 부분에 밀려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 특히 ‘최진실’의 기사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조차 중계방송식의 보도들이 이루어졌다.

둘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안재환’, ‘최진실’의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에서는 뉴스보도 프로그램 이외의 연예정보 관련 프로그램에서 두 연예인의 자살사건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면서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특히 케이블방송인 tvN,

ETN, YTN star의 경우 진행자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방송 중계차를 동원하는 등 지나친 보도행위를 하자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는 보도를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되었다.¹⁹⁾ 또한 지상파 방송의 경우도 연예정보 관련 프로그램에서 장례식장 장면을 중심으로 문상을 온 연예인들에 대한 화면을 중계방송식으로 보도하는 등 지나친 감성적 보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케이블 채널들에서 수차례 반복하여 보도되면서, 스택(Stack, 2000/2003)이 제기했던 방송보도의 순간성은 사라지고, 신문의 누적성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었다. 특히, 방송의 경우 감정의 이입이 쉬운 영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의 기사보다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셋째, 지나친 추측보도의 남발을 들 수 있다. ‘안재환’의 자살 사건이나 ‘최진실’의 자살 사건 모두 동기 부분에서 추측성 뜬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진실을 밝힌다는 미명 하에 이들 내용들을 기사의 주된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며, 사건과 관련한 개인 사생활의 지나친 밀착 취재는 가족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내포한 보도행태이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 두 연예인의 자살 사건을 다루었다.

결국 이번 연예인 관련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는 그동안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비판받던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를

19) 원성윤 (2008. 10. 7). 최진실 보도, 왜 언론은 자살을 부추기는가. 『PD저널』.

반복하여 보여준 것이고, 또한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연예 관련 기사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극단적 선정정보도 관행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100여 년 전 미국에서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 극에 달했을 때, 사회적 규제 압력이 가시화 되었고, 언론은 윤리강령과 사회적 책임 모델을 도입하였다. 우리 언론들은 이러한 교

훈을 참고해야 할 것이며, 자살과 같은 개인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도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제정한 준칙들을 언론사나 기자들의 윤리강령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도관행의 개선을 위해 언론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장도 다수 필요하다 하겠다. □

2008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 나이스 R&C(주)에 의뢰해 최근 1년간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했던 신청인,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에서는 ‘조사개요’, ‘조사 결과 요약’ 등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언론 조정·중재 제도 및 상담·교육서비스의 만족도 평가
- 위원회 주요 업무의 개선사항 진단
- 위원회 업무추진방향 및 정책설정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
- 2007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이후 위원회 업무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업무 개선방향 설정

2. 조사설계

□ 조사대상

- 조정·중재 신청인 : 524명 (2007. 10~2008. 8)
- 조정·중재 피신청인(언론인) : 385명 (2007. 10~2008. 8)
- 상담이용자 : 818명 (2008. 1~2008. 8)

- 교육수강자 : 459명 (2008. 1~2008. 8)

□ 조사응답자

- 조정·중재 신청인 : 206명 (회신률 39.3%)
- 조정·중재 피신청인(언론인) : 103명 (회신률 26.8%)
- 상담이용자 : 389명 (응답률 47.6%)
- 교육수강자 : 459명 (일반인 291명, 언론인 168명)

□ 조사방법

- 신청인/피신청인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
- 상담이용자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교육수강자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조사

□ 조사기간

- 2008년 10월 15일~11월 14일

□ 주관 및 수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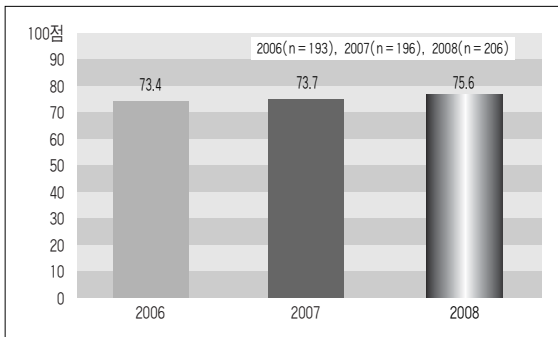
- 언론중재위원회 / 나이스 R&C(주)

II. 조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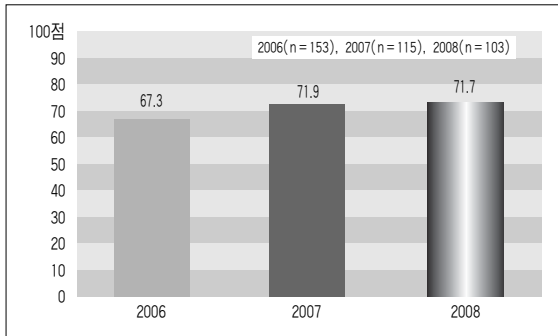
1.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및 차원별 중요도 · 만족도

1)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신청인〉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피신청인〉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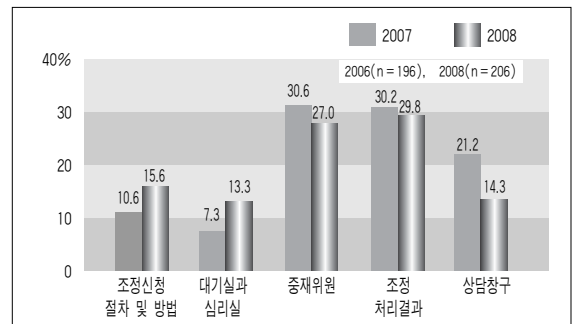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이용자의 종합만족도를 산출하기 위해 문항을 각각의 차원(신청인 5개 차원, 피신청인 3개 차원)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차원별 평가점수(5점 척도 5점 만점)에서 각각의 차원과 체감만족도(전반적 만족도)의 상관계수² 값을 이용하여 산출된 중요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신청인 206명의 종합만족도는 75.6점, 피신청인 103명의 종합만족도는 71.7점으로 조사되어 신청인의 종합만족도가 피신청인의 종합만족

도보다 높게(+3.9점) 나타났다. '07년 대비, 신청인의 만족도는 1.9점 상승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0.2점)하였다.

2) 차원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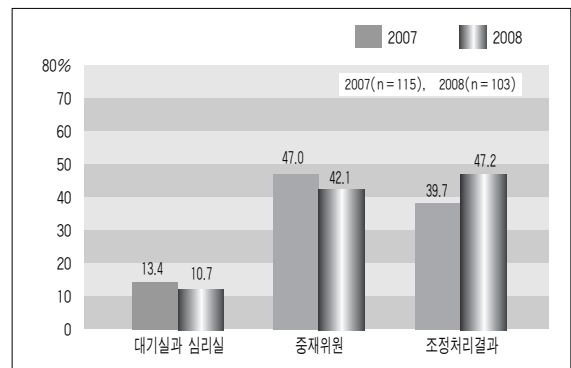
차원별 중요도는 각 차원별(신청인 5개 차원, 피신청인 3개 차원) 만족도 응답 점수와 언론중재위원회 체감만족도(전반적 만족도) 응답 점수와의 상관관계 통계기법을 통해 상관계수를 구한 후, 상관계수²의 합에 대한 각 차원의 상관계수² 값의 비율로 산출되었다.

〈신청인〉 차원별 중요도(가중치)



신청인의 차원별 중요도(가중치)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조정 처리결과』(29.8%)와 『중재위원』(27.0%) 차원을 다른 차원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차원별 중요도(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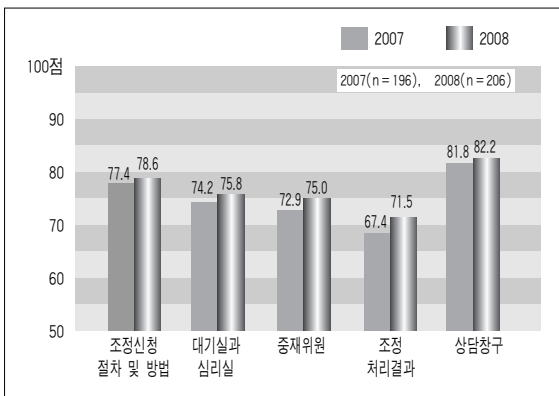
한편, '07년 대비 『대기실과 심리실』(+6.0%)과 『조정 신청절차 및 방법』(+5.0%) 차원의 중요도가 상승한 반면, 『상담창구』(-6.9%)와 『중재위원』(-3.6%) 차원의 중요도는 하락하였다.

피신청인의 차원별 중요도(가중치)를 살펴보면, 『조정 처리결과』(47.2%)와 『중재위원』(42.1%) 차원을 『대기실과 심리실』(10.7%) 차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07년 대비 『조정 처리결과』 차원의 중요도가 상승(+7.5%)한 반면, 『중재위원』 차원의 중요도는 하락(-4.9%)하였다.

3) 차원별 만족도

차원별 만족도는 각 차원별 만족도 응답 점수(5점 만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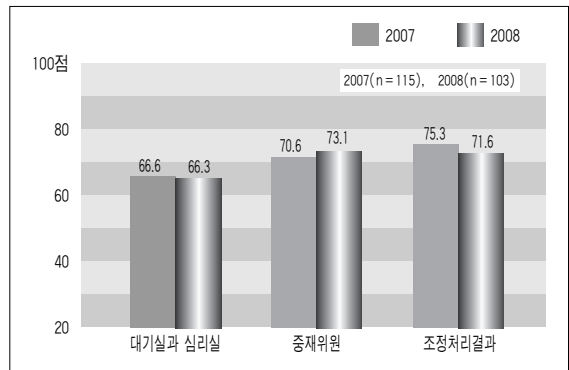
〈신청인〉 차원별 만족도



신청인의 각 차원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담창구』 차원에 대한 만족도가 82.2점으로 타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정 신청절차 및 방법』 차원은 78.6점, 『대기실과 심리실』 차원은 75.8점, 『중재위원』 차원은 75.0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 처리결과』 차원은 71.5점으로 5개 차원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07년 대비 5개 항목 모두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조정 처리결과』(+4.1점)

차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피신청인〉 차원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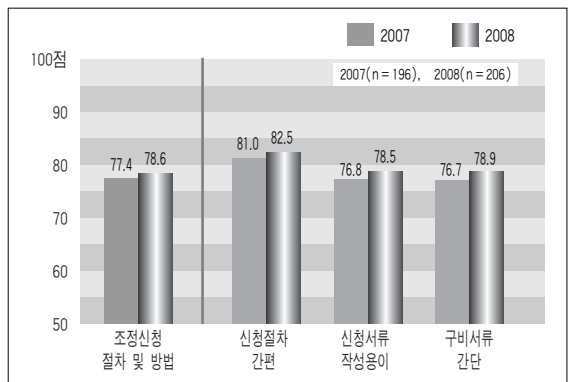
피신청인의 각 차원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중재위원』 차원의 만족도가 7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정 처리결과』 차원은 71.6점, 『대기실과 심리실』 차원은 66.3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07년 대비 『중재위원』 차원의 만족도는 다소 상승(+2.5점)한 반면, 『조정 처리결과』 차원의 만족도는 하락(-3.7점)하였다.

4) 항목별 만족도

(1) 조정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인〉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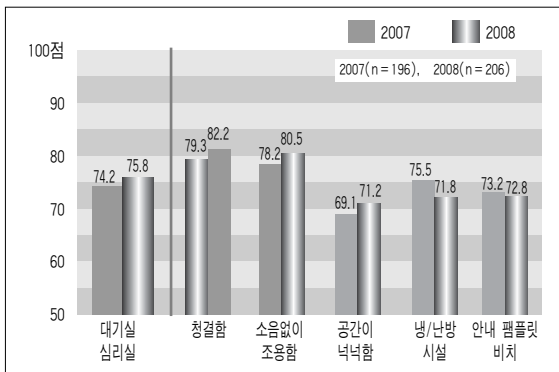


신청인의 『조정 신청절차 및 방법』 차원의 만족도는 78.6점으로 조사되어 '07년(77.4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1.2점)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청절차 간편”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82.5점으로 가장 높았고, “조정 신청시 구비서류 간단” 항목은 78.9점, “신청서류 작성 용이” 항목은 78.5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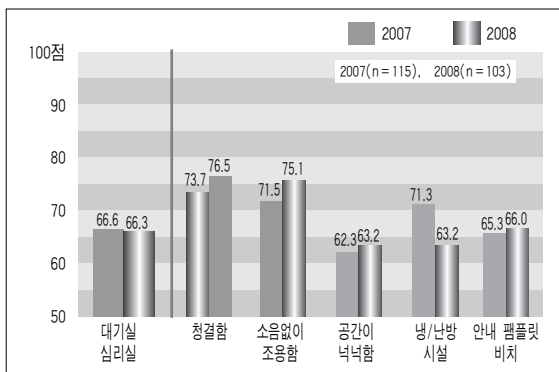
한편, '07년 대비 3개 항목 모두 만족도가 약 1~2점 가량 상승하였다.

(2) 대기실과 심리실

〈신청인〉『대기실과 심리실』 항목별 만족도



〈피신청인〉『대기실과 심리실』 항목별 만족도



『대기실과 심리실』 차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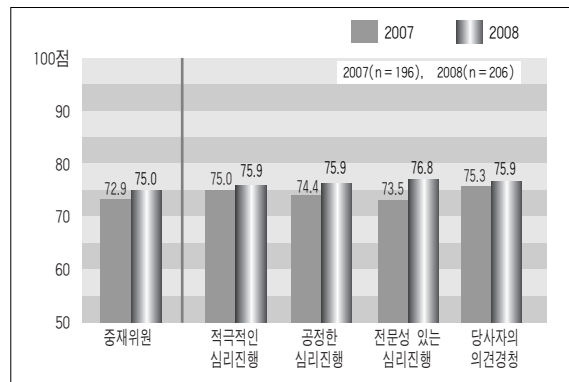
청인은 75.8점, 피신청인은 66.3점으로 조사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청결함”(신청인 82.2점, 피신청인 76.5점), “소음없이 조용함”(신청인 80.5점, 피신청인 75.1점)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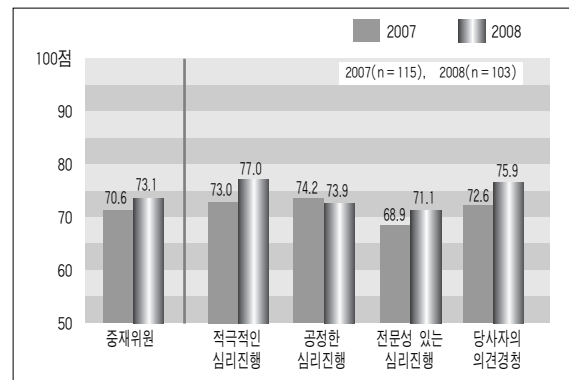
한편, '07년 대비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냉/난방 시설” 항목의 만족도가 대체로 하락(신청인 -3.7점, 피신청인 -8.1점)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중재위원

〈신청인〉『중재위원』 항목별 만족도



〈피신청인〉『중재위원』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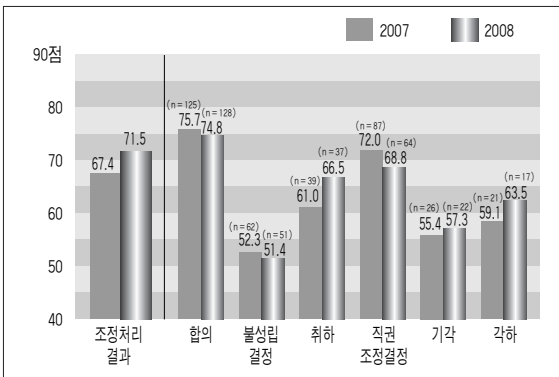
『중재위원』 차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75.0점, 피신청인은 73.1점으로 신청인의 중재위원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07년 대비 신청인(+21점)과 피신청인(+25점) 모두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중재위원』 차원의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전문성 있는 심리진행”(76.8점)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피신청인은 71.1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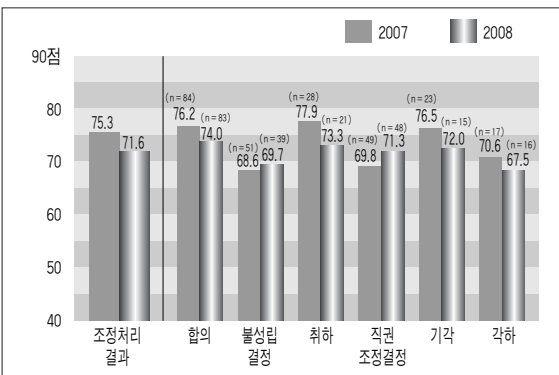
한편, '07년 대비 신청인은 “전문성 있는 심리진행”(+3.3점) 항목이, 피신청인은 “적극적인 심리진행”(+4.0점) 항목의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승폭이 높았다.

(4) 조정 처리결과

〈신청인〉『조정 처리결과』 항목별 만족도



〈피신청인〉『조정 처리결과』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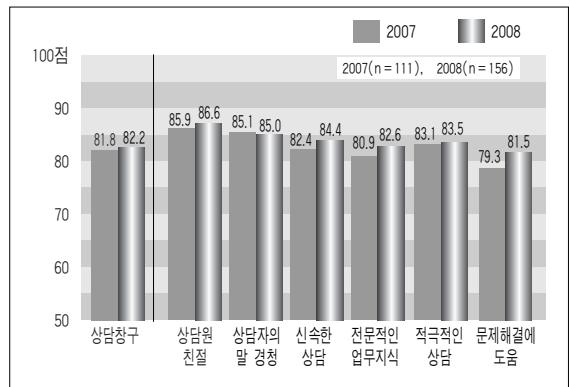
『조정 처리결과』 차원의 만족도는 신청인이 71.5점, 피신청인이 71.6점으로 조사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합의”(신청인 74.8점, 피신청인 74.0)인 경우에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신청인은 “직권조정결정”(68.8점), “취하”(66.5점), 피신청인은 “취하”(73.3점), “기각”(72.0점), “직권조정결정”(71.3점)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청인은 “불성립 결정”(51.4점), “기각”(57.3점)인 경우에, 피신청인은 “각하”(67.5점), “불성립 결정”(69.7점)인 경우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 “각하”인 경우 샘플 수가 많지 않아 해석상 주의를 요함)

한편, 신청인은 “취하”(+5.5점)된 경우의 만족도가 상승한 반면, 피신청인은 “취하”(-4.6점)일 경우의 만족도가 하락하였다.

(5) 상담창구

〈신청인〉『상담창구』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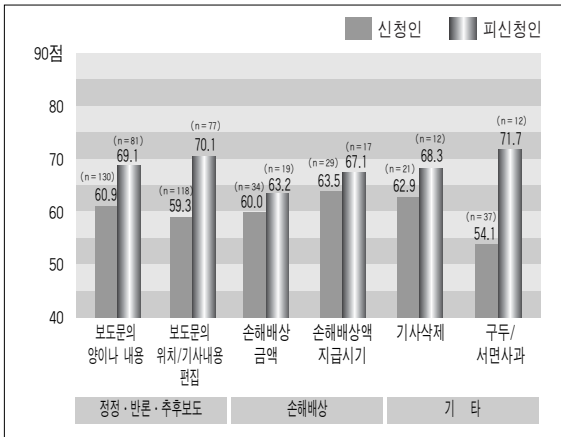


신청인의 『상담창구』 차원의 만족도는 82.2점으로, '07년(81.8점)과 비슷한 수준(+0.4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원 친절”(86.6점)과 “상담자의 말 경청”(85.0점) 항목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07년 대비 항목 전반에 걸쳐 만족도가 다소 상승하여 고른 만족도 분포를 나타냈다.

2. 조정·중재 처리결과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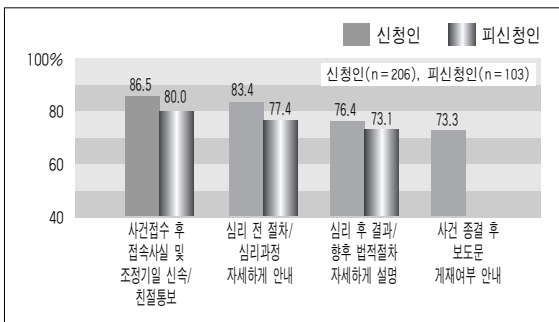
『피해구제방법』 항목별 만족도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정정·반론·추후보도인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보도문의 양이나 내용”, “보도문의 위치/기사제목 편집”에 대해 각각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손해배상액 지급시기”(신청인 63.5점, 피신청인 67.1점)에 대한 만족도가 “손해배상 금액”(신청인 60.0점, 피신청인 63.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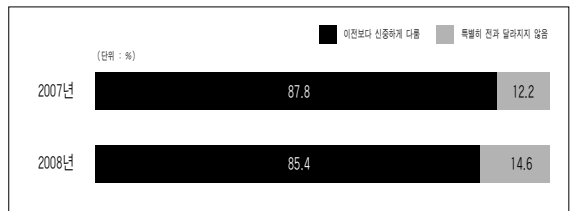
또한, 정정·반론·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이외의 기타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기사삭제”인 경우에, 피신청인은 “구두/서면 사과”인 경우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안내』 항목별 만족도



『절차 안내』 차원의 항목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사건 접수 후 접수사실 및 조정기일 신속, 친절하게 통보” 항목의 만족도가 각각 86.5점, 8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청인은 “사건 종결 후 보도문 게재여부 안내”(73.3점), 피신청인은 “심리 후 결과 및 향후 법적절차 자세하게 설명”(73.1점) 항목의 만족도가 여타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정절차 후 안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심리참석 후 기사 작성, 편집 태도 변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 참석 후 기사 작성이나 편집 태도의 변화 여부에 대해 피신청인 103명 중 85.4%(88명)가 “이전보다 신중하게 다룸”이라고 응답하여 조정심리 참석 후에도 “특별히 전과 달라지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14.6%, 15명)보다 월등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언론중재제도가 취재보도과정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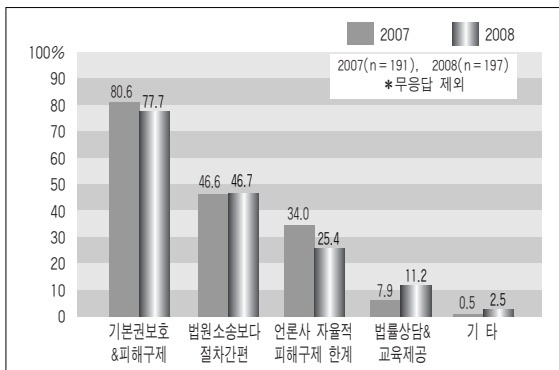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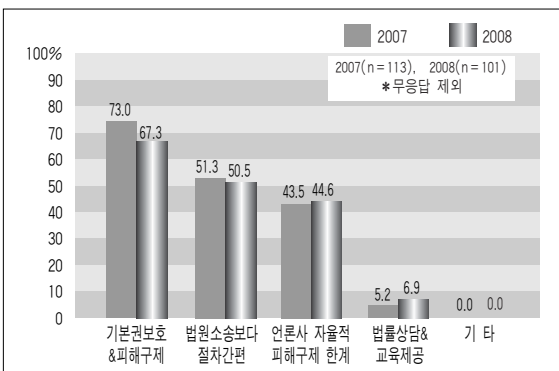
언론보도 분쟁해결을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청인 95.6%(197명), 피신청인 98.1%(101명)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절대 다수가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신청인(77.7%)과 피신청인(67.3%) 모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법원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으므로”(신청인 46.7%, 피신청인 50.5%), “언론사의 자율적인 피해구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신청인 25.4%, 피신청인 4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 필요 이유 - 복수응답



〈피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 필요 이유 - 복수응답



4.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속성별 이미지('07년 대비)

		(단위 : %)		
		긍정	보통	부정
국민의 인격권 보호	2007	66.9	28.1	4.6
	2008	71.8	20.9	5.8
믿음 (신뢰감)	2007	64.3	25.0	9.7
	2008	63.6	27.7	7.3
공익적/사회적 책임	2007	61.7	30.1	7.1
	2008	67.0	25.7	5.3
정직 & 공정	2007	62.2	26.5	11.2
	2008	61.7	28.6	7.8
친근감	2007	43.9	38.3	17.4
	2008	51.0	30.6	15.5
전반적으로 마음에 든다	2007	52.1	34.7	12.7
	2008	64.6	23.8	10.2

언론중재위원회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신청인의 64.6%, 피신청인의 41.7%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청인(+12.5%)과 피신청인(+3.4%) 모두 '07년 대비 긍정응답률이 상승한 수치이다.

〈피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속성별 이미지('07년 대비)

		(단위 : %)		
		긍정	보통	부정
국민의 인격권 보호	2007	73.9	24.3	0.9
	2008	75.7	21.4	
믿음 (신뢰감)	2007	53.0	43.5	2.6
	2008	59.2	31.1	6.8
공익적/사회적 책임	2007	60.0	38.3	0.9
	2008	67.0	26.2	4.9
정직 & 공정	2007	52.2	40.0	7.0
	2008	49.5	37.9	9.7
친근감	2007	26.9	41.7	30.4
	2008	29.1	41.7	26.2
전반적으로 마음에 든다	2007	38.3	49.6	11.3
	2008	41.7	42.7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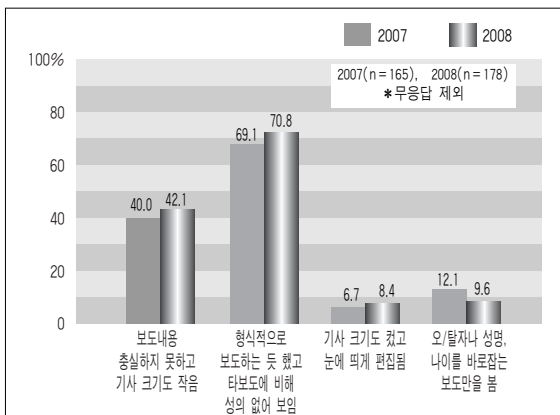
이미지 속성별로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신청인 71.8%, 피신청인 75.7%) 항목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익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신청인 67.0%, 피신청인 67.0%), “믿음(신뢰감)이 간다”(신청인 63.6%, 피신청인 59.2%), “정직하며 공정하다”(신청인 61.7%, 피신청인 49.5%), “친근감이 간다”(신청인 51.0%, 피신청인 29.1%)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07년 대비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공익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항목의 긍정응답률이 7% 가량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 조정기구로서 “언론평해구제”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뚜렷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미지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신청인의 정정·반론보도에 대한 경험 여부 및 평가

〈신청인〉 조정신청 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평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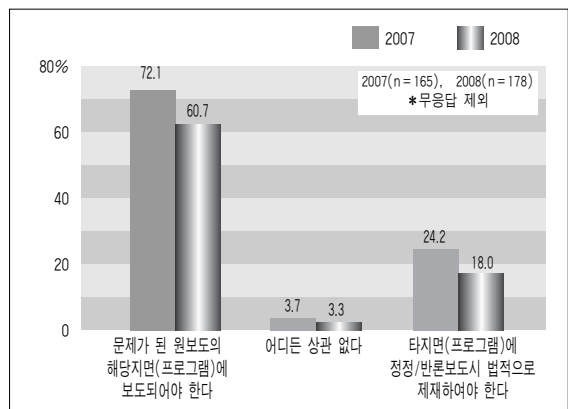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전, 신문(방송)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게재(방송)된 것을 본 적이 '있

다'고 응답한 신청인은 86.4%(178명), 게재(방송)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신청인은 10.2%(21명)로 나타나, '07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정신청 전 게재(방송)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접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신청인 178명 중, 조정신청 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문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하여 '07년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보도이며 타 보도에 비해 성의 없어 보였다”(70.8%, 126명), “보도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기사크기도 작았다”(42.1%, 75명)고 생각하는 신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사 크기도 컸고 눈에 띄게 편집되었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신청인은 8.4%(15명)에 불과하여 신청인의 대다수가 정정·반론보도문의 형식 및 내용이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게재면(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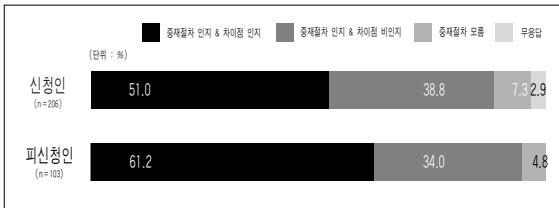


또한, 조정신청 전 게재(방송)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신청인 178명 중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원 보도가 실렸던 지면이 아닌, ‘바로잡습니다’, ‘고침’ 등의 고정란에 게재되거나 방송의 경우 원 프로그램이 아닌 시청자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보도되는 경우에 대하여, 60.7%(108명)가 “문제가 된 원 보도의 해당지면에

보도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8.0%(32명)는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되면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어디든 상관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6명)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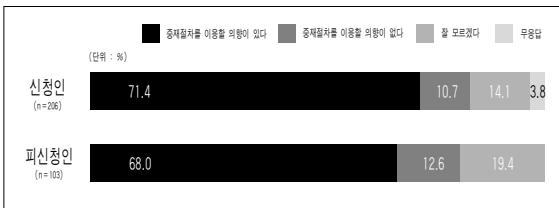
6.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

중재절차 인지 여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절차와 별개로 중재절차(피해자와 언론사가 사전에 합의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의 89.8%, 피신청인의 95.2%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신청인의 51.0%, 피신청인의 61.2%는 “조정과 중재절차의 차이점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절차 향후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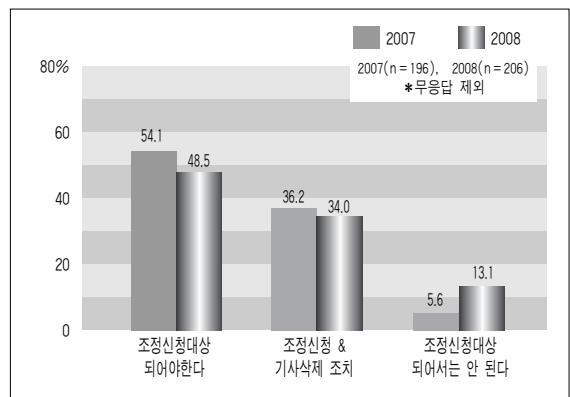


향후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게 될 경우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71.4%, 피신청인의 68.0%가 “중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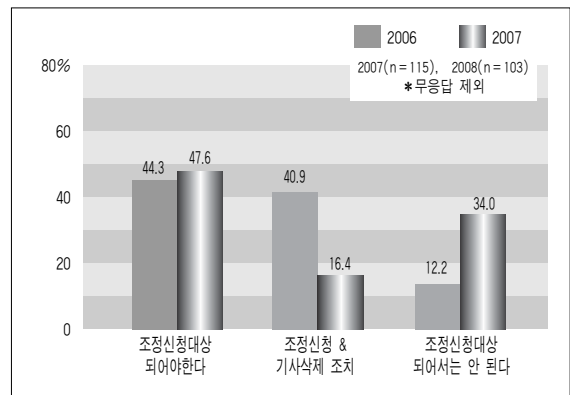
차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신청인의 10.7%, 피신청인의 12.6%가 “중재절차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중재절차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포털사이트, IPTV 등에 관한 사항

〈신청인〉 포털사이트 뉴스 조정대상 포함 견해



〈피신청인〉 포털사이트 뉴스 조정대상 포함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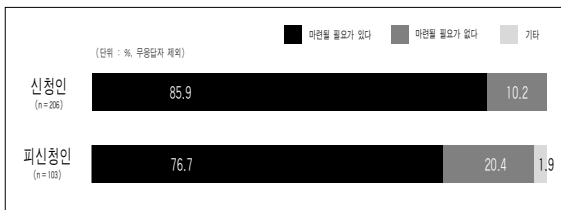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털사이트 뉴스에 대한 조정 신청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48.5%, 피신청인의 47.6%가 포털사이트 뉴스도 “조정신청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신청인의 34.0%, 피신청인의 16.4%는 “조정 신청은 물론, 기사 삭제 조치를 취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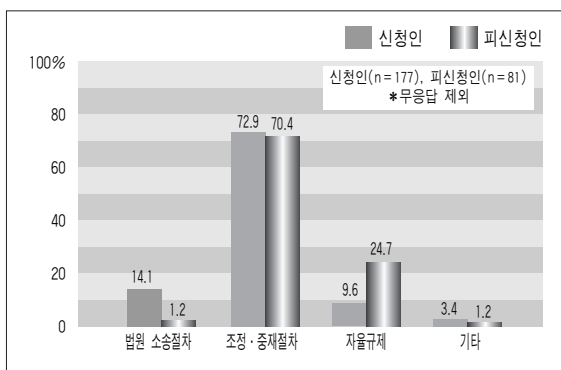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신청인의 82.5%, 피신청인의 64.0%가 포털사이트 뉴스도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07년 대비 피신청인의 경우, “조정신청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기간 중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인터넷매체의 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조사기관은 분석했다.

IPTV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필요성



IPTV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전송,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털과 유사하게 언론보도를 매개함으로써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신청이나 별도의 법적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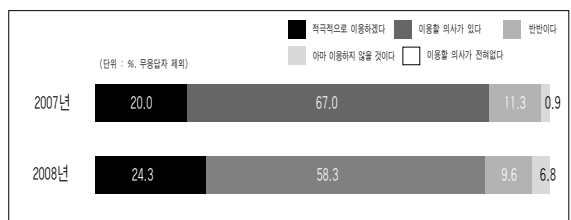
인의 85.9%(177명), 피신청인의 76.7% (81명)가 “법적구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IPTV에 방송된 내용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정·중재신청이나 별도의 법적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신청인 177명, 피신청인 81명 중에서 신청인의 72.9%, 피신청인의 70.4%가 포털이나 IPTV와 같이 언론보도를 매개하는 매체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절차”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절차 외 전달, 또는 매개된 기사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법에 대하여 신청인은 “법원 소송절차” (14.1%), 피신청인은 “심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24.7%)라고 응답하였다.

8. 피신청인의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센터·교육프로그램 향후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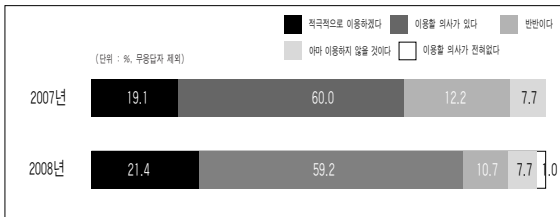
〈피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센터 향후 이용의향



변호사 등 전문 상담인으로 구성된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센터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82.6%(85명)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4.3%(25명)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07년(87.0%) 대비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센터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다소 감소(-4.4%)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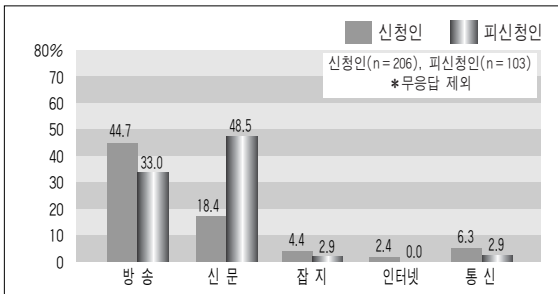
〈피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프로그램 향후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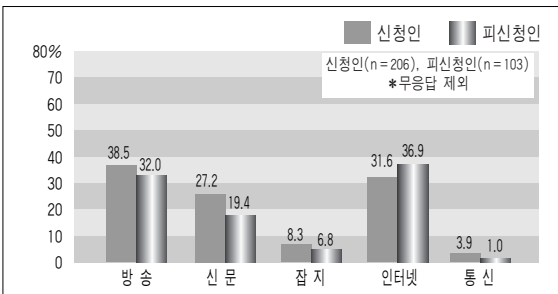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 대처방안 등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80.6%(83명)가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1.4%(22명)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한편, “(아마)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8.7%(9명)로 나타났다.

9. 언론매체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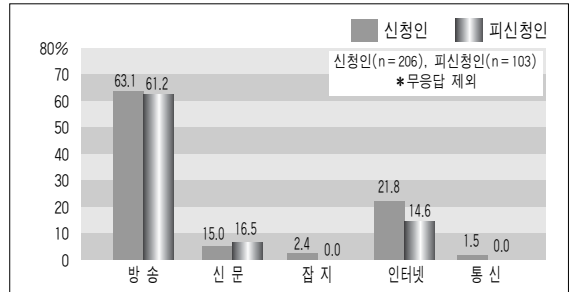
인격권 보호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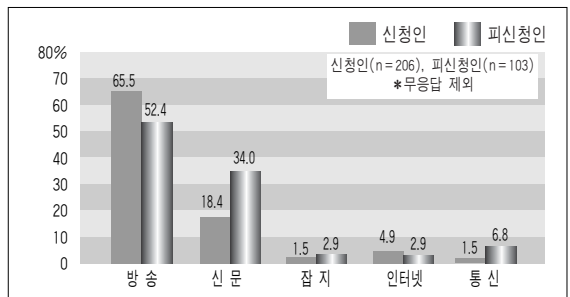
오보로 인한 피해 - 복수응답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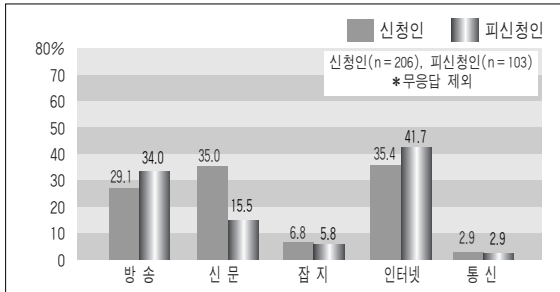
공공성, 공익적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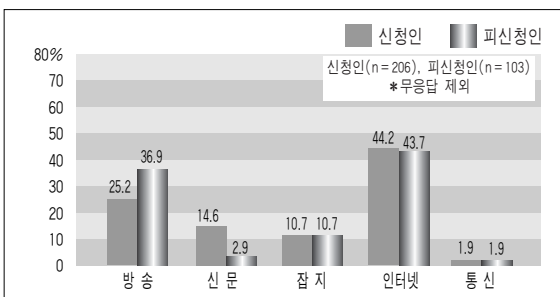
인격권 보호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매체에 대하여 신청인은 “방송”(44.7%), 피신청인은 “신문”(48.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는 피신청인 응답자 중 인쇄매체 종사자가 다수(68.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이며, 언론매체의 특징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항목 전반에서 이와 같은 피신청인 응답자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오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방송”(신청인 36.9%, 피신청인 32.0%)과 “인터넷”(신청인 31.6%, 피신청인 36.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공공성,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방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타 매체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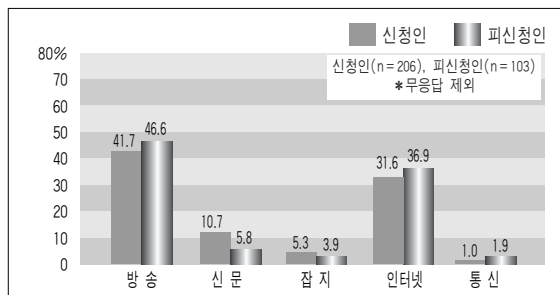
명예훼손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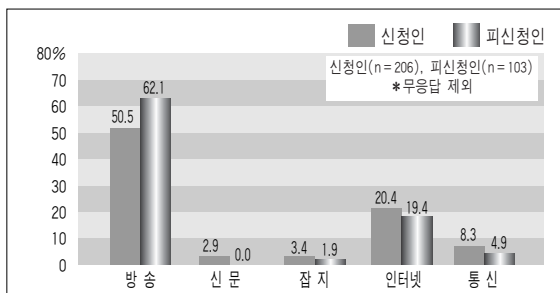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 복수응답



초상권, 성명권 침해 - 복수응답



음성권 침해 - 복수응답



명예훼손 피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매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인터넷”(35.4%), “신문”(35.0%), “방송”(29.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은 “인터넷”(41.7%)과 “방송”(34.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생활(프라이버시권) 침해 피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인터넷”(신청인 44.2%, 피신청인 43.7%)과 “방송”(신청인 25.2%, 피신청인 36.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초상권, 성명권 침해 피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방송”(신청인 41.7%, 피신청인 46.6%)과 “인터넷”(신청인 31.6%, 피신청인 36.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음성권 침해 피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방송”(신청인 50.5%, 피신청인 62.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0. 상담이용자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분쟁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취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389명 중에서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 신청”한 경우가 67.1%(261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당 언론사에 먼저 연락한 뒤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26.5%, 103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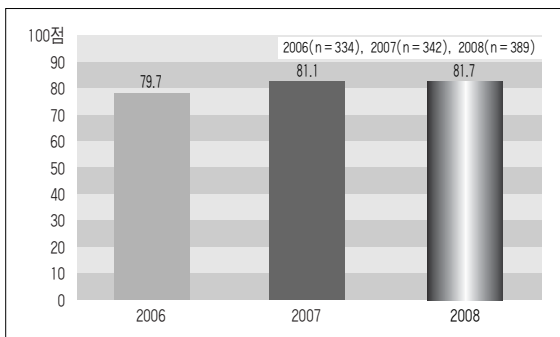
분쟁 이후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상담창구를 이용한 상담이용자 261명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를 담당하는 주유기관”이라는 이유로 상담창구를 바로 이용한 상담신청인이 76.2% (19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주변 사람의 추천으로”(18.0%, 47명), “언론중재위원회의 광고

를 본 적이 있어서”(7.3%, 19명), “과거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해본 적이 있어서”(3.1%, 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상담 후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한 응답자 128명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다른 상담 후 만족할 만한 상담결과를 얻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0.3%(90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상담기관에서 추천해 줌”(12.5%, 16명), “다른 상담기구보다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서”(7.0%, 9명), “주변 사람의 추천으로”, “방송 후 대응방법을 찾고자”,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의 조정을 위해”(각 5.5%, 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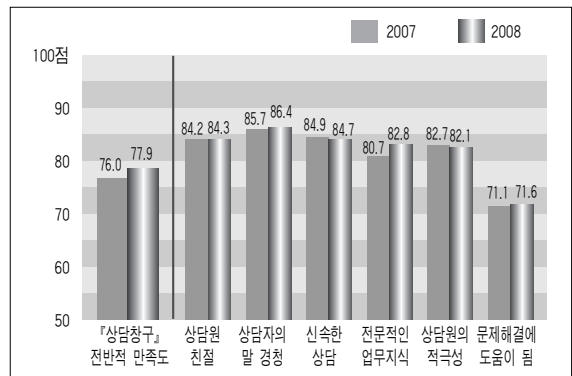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89명 중 83.3% (324명)가 “전화상담”을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방문상담” 13.9%(54명), “인터넷을 통한 상담” 8.2%(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각 항목별 평가점수(5점 만점)에 각각의 항목과 계감만족도의 상관계수² 값을 이용하여 산출된 중요도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산출한 상담이용자의 '08년 종합만족도는 81.7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07년(81.1점)과 비슷한 수준(+0.6점)이다.

『상담창구』 항목별 만족도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이용자의 『상담창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77.9점으로 조사되어, '07년(76.0점) 대비 다소 상승(+1.9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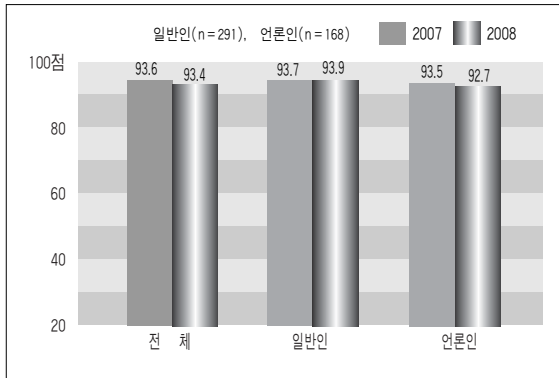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자의 말 경청” 항목이 86.4점으로 '07년에 이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신속한 상담”(84.7점)과 “상담원 친절”(84.3점) 항목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 해결에 도움” 항목은 71.6점으로 타 항목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11. 교육수강자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수강자 중 일반인의 95.5%(278명), 언론인의 99.4%(167명)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의 10.7%, 언론인의 15.5%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인의 51.2%, 언론인의 73.8%는 “대충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언론인이 일반인 대비 “정확히/대충은 알고 있다”는 비율이 30.0% 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언론사 등 관련 업계에 근무하는 언론인의 직업적 특성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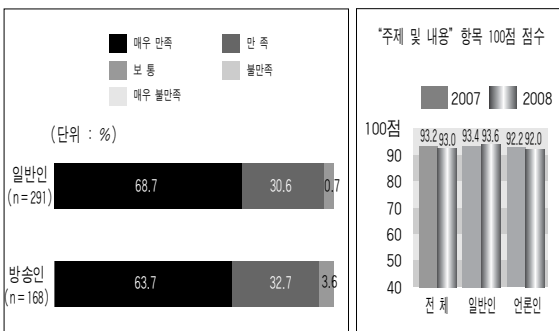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각 항목별 평가점수(5점 만점)에 각각의 항목과 체감만족도의 상관관계수² 값을 이용하여 산출된 중요도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교육수강자의 종합만족도는 93.4점으로, '07년(93.6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0.2점)하였다.

한편, 일반인의 종합만족도는 93.9점, 언론인의 종합만족도는 92.7점으로, 일반인과 언론인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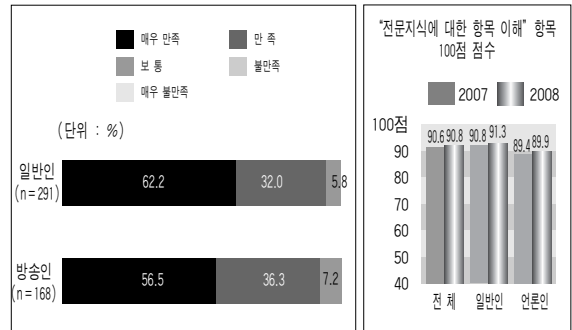
“주제 및 내용” 항목 만족도



“주제 및 내용” 항목에 대하여 일반인은 99.3%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93.6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96.4%가 ‘(매우) 만족’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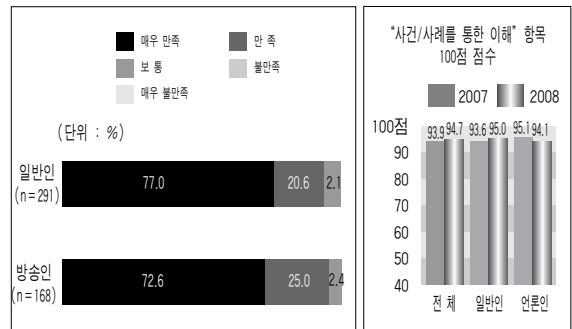
응답하여 92.0점으로 나타났다.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 항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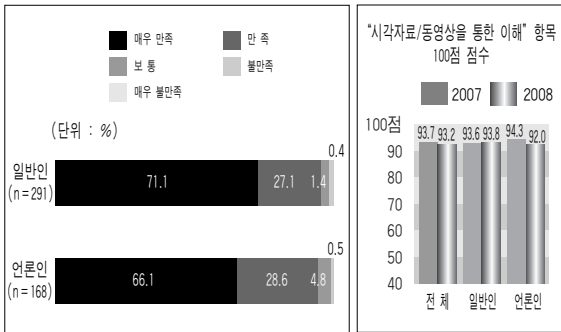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 항목에 대하여 일반인은 94.2%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91.3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92.8%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89.9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사건/사례를 통한 이해” 항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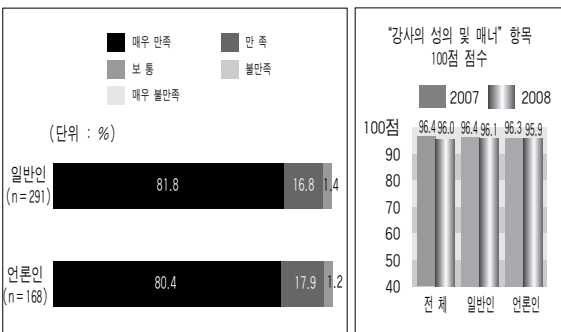
“사건/사례를 통한 이해” 항목에 대하여 일반인은 97.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95.0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97.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94.1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일반인과 언론인 모두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에서 사건/사례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각자료/동영상을 통한 이해” 항목 만족도



“시각자료/동영상을 통한 이해” 항목에 대하여 일반인은 98.2%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여 93.8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94.7%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여 92.0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언론인은 '07년 대비 만족도 수준이 다소 하락(-2.3점)하였으나, 일반인과 언론인 모두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에서 시각자료나 동영상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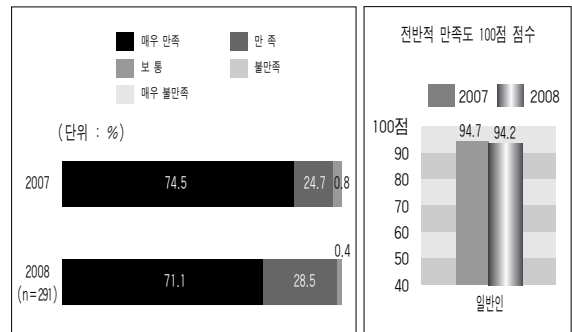
“강사의 성의 및 매너” 항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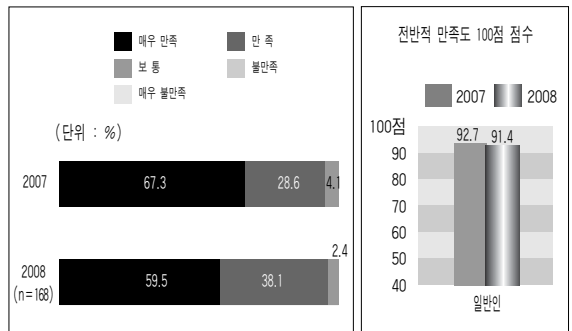
“강사의 성의 및 매너” 항목에 대하여 일반인은 98.6%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여 96.1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98.3%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여 95.9점의 만족

도 수준을 보여 5개 항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일반인과 언론인 모두 강사가 성의 있고 매너 있는 자세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인〉 교육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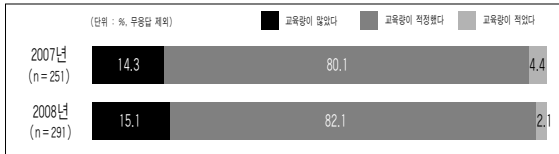
〈언론인〉 교육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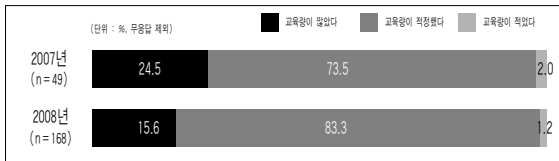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일반인의 99.6%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여 94.2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97.6%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여 91.4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07년 대비 일반인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언론인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7.8%)하여 전반적 만족도가 다소 하락(-1.3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교육시간내 이루어지는 교육량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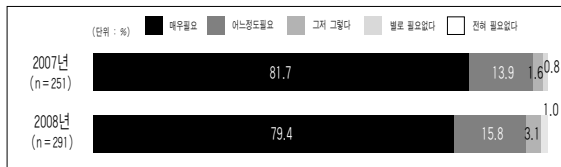
〈언론인〉 교육시간내 이루어지는 교육량의 적절성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82.1%(239명), 언론인의 83.3%(140명)가 “교육시간 대비 교육량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07년 대비 교육량이 적절했다고 응답한 언론인의 비율이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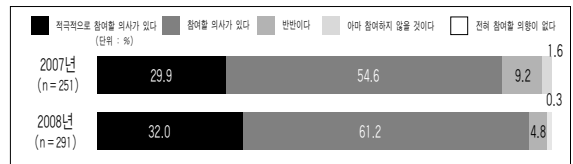


〈언론인〉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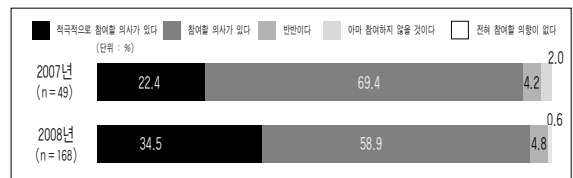


일반인의 95.2%(277명), 언론인의 99.4%(167명)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이 “(매우/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언론인의 경우 ’07년에 비해 위원회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9%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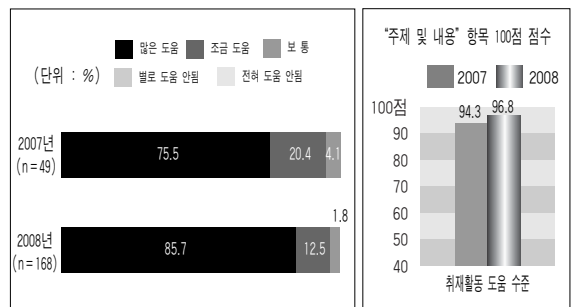
〈언론인〉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필요 여부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프로그램 참여의향을 살펴보면, 일반인의 93.2%(271명)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32.0%(93명)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언론인의 93.4%(157명)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4.5%로 전년도보다 12.1% 높게 나타났다.

〈언론인〉 『취재활동』에 대한 도움 수준



언론인의 98.2%(165명)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이 향후 취재보도에 “(많은/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07년 대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증가(+10.2%)하였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이 취재활동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96.8점으로 나타났다. □

뉴질랜드와 호주의 언론피해구제제도 II

-2008년 해외시찰 보고서-

조정중재팀 남 승 훈

우리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와 관련된 해외 기관을 방문, 기관 현황 및 자료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우리 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언론중재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해외시찰을 실시하였다.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시찰단은 지난 12월 10일부터 7박 8일의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시찰하였으며, 언론유관단체 및 언론사 방문을 통해 두 나라의 언론피해구제제도 및 오보대응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작년 시찰단은 호주 언론평의회, 시드니모닝헤럴드,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뉴질랜드헤럴드를 방문해 두 나라의 신문 관련 언론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짧은 일정으로 방송 관련 언론피해구제 기관은 방문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두 나라에 대한 방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시찰단은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방송 관련 언론피해구제 기관인 뉴질랜드의 BSA와 호주의 ACMA를 방문하였으며, 이와 함께 호주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The Australian를 찾았다.

이번 방문으로 인해 신문과 방송의 언론피해구제 제도로 나뉘어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피해구제 시스템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두 나라의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었다. 특히 BSA는 우리 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이번 시찰의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시찰보고서에서는 BSA를 중심으로 하여 이번 방문처의 특성과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BSA(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

(Chief Executive) Dominic Sheehan과 법률담당 Christina Sophocleus를 만나보았다.

방송법(Broadcasting Act)에 의해 설립된 BSA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국의 방송위원회는 정책수립 및 규제 등 행정의 역할이 우선시되고 피해구제업무는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BSA는 오히려 언론중재위원회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이번 면담에서는 BSA의 사무국장

가. BSA의 조직과 업무

“모든 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한 공정방송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BSA는 공정한 결정을 통해 뉴질랜드 방송의 공정성과 자유를 증진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9년 설립된 법정기관이다.



BSA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¹⁾이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준사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BSA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구분되며, 위원회는 'Board 4'라고 불리는 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4명의 위원은 방송장관의 추천으로 총독에 의해 임명되며, 이 중 2명의 위원은 각각 방송계와 공익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되고 의장은 7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에 있는 자를 선출한다. 이들 'Board 4'는 BSA에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지니며, 9인의 사무처 직원들이 불만 접수 및 안전 상정 등을 담당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위원들은 비상근이며 웰링턴에 있는 사무실에는 사무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당사자를 직접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 BSA가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므로 웰링턴 1개소 이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BSA는 법정 사업으로서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담당하며, 방송기준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나. BSA의 불만처리 시스템

BSA에서 다루는 영역은 방송에 한정되어 있지만 대상 프로그램의 범위는 무척 광범위하다. 방송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주로 뉴스나 시사보도 등을

다루고 있지만, BSA는 TV나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²⁾, 방송실천요강(Code of Broadcasting Practice)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민원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송실천요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방송채널·프로그램명·방송 일시 등을 기재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방송실천요강을 위반했는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프로그램이 방송된 날로부터 20 영업일³⁾ 이내에 먼저 서면으로 해당 방송사의 대표이사 앞으로 서면을 통해 불만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식 민원(Formal Complaint)'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공식 민원으로 접수된다.

다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BSA의 법률 담당 매니저에게 직접 신청서를 보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BSA 웹사이트에 마련된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에 대해 방송사는 민원 접수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원인이 방송사의 답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민원인은 그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이 문제를 BSA로 회부시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사가 20 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일로부터 60 영업일 이내에 이 문제를 BSA로 회부시킬 수 있다.

일단 BSA로 민원이 회부되면 BSA는 해당 방송사

1) 사무국장인 Dominic Sheehan은 기관의 성격을 'Independent Crown Agency'라고 표현했다.

2) 상업광고에 대한 민원은 광고기준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총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정치광고에 대해서는 BSA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3) 주말, 공휴일, 연말연시 기간(성탄절부터 1월 15일까지)은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20 영업일은 한 달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로부터 6개월 이내, 보도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한 우리 제도에 비해 BSA가 규정하고 있는 신청 기간은 상당히 짧다고 할 수 있다.

에 민원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그 회부서 사본을 송부한 후 답변을 의뢰하고 민원을 의뢰한 당사자에게 방송사의 답변서 사본을 송부한다. 방송사가 BSA에 추가 의견을 진술하면 당사자는 이에 대해 최종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BSA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방송사의 서면 진술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BSA의 위원 4인이 심의 후 결정을 내린다. BSA 결정은 당사자와 방송사에게 송부됨은 물론 BSA 웹사이트에도 게시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 방송실천요강(Code of Broadcasting Practice)

방송실천요강은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힘든 독특한 제도 중 하나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를 호주의 ACMA에서도 볼 수 있었다.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면 방송의 내용이 네 가지 방송실천요강에 어긋났는지

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중파TV(Free-to-air television)
- 유료TV(Pay television)
- 라디오방송(Radio)
- 선거방송(Election Programmes)

각각의 코드는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담은 기준(Standards)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준은 다시 기준의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일련의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구성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중파TV⁴⁾의 경우를 살펴보면 품위(Good Taste and Decency), 법과 사회질서(Law and Order),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 균형(Balance), 정확성(Accuracy), 공정성(Fairness), 프로그램 등급 분류(Programme Classification), 프로그램 정보(Programme Information), 어린이 보호(Children's Interest)⁵⁾, 폭력(Violence), 주류 홍보(Liquor) 등 11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유료TV나 라디오방송의 기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⁶⁾.

〈방송실천요강(Codes of Broadcasting Practice) 및 기준(Standards)〉

방송실천요강	공중파TV		유료TV		라디오방송	
기 준	1. 품위	7. 프로그램 등급분류	1. 등급 분류	7. 공정성	1. 품위	7. 차별 금지
	2. 법과 사회질서	8. 프로그램 정보	2. 품위	8. 정확성	2. 법과 사회질서	8. 책임 편성
	3. 개인 프라이버시	9. 어린이 보호	3. 어린이 보호	9. 개인 프라이버시	3. 개인 프라이버시	9. 주류홍보
	4. 균형	10. 폭력	4. 폭력	10. 주류 홍보	4. 관점	
	5. 정확성	11. 주류 홍보	5. 법과 사회질서		5. 정확성	
	6. 공정성		6. 균형		6. 공정성	

4) TV One, TV2, TV3, C4, Prime, Maori Television 등이 이에 해당됨.

5)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

6) 선거방송의 경우 위 세 가지의 기준 이외에도 선거방송 시 사실과 의견의 분리(Distinguishing Factual Information from Opinion or Advocacy), 명예훼손 금지(Denigration), 편파방송 금지(Misleading Programmes), 정치적 정체성의 표시(Opening and Closing Address)를 추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 이 네 가지 기준은 총선 관련 방송에만 적용되며 지방자치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실천요강은 필요할 경우 5년에 한 번 개정⁷⁾되며, 방송사업자들은 BSA와 상담을 거친 후 방송 기준을 정비하며 공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고 있다.

라. BSA의 결정력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BSA는 방송사로 하여금 정정의 내용이나 결정 요약서를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5,000NZ\$의 한도 내에서 정부에 비용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사는 5,000NZ\$ 이내의 비용 또는 보상금 이외에도 별도의 법정비용을 부과받아 5,000NZ\$ 이상의 비용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BSA는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결정 내용의 공표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위배사안일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최고 24시간 동안 방송이나 광고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BSA의 결정에 대해 BSA 내부절차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데, 방송사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신청인은 항소의

상대방이 되지만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총 평

2008년의 경우 BSA에는 139건의 불만 처리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BSA가 결정을 내린 사안은 19건이며, 이 중 실질적으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사례는 11건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해구제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와는 다르게 명예훼손 사례의 연간 변동폭이 작은 뉴질랜드의 경우 BSA를 통한 피해구제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BSA 방문〉

7) 각 방송실천요강의 최근 개정일시는 다음과 같다.

- 공중파TV : 2004. 12. 1.
- 유료TV : 2006. 8. 1.
- 라디오방송 : 2008. 7. 1.
- 선거방송 : 2008. 6. 1.

〈BSA의 연간 불만처리건수〉

구 분	접수처리된 민원	심의 사안
July 2007 - June 2008	148	139
July 2006 - June 2007	131	125
July 2005 - June 2006	153	156
July 2004 - June 2005	184	214
July 2003 - June 2004	196	203
July 2002 - June 2003	169	182
July 2001 - June 2002	186	259
July 2000 - June 2001	197	189
July 1999 - June 2000	206	239
July 1998 - June 1999	204	184
July 1997 - June 1998	174	177
July 1996 - June 1997	206	199
July 1995 - June 1996	179	171
July 1994 - June 1995	162	144
July 1993 - June 1994	168	151
July 1992 - June 1993	159	144
July 1991 - June 1992	106	76
July 1990 - June 1991	52	45

BSA에 접수되는 불만처리건수는 최근 4년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08년도에는 소폭 상승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또 다른 미디어 불만처리기관인 광고심의위원회(ASA :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역시 유사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BSA나 ASA에 대한 인지도나 대중의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BSA가 결정한 139건의 사례를 보면 TV프로그램이 82%(114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BSA에 접수되는 사건은 과거에 비해 점차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방송 기준 위배로 접수되는 사건들은 여러 복합적인 위반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하였

으나 이것이 명백히 사실과 어긋났을 때에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 정확성과 균형이라는 방송기준에 위배된 보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언론평의회(NZPC : New Zealand Press Council)에서는 BSA의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문에 대한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있다. NZPC의 경우에도 사건이 접수되면 당사자 간 서면에 의한 공방을 거친 후에 곧바로 결정에 회부되는데, 이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구제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있는 협상과 조정 등에 의한 절차는 없으며, 실제 심리가 열리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⁸⁾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반드시 단점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NZPC와 BSA의 결정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뉴질랜드 국민들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 역시 방송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BSA에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BSA의 면담자들은 5,000NZ\$로 한정되어 있는 배상금의 한도 폐지 및 타 피해구제기관이나 행정기관과의 통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고, 언론중재제도와 한국의 인터넷 언론의 현황 등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졌다. 면담을 마친 후-적어도 방송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한- 언론중재위원회와 BSA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반자라는 점을 확인한 것은 이번 시찰에서 얻은 가장 귀한 수확이며, 이번 시찰이 일회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서로 장기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이다.

8) 양재규, 「해의시찰보고서」, 〈언론중재〉, 2007년 겨울호 : p.125. NZPC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보고서를 참조할 것.



2.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는 지난 2005년 7월 호주의 방송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와 커뮤니케이션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 Authority)가 통합되면서 설립된 연방정부기구이다. 방송과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디어 컨버전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번 면담은 ACMA의 시드니 사무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부서의 담당자 Rochelle Zumamer를 비롯한 실무진 3명이 질문에 답해 주었다.

가. ACMA의 조직과 업무

ACMA는 호주방송위원회와 호주통신위원회가 결합된 방송통신규제기관으로 TV, 라디오, 인터넷, 통신에 대하여 규율하는 정부기구로서 업계의 자율규제와 경쟁을 증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통신 · 방송 · 무선통신 · 온라인 콘텐츠 분야의 규제
- 방송사업자의 인 · 허가 및 주파수 할당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상의 문제점과 스팸 등 불만 접수 처리
- 방송내용의 불만사항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

ACMA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중재위원회와 유사성이 있는 것은 '방송내용에 대한 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항목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BSA와 프로세스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다.

ACMA 역시 BSA와 마찬가지로 TV · 라디오 등에 대해 방송실천요강(Code of Practice)을 정해 놓고 이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해당 방송국에 직접 불만사항을 제기하여 60일 이내에 불만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방송국의 반응에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TV자막 · 담배광고 · 정치광고 · 선거자료 · 의약품 광고 · 아동 방송기준 · 호주 콘텐츠 기준 · 상업라디오 기준 · 반테러 기준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위원회에 직접 제기할 수 있으나,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과 선택 · 방송일정 · 광고내용 ·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불만사항은 위원회가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

언론중재제도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라면 ACMA에서는 명예훼손에 의한 신청은 다루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런 면에서 ACMA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 기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로 인해 누군가 초상권이 침해되어 피해구제를 원할 경우, 호주에서는 이를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 Act)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ACMA가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나. 호주의 사생활보호법과 ACMA가 규정하는 공익의 범주

ACMA의 관계자가 언급한 대로 호주의 방송법은 언론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회복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 방송사는 방송법에 의거해 ACMA와 협의하여 방송실천요강(Code of Practice)을 제정한 후 ACMA

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방송실천요강의 준수는 방송사업 인가의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지난 1988년 제정된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이다.⁹⁾ 사생활보호법은 언론뿐만 아니라 영리기관 및 정부기관이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다룰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언론 면제(Journalism Exemption)'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호주의 정보·국방·안보와 관련된 정부 산하기관만을 예외로 했던 기존의 개인정보공개 예외 범주에 언론을 포함시킨 것이며, 이러한 예외의 대상은 언론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언론 기관을 대신해 뉴스를 보도하는 기관이나 개인이다. 따라서 호주의 방송사는 공익과 관련된 경우 개인 정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칫 애매할 수 있는 '공익'이라는 개념에 대해 ACMA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 유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의 예로 다음과 같은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민·형사상의 범죄
- 공중의 보건 및 안전에 관련된 문제
- 소비자 문제 및 소비자 보호 차원
- 정치, 정부, 행정상의 문제
- 기업, 비즈니스, 노조 등이 행하는 조직상의 행위
-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

다. 총 평

면담에 응한 조사팀의 직원들은 ACMA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 방송에 대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혹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방송국의 허가 및 등록 등에 관한 행정적 절차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ACMA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 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보다 많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호주의 명예훼손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고자 한다.

3. The Australian

1964년 캔버라에서 호주 최초의 전국 일간신문으로 창간된 The Australian지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보도를 통해 호주의 유력 일간지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는 독자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호주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간신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자불만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말판 편집장 Nick Cater는 영국 BBC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상과 한국-호주간 통상 관계에 관심이 많은 지한파 인사이기도 했다.

가. 호주 언론계의 동향과 The Australian지의 특징

호주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과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2종의 전국 일간지가 발행되며, 그 외 10개의 지방 일간지가 있다. 멜버른에서 발행되는 헤럴드 선(Herald Sun)이 56만부로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

9) 호주의 사생활보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호주의 언론과 사생활 보호」(곽기성 저, <언론법제>, 2008년 하권)의 내용을 참조·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하며, 시드니에서 발행되는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가 43만부로 2위의 발행부수를 나타낸다.

호주 일간지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적인 언론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뉴스 코퍼레이션사(The News Corporation Ltd.)와 페어팩스(Fairfax)사 등 소수 신문그룹에 의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안,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의 신문과 채널7(CH7) 등 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뉴스 코퍼레이션사의 뉴스 리미티드 그룹은 호주 일간지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1980~1990년대에는 석간 전문지를 포함하여 대도시 신문들이 연속적으로 폐간되었는데, 시드니와 멜버른에서는 폐간되는 석간신문들이 조간신문인 오스트레일리안과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에 흡수되어 심야 특별판으로 바뀌기도 했다.¹⁰⁾

오스트레일리안은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와 함께 2대 전국 일간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와 디 에이지(The Age)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이다.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안은 루퍼트 머독 소유의 뉴스 리미티드에 속해 있으며, 판매부수는 15만부이다.

나. 오스트레일리안의 독자불만처리 방법

오스트레일리안은 독자불만처리를 위한 별도의 인력과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다만 독자로부

터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법적문제가 아니라 오보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편집부에서 이를 접수해서 정정 여부를 결정하지만, 불만사항이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적문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소속된 3명의 변호사가 이를 담당한다고 한다.

만일 보도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바로 정정보도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면에 별도로 마련된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Letter to the Editor)'라는 섹션을 통해 기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종의 반론보도라고 볼 수 있는데, 독자들 중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배석했던 시드니 총영사관의 김영수 영사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오스트레일리안이 한국 관련 보도를 하면서 사진에는 북한의 인공기를 내보낸 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영사관에서 항의를 했고, 다음날 오스트레일리안의 정정



〈The Australian 방문〉

10) 유일상, 「호주의 언론기업소유 집중과 규제」, 세계언론법제동향 (2001년 상권), p8

보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사과보도가 나갔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안타깝게도 Nick Cater가 자료를 찾아주지는 못했다.

독자의 불만이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법무팀으로 이관되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도 6건 정도 있다고 한다. Nick Cater는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1년에 2-3건 정도에 불과하며,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보도(Fair)와 정확한 보도(Accuracy)를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호주 신문평의회(APC : Australian Press Council)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냐는 의견을 물었다. APC는 일종의 자율기구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편집권 독립 헌장(Editorial Charter)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되며 회원사들은 APC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APC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편집국장 Sam North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의 Nick Cater도 APC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한 언론사의 자정노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호주의 언론이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감명 깊은 일이었지만, 이는 제도적인 면에 기인하기도 한다. 호주의 명예훼손법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가급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료에 근거한 사실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면이 없지 않다.

다. 호주의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05년 개정된 명예훼손법은 신문기사, 사진, 광고 및 그림 등에서 특정인을 근거 없이 지적하거나 음해를 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에 관한 조항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입증인데, 자신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될 당시에 증거가 없더라도 차후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서 어떤 기사의 내용이 명예훼손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거나 차후에 약점이 밝혀질 소지가 있는 보도의 경우에는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 물론 호주 사회의 성숙도나 언론의 태도를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명예훼손을 법으로 다루게 되면 원고와 피고 모두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언론중재제도와 같은 전치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음이 입증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해보상이 있는데,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 보상(Aggravated damages)을 명하거나 가해자에게 일종의 벌과금(Punitive damages)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시드니가 위치한 NSW주에서는 Punitive damages 제도는 없어졌다고 한다.

4. 시찰을 마치며

이번 시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 중 하나는 해외 인터넷 언론의 현황이었으나, 호주나 뉴질랜드



드는 아직 우리나라와 같은 인터넷 언론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뉴질랜드나 호주는 브로드밴드 보급률로만 따지면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뉴질랜드의 경우 대부분이 아직도 전화 모뎀방식의 구형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경쟁력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뉴스서비스는 조만간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뉴질랜드의 경우 2000~2005년 사이에 인터넷 사용자가 285.5%나 증가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인구의 76.3%인 32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뉴질랜드 정부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독점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는 넓은 국토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망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시드니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인터넷 인프라가 수준급으로 구축되어 있다. 호주 역시 전국적으로 인터넷 이용 인구는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호주 2,080만 인구 중 68.4%인 1,42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0~05년간 115%의 증가세를 보였다.¹¹⁾

그러나 인터넷 포털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우리의 사정과는 달리, 아직까지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는 포털뉴스나 인터넷뉴스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BSA의 경우도 인터넷에서 문제가 된 보도는 대부분 방송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을 별도로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인터넷 기술의 발달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인터넷 언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물어오기도 했다.

호주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CMA를 설립, 인터넷 산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작년 시찰보고서에서 언급한 APC 보고서에서도 신문사들이 빠른 속도로 멀티미디어 회사로 전환하고 있음을 언론계의 주요 경향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인터넷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가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날이 올 것이라 본다.

그때는 아마 BSA나 ACMA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2008년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Percentage of household with access to the Internet)은 무려 94%에 이른다. 부동의 세계 1위이다. 인터넷 언론에 관한 한,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실험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가 다루는 인터넷 언론과 관련한 분쟁은 늘 세계 최선의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찰을 통해 앞으로 인터넷 언론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감했으며, 우리 제도의 우수성과 효율성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더불어 앞으로는 해외시찰의 개념이 외국의 사례를 배워오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

11) Internet World Stats상의 통계자료 인용.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p/nz.htm>,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p/au.htm>)

Gain Perspective, Broaden Vision, Share Experience

조정중재팀 조사관 장 성 원

I. 들어가며 : 연수 목적과 취지

1981년 설립 이후 창립 당시는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소송에 비해 생소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꾸준히 해결해온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대한민국내 최고의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 또는 Dispute Resolution)¹⁾ 기관'을 넘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해외에 전파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

언론 전문 ADR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법학 지식 및 언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협상, 조정, 중재 등 ADR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즉 조정의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감정 및 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립을 완화할 뿐 아니라 양자 간 간극을 부드럽게 좁혀 주며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

는 능력(이른바 "People Skill")의 배양이 중요하다.

ADR에 관한 논의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미국 대학에서는 일찍이 설득, 협상, 조정, 중재 분야를 학문의 지위에 올려 법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등에서 강의 및 연구를 하여 왔으며, 특히 각 대학의 Law School 내 특수 과정으로 각종 ADR 및 Dispute Resolution Program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미국 내 ADR제도와 실제에 있어서 학문적 배경과 실천적 바탕이 되고 있다.

금번 연수자들²⁾은 미국 방문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ADR 및 Dispute Resolution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우리 위원회의 경험을 공유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의 우수한 대학의 Dispute Resolution 과정³⁾ 중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교수진 및 관계자들과

1) 필자는 협상, 알선, 조정, 중재 등을 통칭하여 ADR로만 알고 있는데, 막상 미국에 가보니 Alternative를 뺀 'Dispute Resolution'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었다. ADR이 워낙 발달하다보니 '대체'나 '보완'이 아닌 독자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2) 2008년 해외실무연수자인 필자와 총무팀 김태호씨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미국 버몬트 주(우드스타), 보스턴, 뉴욕, 워싱턴D.C, LA를 차례로 방문하였다.

3) 매년 미국 대학 순위를 매기고 있는 the U.S. News and World Reports 선정 각 대학 로스쿨 내 'Dispute Resolution' 과정 순위(2008년)는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http://gradschools.usnews.rankingsand-reviews.comgrad/law/dispute> 참조).

1위. 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

2위.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10위. Fordham University (New York, NY) (3위~9위 생략)

대화하였다.

또한 AAA(미 중재협회), 변호사협회 등 비영리단체, 미 법무부 및 지방법원 등 정부기관, JAMS 등 민간 조정서비스회사 등을 방문하여 각종 ADR 정보를 얻고, 운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그들의 ADR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노력했다.

II. 본문 : 세미나 참가 그리고 방문의 연속

1. 대학교 ADR & Dispute Resolution 관련 기관(과정)

가.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in Pepperdine Law School⁴⁾

1986년 창립 이래 Straus Institute는 미국 내 ADR과 분쟁해결 분야에서 선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the U.S. News and World Reports가 매년 선정하는 각 대학 로스쿨 내 'Dispute Resolution' 과정 평가에서 최근 12년 동안 7번 1위를 했고 평가 개시 이후 3등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한다. Straus Institute에서는 Mediating the Litigated Case, Professional Skills Program in Dispute Resolution과 같은 단기 전문교육과정뿐 아니라 Master(3년) 및 LLM(1년) 등 다양한 석·박사과정이 있으며, Faith Based Initiatives, International Study Tours, Straus Videos 등 각종 프로그램도 운용하고 있다.

연수자들은 Los Angeles 말리부에 위치한 Pepperdine 로스쿨을 방문해 Straus Institute의 Managing Director인 Peter Robinson 교수와 Academic Director인 Tom Stipanowich 교수를 만나 기관 현황을

듣고 그들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Robinson 교수의 수업은 '조정이론과 실제' 과목으로 수업 중간에 role-playing을 1시간 했는데, 유명 스포츠 구단주가 사무실 여직원에게 대해 성희롱을 한 사건을 놓고 조정인(mediator), 양 당사자 그리고 각 대리인(변호사) 역할을 맡은 학생 5명이 한 팀이 되어 조정을 경험해보는 자리였다. Stipanowich 교수의 수업은 '중재' 과목으로 교수가 중재인(arbitrator)이 되고, 학생 중 원고 및 피고 대리인을 선정해서 실제 중재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교수들이 학교 현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도 아시아 및 한국의 ADR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현재 매년 북경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국의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 Professional Skills Program in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

이번 미국 연수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앞서 언급한 Pepperdine대의 Straus Institute가 Vermont 로스쿨과 공동 주관한 3일 과정의 워크숍인 Professional Skills Program이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조정하고 있을까' 하는 필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줌과 아울러 미국 조정전문가들의 내공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 프로그램은 1년에 2번 미 동부·서부(서부는 말리부 Pepperdine 캠퍼스, 동부는 매년 바깥)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3일간 계속되는 총 19개의 워크숍 코스와 32명의 강사진, 200여명의 참석자로 구성되며 등록비는 1,095달러(공공기관 종사자는 695달러)이다.

미국 보스턴 북쪽으로 차로 달려 3시간 거리인 버

4) <http://law.pepperdine.edu/straus/>

몬트 주의 Woodstock에서 열린 2008년 가을 프로그램에서 연수자들이 선택한 코스는 〈STAR: A Systematic Approach to Mediation Strategies(조정 전략의 체계적 접근)〉로 강사는 Pepperdine의 Robinson 교수와 Eric Lindauer 변호사였다. 18시간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워크숍의 전체 내용은 지면 제약상 다른 기회를 통해 소개하기로 하고,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유능한 조정자는 조정의 각 단계와 드러난 주제에 대해 잘 인식하며 각 단계별로 스타일과 기법을 잘 활용한다는 것으로, 조정의 각 단계(당사자 소집-조정 개시-의사소통-협상-종결), 의사소통의 원활화, 문제해결의 장려, 중립성과 공정성의 조화, 감정의 관리, 조정자의 윤리 등의 강연을 듣고 토론하였다.

필자는 25년 동안 소송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client들에게 소송이 너무 힘든 점을 고심한 나머지 현재 조정중재로만 활동을 하고 있는 Lindauer 씨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조정자(mediator)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질은 인내(patience)와 끈기(persistence)라는 말에 깊이 공감했다.⁵⁾ 또한 조정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4가지 factor, 즉 Risk(법원 소송의 경우 질 수도 있다는 점), Cost(비용), Time(시간), Finality(종결, 조정을 통해 분쟁을 끝지 않고 끝낼 수 있다는 점)를 강조한다는 강사의 말을 듣고 한국에서 조정을 진행하다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던 SBS '신의 길 인간의 길' 사건이 떠올랐다.⁶⁾

다. 하버드대 로스쿨 '협상 프로그램'
(Programs on Negotiation, PON)⁷⁾

하버드대 로스쿨에 있는 대학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 센터 겸 커뮤니티인 PON은 하버드대뿐 아니라 MIT 및 터프츠(Tufts) 대학의 교수진, 학생(대학원생),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상 및 ADR 연구센터다. 1983년에 특수 연구 프로젝트(Harvard Negotiation Project)로 시작된 PON의 목적은 협상과 분쟁해결분야의 이론과 연습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현재까지 세계적인 협상 스킬로 명성을 쌓아왔다. 협상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이 아이디어를 공유할 각종 세미나, 워크숍, 포럼을 개최하며 각종 발간물을 통해 학생과 변호사, 기업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협상과 분쟁해결분야에서 포괄적인 훈련과정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PON의 실질적인 설립자이며 협상분야의 고전이자 베스트셀러인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⁸⁾의 저자인 Roger Fisher 교수를 꼭 만나고 싶었으나 교수 일정상 결국 만날 수가 없었다. 대신 PON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협상분야의 또 다른 명저인 'Beyond Winning: Negotiating to Create Value in Deals and

5) 이 분은 항상 조정심리 전에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회의실 문을 연다고 한다. 강의 중 실제 조정을 가정해 오프닝 멘트를 하기도 했는데 조정인의 배려, 관록과 지혜가 오롯이 담긴 speech여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6) 이 사건은 필자가 서울제3중재부 조사관을 하면서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복음)주의로 흐르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SBS 4부작 다큐멘터리에 대해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대책위를 구성해 정정 및 사과를 요구한 사건이다. 양 당사자 모두 내심 본 사건이 중재위에서 해결되기를 원했고, 사건의 종결(Finality)을 강조한 중재부에 의해 결국 쌍방 유감표명으로 합의되고 심리 중 취하로 종결되었다.

7) <http://pon.harvard.edu>

8) 원칙화된 협상(principled negotiation)과 단일텍스트협상(single-text negotiation)을 주창한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와 사람을 분리시켜라. 둘째,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라. 셋째, 상호 이익이 되는 옵션을 개발하라. 넷째, 객관적인 기준의 사용을 주장하라.

Disputes'를 저술한 Robert Mnookin 교수를 어렵사리 만나 미국 조정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Mnookin교수는 미국 ADR은 이론과 실제에 있어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면서 실제 ADR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때는 과도한 소송비용을 꺼린 미국 회사들(법률시장의 가장 중요한 수요자)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했다. 또한 한국도 법률시장이 분화되고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 ADR 교육과정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라. 포뎀(Fordham)대학교 로스쿨 분쟁해결 및 ADR 프로그램⁹⁾

뉴욕 링컨센터에 위치한 Fordham 로스쿨은 로스쿨 자체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분쟁해결 및 ADR 프로그램 역시 미국 내외의 관련 분야의 교육과 학문연구 그리고 실제 조정업무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상, 조정, 중재, 국제분쟁해결에 관한 각종 코스와 대외 클리닉이 있으며 미 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협상조정중재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다.

연수자들은 ADR프로그램의 Director인 Jacqueline Nolan-Haley 교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Nolan-Haley 교수는 Fordham 로스쿨에서 ADR분야 강의를

전담하고 있는 교수이자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저자로, 월스트리트와 UN이 있는 뉴욕의 상업적, 국제적 이점을 포뎀대 ADR프로그램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Nolan-Haley 교수는 우리 위원회가 언론조정(journalism mediation)을 한다는 점에 매우 흥미를 보이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또한 며칠 후 Fordham 로스쿨에서 열리는 전국 협상경진대회(Negotiation Competition) 북동부지역 예선에 참관해 보라며 초대해줘 미 로스쿨 학생들의 진지한 협상경연을 참관해 보는 흔치 않은 기회도 가졌다.¹⁰⁾

2. ADR 관련 기구

가. 미 중재협회(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¹¹⁾

ADR 영역에서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국 ADR(특히 중재분야)을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not-for-profit)기관¹²⁾인 미 중재협회는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개인과 단체에 ADR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분쟁해결절차에서의 협회 역할은 조정에 따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뿐 아니라 국제 분쟁도 국제분쟁해결센터

9) <http://law.fordham.edu/adr.htm>

10) 미 변호사협회(ABA)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Fordham 로스쿨의 학생 동호회 중 하나인 Dispute Resolution Association이 이 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협상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2명씩 짝이 되어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변호사) 역할을 맡아 4명의 심사관(judge)앞에서 서로 30분간 협상한 후 심사관의 코멘트를 듣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필자는 경연 팀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4시간이 넘게 앉아 있다가 지쳐 중간에 나가려 했으나 교수님의 제지로 결국 끝까지 참관했다.

11) <http://www.adr.org/>, 보통 '트리플 A'라고 부른다.

12) 필자는 이번에 우리가 통상 비영리기관으로 부르는 기관이 non-profit과 not-for-profit로 나뉜다는 사실을 처음 배웠다. 전자는 순수한 비영리목적 기관으로 돈이 남으면 전부 돌려주는 곳이며, 후자는 돈을 벌되 돈(이익)이 목적이 아닌 단체로 사기업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문화예술위원회는 non-profit, 예술의 전당은 not-for-profit로 볼 수 있을 듯하다.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를 통해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 서비스에는 조정인과 중재인의 선임, 심리 준비, 해결 옵션에 대한 정보 제공, 조정을 통한 해결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중재 또는 조정을 통한 사건 해결을 지향한다. 또한 기업, 조합, 정부기관, 법률회사 및 법원에 ADR 시스템을 공급하고, ADR 분야의 연수와 교육(AAA University), 책자 발간도 시행하고 있다.

연수자들은 먼저 AAA에서 Fordham 로스쿨 강당을 빌려 개최한 ‘Ask & Answer: Arbitration’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중재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노련한 중재인(arbitrator)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중재 일반 및 예비심리단계, 중재인의 윤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미나 중 특히 인상 깊었던 사람이 2명 있었는데, 첫 번째는 토론 진행자로 나온 Eugene Farber 변호사로, 오랜 경험과 관록이 담긴,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파고드는 언변과 카리스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Farber 변호사는 조정이 진행되다가 중재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중재 계속 중에 한쪽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 중 나온 얘기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중재인의 권한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다.¹³⁾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사람은 마무리 발언을 한 AAA의 General Counsel(법무실장)인 Eric Tuchman

씨로, 미국의 중재가 지금 갈림길(crossroads)에 있다면서, 중재의 발전을 좌우하는 3가지 요인은 당사자의 요구(needs of parties), 의회(Congress)의 입법, 그리고 법원(Court)의 시각(특히 대법원 판결)임을 강조했다.¹⁴⁾

연수자들은 세미나 후 뉴욕 브로드웨이에 있는 AAA 뉴욕본사를 방문해서 Sandra Partridge 부회장, Michael Lee 변호사¹⁵⁾와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세련된 뉴욕커인 Partridge 부회장은 AAA가 요즘 아시아에 관심이 많으면서 고위 임원임에도 직접 사무실 및 심리실을 안내해 주고 많은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 주었다.

나. 미 변호사협회 분쟁해결부(The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Dispute Resolution)¹⁶⁾

미 변호사협회의 분쟁해결부에서는 소속 회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쟁해결 영역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서비스의 각종 문제해결능력과 우수성 향상을 위해 각종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근처에 위치한 미 변호사협회를 방문한 연수자들은 Staff Attorney인 David Moora 씨와 Deputy Program Manager인 Stephen Kotec 씨를 만나 협회 내 분쟁해결부의 회원이 현재

13) 이 장면에서 필자는 다시금 SBS ‘신의 길 인간의 길’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Farber변호사에게라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I couldn’t do anything about it because I did not have any authority.”라고 대답해 중재가 철저히 client-driven procedure(당사자 중심 절차)임을 확인시켜 줬다.

14) 필자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회의 주 고객인 언론사 및 국민(이용자만족도조사 등), 국회에서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법원의 언론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15) 재미있는 것은 한국인인 Michael Lee변호사의 AAA내 직함이 Case Manager인데, 조정수수료 산정 등을 제외하면 업무내용이 중재위원회의 조사관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중재위 조사관의 영문 명칭을 case manager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 같다.

16) <http://www.abanet.org/dispute/>

18,000명에 달하지만 1993년에 처음 이 부서가 생겼을 때 내부의 반발이 상당했었다는 등 여러 흥미 있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분쟁해결부는 실제 조정을 하지는 않고 ADR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조하며 각종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등으로 ADR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¹⁷⁾ 또한 미국에는 조정중재인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협회 등에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지역 변호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다. 미 법무부 분쟁해결국(Office of Dispute Resolution in Department of Justice)¹⁸⁾

미국은 연방정부가 관련된 모든 분쟁에서 ADR을 먼저 시행하도록 법률(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에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 법무부 내에 설치된 분쟁해결국에서는 각 부처에서 ADR을 잘 활용하는지 평가하고,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국내외 민간 ADR기관과도 활발히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교류하고 있다.

필자가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친절한 Joanna Jacobs 국장은 조지타운대에서 ADR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겸 변호사로, 분쟁해결국의 업무, 미국의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줬을 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 업무 및 현황(운영재원, 통계유지, 한국 저널리즘현황 등)에도 여러 질문을 하면서 진지하고도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라.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flict Prevention & Resolution (CPR)¹⁹⁾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CPR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ADR을 혁신하고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회원제 비영리 기관으로, CPR회원들은 분쟁해결을 원하는 경우 CPR의 도움으로 적절한 조정중재인(neutrals)을 선임할 수 있다. CPR은 연례 컨퍼런스 외에도 ADR관련 연구와 교육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수자들은 뉴욕 렉싱턴 가에 위치한 CPR본사를 방문해 Helena Erickson 선임부회장 및 editor인 Russ Bleemer 씨를 만나 CPR의 업무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AAA와 다른 점은 회원제 조직으로, CPR의 staff들은 개별 조정중재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의뢰를 받아 조정중재인을 연결시키며, 이후 모든 사항은 neutral들이 진행한다고 한다. 언론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현직 변호사이며 현재 CPR의 정기간행물인 Alternatives의 editor인 Bleemer 씨는 경력에 걸맞게 우리 위원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실제 미국 내에서도 언론보도분쟁을 ADR을 통해 해결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마. The Judicial Arbitration & Mediation Service (JAMS)²⁰⁾

미국 내 사설 조정중재회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

17) 필자가 보스턴과 뉴욕 등을 다니면서 ADR전문가들을 만났다고 하니가 내년(2009년) 4월에 뉴욕에서 미변호사협회 분쟁해결부가 주관하는 연례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 사람들을 포함해 미국 내 ADR전문가들을 한 번에 모두 볼 수 있다고 했다.

18) <http://www.usdoj.gov/odr/index.html>

19) <http://www.cpradr.org/>

20) <http://www.jamsadr.com/>

랑하는 JAMS는 과거 합병을 통해 덩치를 계속 키워 왔으며, 미국 내 21곳의 지점을 갖고 있고 본사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위치하고 있다. 연수자들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뉴욕 타임스 빌딩에 있는 뉴욕 JAMS 사무실을 방문해 Business Manager인 Adam Rosenfeld씨로부터 JAMS의 현황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현재 JAMS는 조정위주지만 앞으로 중재분야를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 주된 사업 분야는 고용과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 조정기관들과 달리 JAMS소속 neutral들은 모두 JAMS에 전속된 상근 조정인으로, 과거 경력과 능력을 고려해 JAMS에서 스카웃을 한다고 한다. 필자는 사무실 입구부터 사무실, 회의실을 자세히 둘러보며 내부 직원들과 외부 이용자들이 편안함과 전문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된 현대식 인테리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바. LA상급법원 ADR과(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ffice of the Los Angeles Superior Court)²¹⁾

LA상급법원은 9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LA지역의 각종 하급 법원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으로, 연수자들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법원의 ADR과를 방문해 Julie Bronson 과장으로부터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ADR 서비스에 대해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법원 내 ADR과가 설치된 것은 수년전 예산 부족사

태로 재판이 계속 연기되었던 것이 주된 요인이며, 과거에는 법원 조정인 명부에 누구나 등록할 수 있었으나 작년부터 법원이 인증하는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만이 법원 조정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조정중재를 원하는 분쟁당사자들은 인터넷으로 조정인의 경력,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언어(스페인어, 한국어 등) 등 다양한 조정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III. 맺으며 : From Good to Great ADR

이상 한 달간 연수자들은 미국의 ADR 관련 세미나를 두 군데 참석하고 관련 대학과 기구를 전반적으로 다니는데 주력했고, 당초 목표한 내용(미국 ADR의 현 주소 파악) 외에도, 미국 조정전문가들의 일반적인 ADR(특히 조정)에 대한 강의나 교육내용이 실제 우리 위원회 조정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과 현지의 ADR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우정을 쌓은 것이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한다.²²⁾

연수 중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적어보자면, 먼저 좋았던 점으로 ADR전문가들이 참가해 서로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 및 세미나에 실제 등록·참석해 미국의 조정중재의 노하우 및 실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점, 관련 협회, 대학 및 정부기관을 방문해 정보를 수집한 점²³⁾,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관심을 표하는 기관도 발견한 점이다.²⁴⁾

21) <http://www.lasuperiorcourt.org/adr/UI/index.aspx>

22) 미 변호사협회 Dispute Resolution Section에 방문해서 그 쪽의 주된 업무에 대한 설명을 쫓 듣다가 'building partnership and friendship'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우리(연수자)도 그러려고 왔다고 했더니 상당히 좋아했다.

23) LA에서는 당초 SCMA(남캘리포니아 조정협회)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Robinson교수가 LA항소법원을 소개시켜줘서 법원 내 ADR과를 방문하는 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했다.

24) 대표적으로 AAA와 Pepperdine대 Straus Institute를 들 수 있다.

아쉬웠던 점은 실제 조정협회나 법원에서 열리는 조정심리 참관 기회를 못 가졌던 점²⁵⁾, 당초 방문을 계획했던 뉴욕 예시바대 ADR프로그램, ACR(Association of Conflict Resolution) 등에 일정이 맞지 않아 못 갔던 점 등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우수한 미국 ADR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끝으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먼저 국내 조정중재기구들과 교류·연대를 충분히 한 후에 미국 AAA의 경우처럼 위원회 주도 하에 조정중재 전문가 협회나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 내 ADR 전문교육과정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수준이 높으며, AAA 등 민간 협회 등이 주도가 되어 ADR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점이 연수 내내 부러웠다.

둘째, 앞으로 미국의 주요한 ADR기구 운영진을

정례적으로 초청하거나 공동 세미나를 주최하면 좋을 것 같다. 미국 측의 ADR 발전경험²⁶⁾과 우리 위원회의 언론조정 노하우가 상호 교류하는 자리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해외연수기간(1달)이 세미나 참석용으로는 길고, 본격적인 연수·학습을 하기에는 짧다고 느꼈다. 위원회 업무 역량의 핵심인 인적 자원을 개발·확충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업무출장(1주일)과 장기 연수·유학(1년)으로 기간을 나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주요 행사 및 간행물에서도 일반적인 조정중재(ADR)의 이론 및 실재를 많이 다루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미국 연수에서 얻은 새로운 안목과 경험과 지식들이 넓게는 한국의 ADR 및 우리 위원회의 발전, 좁게는 연수자들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

25) AAA와 JAMS에 사전에 부탁했지만, 노력해 봤으나 당사자들의 동의를 결국 얻지 못했다면서 참관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조정은 비공개를 강조하는데, 하루 1건이 원칙이고 한번 심리를 열면 joint session(합동 심리)과 caucus(한 당사자만 심리)를 번갈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보통 수 시간 걸리며 새벽에 종결되는 사건도 많다고 한다.

26) 필자는 종래 ADR이 중요한 법의 이념인 '정의'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미국의 ADR을 일컬어 'a fast way to economic justice'라고 언급한 한 AAA 세미나의 참석자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동 성폭행 관련 기사 안전한가

「The Spectator」는 지난 2월 자신의 두 의붓 손자를 포함해 여러 아동을 성폭행하고 그와 관련된 260여 장의 음란한 사진을 소유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한 예술 사학자에 대해 보도했다. Charlotte Metcalf 기자는 기사의 말미에 이 기사가 사건 당사자인 Pat 가족의 협조 하에 쓰여 졌으며, 가족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그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어린이 성폭행 관련 보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규정은 16세 이하의 아동과 관련된 성폭행 보도는 반드시 아동의 이름을 익명처리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원을 알릴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공표할 수 없으며,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근친상간(incest)'이라는 단어도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06년 12월 「Sunderland Echo」는 이러한 보도 준칙을 어긴 것에 대해 2천5백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피해자임이 특정된 당사자에게도 2천5백 파운드를 보상해야 했다. 신문은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처리 하였으나, 주위 사정을 고려하면 특정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를 자세히 묘사하였다는 판단을 받았다.

법률 에디터인 Mike Dodd는 기자들이 특정한 사건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조금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만약 가족 내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에 관해 기사는 독자들에게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후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

는 그냥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사가 피고의 이름이나 피해자의 나이를 적시한다면 독자들은 이것으로 사건 당사자들을 알 수 있으므로 아동과 관련된 범죄일 경우 학생, 소년, 10대 등으로 단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단순히 사건 발생일과 주소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The Spectator」는 피해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지만, 두 의붓 손자가 피해자라는 점을 적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짐작하게 했다.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16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 하에 이뤄진 보도에 한정된다.

(Press Gazette 2008년 7월 25일자)



기사 제목으로 명예훼손 마이니찌신문에 110만 엔 배상명령

마이니찌(毎日)신문의 기사와 뉴스사이트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야마다(ヤマダ)전기가 마이니찌신문사에 1,2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의 도쿄지방법원은 2008년 9월 12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 보낸 배신(配信)기사의 제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110만 엔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했다.

판결에 의하면 마이니찌신문은 2007년 3월 30일자 조간(오사카본사 발행) 등에서 야마다전기의 하청업자가 리사이클가전(家電)을 중고품판매·수출회사에 편법유통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뉴스사이트에서도 '야마다전기 : 불요(不要)가전

1,600대 편법유통'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배신했다.

재판부는 "사이트에서는 제목만을 열람하고, 뉴스의 내용을 파악하는 독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사이트의 제목 단독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제목은 편법유통의 주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독자는 통상 야마다전기가 편법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지적, 야마다전기의 신용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에 배신되는 뉴스에 대해서도 "통신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본문을 참조하지 않는다는 것도 용이하게 상정(想定)된다"고 지적,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한편 신문기사에서는 "제목과 리드부분, 본문을 읽는 것이 통상적인 읽기이므로, 기사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평가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9월 23일자) □

블로그의 통신기사 무단인용 둘러싸고 논쟁 한창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은 블로그 대국 미국에서는 요즘 뉴스 블로그에 의한 통신사 기사의 무단 인용을 둘러싸고 저작권침해 논쟁이 한창이라고 보도했다.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면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AP통신에 대해, 블로그 측은 '저작권법이 인정한 공정한 사용의 범위 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AP는 블로그에 대한 「인용지침」을 작성할 방침이나, 표현의 자유와도 관련되는 문제여서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논쟁은 미국의 약 1,500개 신문사가 가맹하고 있

는 세계 유수의 통신사인 AP에 의해 시작되었다. AP는 2008년 6월 초 인기 있는 뉴스블로그 「드래지·리포트 (ドラッジ・リポート)」에 대해, 기사의 일부를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했다.

이 블로그의 주인인 캐던헤드 (キャデンヘッド) 씨는 "AP는 우선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경계선을 명시해야만 한다"면서 삭제에 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내세워 교섭을 시작했다.

한편 많은 뉴스 블로그로부터 비판의 집중포화에 직면한 AP는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고, 인용이 가능한 범위 등을 명시한 지침을 가까운 시일 내에 작성, 블로그 측에 제시한다는 선에서 화해했다.

그런데 문제의 배경은, 아마추어 기자들이 만드는 「소셜뉴스사이트 (ソーシャルニュースサイト)」등 뉴스전문 사이트나 블로그가 크게 신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소셜뉴스사이트 열람자는 월 2,500만 명 이상이다. 정치를 테마로 하는 「데일리·코스 (デーリー・コス)」, 예능가십을 취급하는 「고커 (ゴーカー)」등의 블로그는 전문가들의 이용이 많아 세론(世論)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드래지·리포트」는 당초 클린턴 전 대통령의 화이트하우스 실습생과의 스캔들을 폭로한 유명사이트 「드래지·리포트」를 비꼬아서 풍자한 작은 블로그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9,000명이 넘는 회원을 갖고 있는 인기사이트로 성장했다.

AP는 미국의 약 1,500개 신문사가 가맹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통신사로서, 야후(yahoo) 등 인터넷용으로도 유료로 기사를 배신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적다고 보아 지금까지 기사의 인용을 묵인해 왔었다.

(신문협회보 2008년 9월 23일자) □

Murat사건 변호사, 'Pack - dog' 저널리즘 문제 지적

한 변호사가 자신의 소송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어 고통을 받게 만든 언론사의 편집인들을 초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소송 의뢰인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의 편집인들을 초대한 Louis Charalambous 변호사는 'Simons Muirhead and Burton' 법률회사 소속으로, 100여 건의 명예훼손 기사와 관련해 Murat의 변호를 맡고 있다.

Murat은 자신이 아동 유괴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주 자신에게 피해를 준 11개 타블로이드 신문들과 6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또 해당 신문사들은 손해배상금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지면에 사과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타블로이드 신문은 「The Sun」, 「News of the World」, 「The Daily Mirror」, 「The Sunday Mirror」, 「Daily Star」, 「Daily Record」, 「Daily Express」, 「Sunday Express」, 「Daily Mail」, 「Evening Standard and Metro」 등으로 주요 신문 대부분이 포함된다. 그러나 올해 초 자신들의 기사에 대해 사과기사를 실은 「The Scotsman」은 손해배상을 면제받았다.

Charalambous 변호사는 “사과와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번 사건의 끝이 아니다”면서 “이번 기사들로 인해 1천5백만 독자의 신뢰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 언론사에는 더 큰 타격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The Sun」, 「Mirror」, 「Express and Star」 등은 잘못된 기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독자

들은 신문이 내보내는 기사들을 신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신문사들의 명예훼손적 보도를 여과 없이 따라 보도하는 'Pack-dog' 저널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신의 의뢰인과 가족은 'Pack-dog' 저널리즘의 먹잇감이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의뢰인의 어린 딸은 외출할 때 코트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계된 언론사 편집인들을 초대해 함께 차를 나누면서 관련 기사와 사진들이 어떻게 Murat 가족을 고통 받게 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haralambous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결과가 있고 나서도 신문 그룹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문 관련 불만을 처리하는 영국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게 단순히 해당 언론사에 권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규제 기관인 Ofcom처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기구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의 언론사 분위기에서는 내부 변호사가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 지적을 하더라도 'Pack-dog' 저널리즘의 속성 하에서는 반영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행들은 결국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장기적으로 결코 언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Murat과 그의 가족을 8개월 동안 무료 변호했던 Max Clifford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McCanns은 한 신문사와 5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 합의를 했으며, Murat과 관련한 기사가 최근 논란이 된 McCanns의 기사보다 더욱 심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은 훨씬 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McCanns

이 「Express Newspapers」를 상대로 한 소송과 Max Mosley가 「NoW」를 상대로 한 소송보다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많은 언론사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를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잘못된 보도가 정정되어야 하는데, 언론의 회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들은 평생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8년 7월 28일자)

□

일본 신문들 실명·익명 보도 판단 엇갈려

일본 오사카(大阪)시 비디오점의 방화로 15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보도를 실명으로 하느냐, 익명(匿名)으로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일본의 각 신문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익명으로 보도한 신문사들은 비디오점이 풍속점(風俗店)이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인권, 프라이버시, 유족 감정 등을 배려해 얼굴 사진의 게재에도 신중하게 대응했다.

사건이 발생한 2008년 10월 1일 밤 경찰이 발표한 신원판명자 4명에 대해, 2일자 조간에서 아사히(朝日), 요미우리(讀賣), 교도(京都)신문은 실명으로, 마이니찌(毎日), 산케이(産經), 고오베(神戸)신문은 익명으로 각각 보도했다.

실명 보도한 신문사들은 실명을 쓴 이유에 대해 비디오점이 간이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실태를 근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아시히신문은 “방화된 비디오점이 풍속점이 아니며, 사건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호텔 대용으로 이용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곳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불명에

에 해당하는 현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오사카시나 경찰에 문의전화도 많았고, 안부 정보는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의미에서도 공익성이 높다”는 견해도 밝혔다.

피해자의 사망 상황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현저하게 불명예라고 생각될 때는 익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내보도지침을 갖고 있는 요미우리신문도 “영업형태로 보아 ‘익명을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15명이나 사망한 보기 드문 중대사건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실명표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토신문(사회보도부장)도 “갈피를 잡지 못했으나 실태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마이니찌신문과 산케이신문은 당초 이 상점에 「성인비디오극장」이라는 간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익명을 선택했으며, 산케이신문은 풍속점의 성격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마이니찌신문은 희생자나 유족이 호기심의 시선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케이는 8명의 신원이 추가로 판명된 2일자 석간부터 취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숙박목적이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익명에서 실명으로 바꾸었으며, 마이니찌는 3일자 조간부터 익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했다. 한편 교도(共同)통신의 배신(配信)은 실명이었으나 고오베신문은 유족들을 배려하여 익명으로 보도했다.

얼굴사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신중한 대응을 취했다. 전국지는 오사카본사판에서 현장에 걸린 사진이나 피해자의 자택에 걸려있는 유영(遺影)을 한 사람 정도 게재했으며, 아사히 오사카는 10일자 조간에서 희생자를 추적하는 기사에서 한 사람의 얼굴사진을 게재하는 정도였다.

(신문협회보 2008년10월14일자)

□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유학생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 옆에 동의 없이 촬영된 본인의 사진을 실어 피해를 입었다(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조○○, 이○○

피신청인 : 한국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0.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한국일보 : 『“한국말로 잡담해도 교사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1일자 A섹션 9면)

내 용 : 지난 26일 오후 6시께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한 영어학원에서 국제학교 ○○○에 다니는 8학년 여학생 3명을 만났다. (중략) 이들은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30명이 한 반인 학급에서 20명이 한국 학생들이다. 한국 학생들이 몰리면서 이 학교는 재학생이

2,000명까지 늘었고, 현재 이 가운데 45% 정도가 한국 학생들로 채워졌다. (중략) 한국 학생 입학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사립학교 사우스빌의 레미 라게라 입학담당관은 “3년 새 한국 학생들이 3배 정도 늘면서 이제는 정원의 20% 가까이 된다”며 “특히 ELS 과정 대부분은 한국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ELS는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과는 별도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4학년 김모(11)양은 “교실이 전부 한국 학생이다 보니 한국말로 잡담해도 교사가 통제를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 학생의 필리핀 행렬이 멈추지 않자 최근엔 필리핀 내 ‘이름 없는’ 사립학교까지 한국 학생 특수를 누리고 있다. (후략)

(기사와 함께 신청인들이 교실에 있는 모습이 나온 사진을 게재)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조○○ : 금 5,000,000원, 이○○ : 금 3,000,000원

결 정 문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신

청인들에게 2008년 10월 1일까지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에게 금 5,000,000원을, 이○○에게 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2008년 6월 11일자 한국일보 9면에 동남아 조기유학 열풍과 실태에 대한 심층 기획보도의 일부분으로 “한국말로 잡담해도 교사가 통제 못할 정도”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현재 말레이시아에 유학 중인 신청인들이 학교 교실에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조기유학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기사에 미성년인 신청인들의 초상을 친권자들의 동의 없이 내보내 출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청인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2008. 9. 4.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각 금 500만원(신청인 조○○)과 금 300만원(신청인 이○○)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2008서울조정267)을 하였으며, 2008. 9. 11. 위 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한 후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

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미성년인 신청인들의 친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의 초상을 촬영하고 이를 모자이크 등의 조치 없이 주변에서 식별 가능할 정도로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보도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판단컨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가 동남아 조기유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의 보도를 함에 있어 신청인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신청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해도 될 만큼의 긴급성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조기유학에 대한 부정적 취지의 보도에 통상적으로 본인의 얼굴이 직접 공개되기를 원치 아니하리라는 점, 신청인들이 공적인 존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친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게재, 배포한 것은 신청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한국 학생들이 많아 조기유학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정적 보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을 삽입한 후 하단에 ‘온통 한국 학생들’, ‘한국 학교 교실인지, 외국 학교 교실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등의 설명을 달아 놓아 이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들이 이 기사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진 보도와 같이 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의 초상권 및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보도에 관하여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는 보도를 하기 전에 미리 신청인들의 친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신청인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등 신청인들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진을 보도한 행위는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과실로 인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사진 보도의 취지와 경위 및 내용, 신청인들의 나이, 피신청인 언론사의 규모 및 사회적 위치, 피신청인이 신청인 친권자들에게 이 보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된 이 사건 사진을 즉시 삭제한 점 등 이 사건 심리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올림픽 중계때문에 건국 60주년 전야제 생중계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 병 순)

피신청인 : 동아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정정 - 조정불성립,

반론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건국 60주년 전야제 전국 생중계 공영 KBS-MBC 난색, 민영 SBS가 대신 맡아』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일자 1면)
2. 『KBS와 MBC의 ‘공영’ 거부하고 ‘언론’ 포기하기』 제하의 사설 (2008년 8월 4일자 31면)

내 용 : 1. 정부가 14일 밤 열리는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제 행사의 생중계를 KBS, MBC에 잇달아 제안했으나 두 방송사가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민영방송인 SBS가 이를 생중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14일 오후 7시 4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20분 동안 지휘자 정명훈 씨 지휘로 열리는 서울광장 공연을 비롯해 독도함 선상 연주회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전야제를 연결해 동시 생중계해야 하는 만큼 네트워크를 갖춘 KBS에 생중계를 제안했으나 KBS는 올림픽 방송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MBC에도 같은 제안을 했으나 유

사한 이유로 고사해 지역 민영방송인 SBS가 생중계를 맡게 됐다”며 “시청률도 중요하겠지만 건국 60주년 행사인 만큼 공영방송이 중계를 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올림픽 방송도 있는 데다 ‘프라임 타임’이라 편성을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4일 전야제 행사는 15일 0시 25분 전후에 녹화 중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략)

2. 14일 밤 열리는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제를 수도권 민영방송인 SBS가 생중계하기로 했다. 생중계를 맡아 달라는 정부의 제안을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KBS와 MBC는 비슷한 시간에 벌어지는 베이징 올림픽 경기를 중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댔지만,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14일 건국 60주년 전야제 전국 생중계 공영 KBS-MBC 난색, 민영 SBS가 대신 맡아”』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일자 A01면에 『“14일 건국 60주년 전야제 전국 생중계 공영 KBS-MBC 난색, 민영 SBS가 대신 맡아”』라는 제목의 기사에 KBS가 “올림픽 방송도 있는 데다 ‘프라임 타임’이라 편성을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정부의 건국 60주년 전야제 생중계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는 ‘올림픽 방송과 프라임 타임대의 편성조정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미 8월 15일 방송 예정으로 건국 60주년 전야제와 유사한 성격의 ‘대한민국 60년 경축음악회’를 3개월 이상 일관되게 준비해 오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정

부의 8월 14일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들 연속 동일한 시간대에 유사한 성격의 음악회를 생방송하게 되는 편성의 중복으로 공영방송의 역할 중 하나인 ‘다양한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주 문 : 1. 신청인의 반론청구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8년 9월 26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동아일보의 통상적인 ‘알려드립니다’의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제 목 : 건국 60주년 전야제 전국 생중계 관련 KBS 반론보도

•내 용 : 8월 2일자 1면 『공영 KBS-MBC 난색, 민영 SBS가 대신 맡아』 제하의 기사와 8월 4일자 31면 『“KBS와 MBC의 ‘公營’ 거부하고 ‘言論’ 포기하기”』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의 건국 60주년 전야제 생중계 요청을 KBS가 올림픽 경기 중계와 프라임 타임대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전야제와 유사한 내용의 '대한민국 60년 특별 기획 경축음악회'가 8월 15일 방송예정이었기에 편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요청한 전야제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보도문

동아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9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 내용 참조> □

노조 파업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공장을 중국 상하이로 옮겼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8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27명

피신청인 : 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9.

처리결과 : 정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손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1094일째 천막농성... 그동안 회사는 '거덜', 기륭전자에선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2일자 11면)

내 용 : (전략) 기륭전자는 위성라디오와 내비게이션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이다. 2004년 매출 1711억 원,

220억 원 흑자를 냈다. 그러나 노조 파업으로 인해 지난해 매출은 447억 원으로 급감했고, 269억 원 적자가 났다. 노사 분규 3년 동안 회사가 거덜 난 것이다.

그사이 대주주는 아세아시멘트에서 세 번이나 바뀌었고, 대표이사는 네 명이 바뀌었다. 노조는 회사 정문 앞 천막 농성 외에도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사무실, 집, 고향을 찾아가 데모를 했다. 지난 5월 구로역과 서울광장 철탑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이고 6월 광화문 도심에서 3보 1배 시위를 벌인 데 이어 7월에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점거 투쟁을 벌여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결국 회사 측은 지난해 10월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을 아예 중국 상하이로 옮겼다. 현재는 연구소와 영업 부문만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70여 명도 희망퇴직 형식으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 분회장은 전문 노동 운동가 출신

대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인데도 노동계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데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노조와 시민단체, 정당까지 개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륭전자 분회를 이끌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는 IMF 금융위기 당시(1997년) 부도가 났던 ○○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김 씨는 2000년 9월 1일부터 부도난 ○○전자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파산 위로금(6억 원)을 받기 위해 155일간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던 인물이다.

김 씨는 2001년 9월 '서울민주노동자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어 김 씨는 2002년 6월 기륭전자의 협력업체에 입사했다. 1000일 넘게 이어져 오던 기륭전자의 노사 분규는 지난 14일 회사 측과 노조 측이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극적인 타결 직전에 이르기도 했다. 당시 합의안은 기륭전자 측이 협력회사를 설립하고 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 10명이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생활비로 농성 중인 노조원에게 월 80만 원씩 생계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서명 당일 회사와 노조 측이 보상금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여 결렬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기륭전자 분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2일자 사회면에 『“기륭전자에선 무슨 일이, 1094일째 천막농성… 그동안 회사는 거덜”』이라는 제목으로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들의 파업, 농성으로 인하여 2007년도 매출액이 447억 원으로 급감하고 209억 원 적자가 발생하였고, 노조원의 파업으로 결국 회사 측은 지난해 10월 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을 아예 중국 상하이로 옮겼고, 분회장 김○○ 씨는 부도난 ○○전자 대표이사를 상대로 파산 위로금(6억 원)을 받기 위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던 인물이고, 8월 14일 극적인 (노사)타결직전에 이르렀으나, 서명 당일 회사와 노조 측이 보상금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여 결렬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기륭전자(주)의 적자는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들의 파업, 농성과는 상관없는 경영상 이유로 기인한 것이고, 모든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지 않고, 생산라인 중 일부는 국내에 사외 하도급 형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노조원의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긴 것도 아니며, 분회장 김○○ 씨의 투쟁 경위 또한 위로금을 받기위한 것이 아니었고, 8월 14일 노사 합의는 신설회사의 지위, 고용보장 기간, 임금, 복직·취업 대상자수, 위로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렬되었다고 하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금 5,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2] 보도문을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 혹은 사회면에 보도(토요일과 공휴일 발행 신문 제외)하되, 제목은 피신청인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정정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8월 22일자 11면 『기륭전자에선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와 관련, 기륭전자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것은 노조파업과 무관하며, 적자의 주된 이유는 노조파업이 아니라 다른 경영상의 이유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륭전자 노조는 노사합의가 결렬된 주된 이유는 보상금이 아니라 재고용 및 고용보장 기간의 문제 때문이었으며, 김○○ 분회장이 2000년 당시 부도난 ○○전자를 상대로 농성한 것은 위로금이 아니라 퇴직금,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서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에 같음하는 결정에 의한 보도문

조선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4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2 내용 참조〉 □

신청인이 국정감사에서 ‘연목구어’ 식 억지부리기 질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권 택 기

피신청인 : 매일경제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매일경제 : 『국감 물흐리는 한심한 의원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3일자 A6면)

내 용 :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함량미달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던져둔 채 정쟁만 일삼는다면 본질과 관계없는 판죽겉기로 시간을 낭비하는 악습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기본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호통만 쳐대는 ‘공부 안 하는 의원’들의 추태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 ‘연목구어’식 억지 부리기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엉뚱한 질의가 눈총을 샀다. 이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백용호 공정위원장에게 ‘비싼 카드 수수료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공정위 개입을 요구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주 업무는 금융감독기관의 소관으로 같은 당 의원들조차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라고 혀를 찼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권 의원은 다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수수료가 낮게 든다. 공정위가 앞장서서 (신용카드 사용체계를) 바꿔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질의가 이어지는 시간 내내 백 위원장은 황당하다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결국 “신용카드 정책을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정위 업무를 도대체 어디까지 늘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공정위 측과 조율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답을 금감원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해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질의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3일자 정치면(6면)에 『“국감 물흐리는 한심한 의원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권택기 위원이 ‘연목구어’ 식 억지부리기 국감을 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추가 현장취재를 해본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당일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내용과 태도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심한’ 또는

‘연목구어’ 식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의 제한된 발언 시간(질의·답변 포함 10분)으로 인해 그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웠던 점과 추가 취재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인정되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조정성립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지난 10월 13일자 『“국감 물흐리는 한심한 의원들”』 제하의 보도에서 한나라당 권택기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기관 소관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연목구어’ 식 억지 질문을 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택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에 개입할 것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감독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대형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은 카드사와 소상공인 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므로 카드 수수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영국·네덜란드 등 외국에서도 공정거래담당기관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연목구어’ 식 억지 부리기 국감을 했다는 보도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1일 A11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중 내용 참조〉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전화 취재에 응한 것만으로 자신의 초상 공표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6.자 판결(2007가단40534)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박○○(이하 원고)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방송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2006. 7. 3.과 2007. 1. 3.에 <뉴스데스크>를 통해 내보낸 자신의 신변 관련 보도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방송사는 위 두 방송을 통해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결혼정보업체 대표 유모씨와 사귀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유모씨가 차량에 불을 질러 원고가 전신화상을 입었으며, 그 이후 다시 동거를 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방송이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와 프로필 사진을 방송함으로써 당사자가 원고임이 특정되었다”고 지적한 뒤 “방송이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나간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단40534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 ○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변 론 종 결 : 2008. 3. 5.

판 결 선 고 : 2008. 3. 26.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결혼정보업체에 근무하던 여성이고,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MBC 방송국을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년경 자신이 근무하는 결혼정보업체 대표이던 유모씨와 교제 중 교제 지속여부를 두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위 유모씨가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 그로 인해 원고가 전신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유모씨가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여 2006. 6.경까지 동거해 왔으나 이후 위 유모씨의 폭행이 반복되자 위 유모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다. (1) 피고 회사는 2006. 7. 3. 21:00경에 시작하는 뉴스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를 통해 원고 관련 사건을 방송하였는데, 원고와 위 유모씨를 서울의 한 결혼정보업체 대표인 35세 유모씨와 그 회사의 직원인 동거녀 36살 박모씨라 소개하면서 위 회사 홈페이지 및 원고의 프로필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방영하였고, 위 수사기록에 첨부된 원고의 화상부위 사진들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원고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음성변조하여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방송이라 한다). 한편, 위 사건을 취재한 피고 회사 기자는 원고와 전화통화 내용을 원고의 동의 없이 녹취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방송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06. 8. 23. 피고 회사의 사건 재연 프로그램인 “현장기록 형사” 「잔인한 동거남」편을 통하여 원고 관련 사건을 방송하였는데, 원고 촬영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인터뷰 내용은 음성변조하여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방송이라 한다).

(3) 피고 회사는 2007. 1. 3. 위 뉴스데스크에서 “데이트 폭력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이성교제 중에 발생하는 폭력문제를 방송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로 이 사건 제2 방송을 위하여 원고와 인터뷰한 내용 및 원고 화상부위 촬영사진 등을 원고의 승낙 없이 삽입하

여 방송하였는데, 원고를 33세 송모씨로 소개하였고 원고의 음성변조된 인터뷰와 함께 원고가 기자에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왼쪽 팔, 다리 화상부위를 보여주는 상황을 뒷모습으로 찍은 장면과 원고의 왼쪽 팔, 다리, 허리 화상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하였고,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약 33초간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방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 3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 방송의 경우 원고가 명시적으로 방송보도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취재에 응하여 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제3 방송의 경우 원고가 방송보도에 동의한 이 사건 제2 방송의 예상가능한 통상적인 이용범위 내에 속한다.

(2) 이 사건 제1 방송의 경우 원고가 근무하는 결혼정보회사의 홈페이지 화면 방영 시간이 약 7초에 불과하고 홈페이지나 프로필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시청자로서는 특정 결혼정보회사의 홈페이지임을 인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였고, 화면속의 사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제3 방송의 경우 방송내용과 방법상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방송은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폐해 등을 시청자에 알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보도된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1)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첫째,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세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가 포함된다.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내용은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고,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학교 졸업앨범의 사진을 허락없이 결혼준개소에서 중매의뢰인 사진첩에 포함시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 등),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초상이란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신체의 일부만을 촬영하여 그 사진이 누구에 대한 사진인가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사람의 뒷모습 사진과 같이 얼굴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피촬영자의 고유한 특징, 사진에 대한 설명 등 관계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그것이 누구의 사진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피해자 특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방송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와 프로필 사진을 방영함으로써 원고를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이 사건 제1 방송을 접하고 원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3 방송은 신체의 뒷모습과 화상부위 등 신체 일부만을 촬영, 방영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2회에 걸쳐 원고 관련 보도가 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주위 사람들이 이 사건 제3 방송을 접하고 원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동의여부

(1)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으로서 본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 자체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진이 촬영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포즈를 잡은 경우에는 사진의 촬영 및 그 사진에 대한 통상의 방법에 의한 공표를 묵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3 방송을 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진 등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방송 전에 피고 회사 기자의 전화 인터뷰에 답을 하였고, 이 사건 제2 방송을 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하에 사진촬영 및 공표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방송에 원고의 사진 등이 공표되는 데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이 사건 제3 방송을 통하여 원고의 화상부위 사진 등이 공표될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법성조각 여부

(1) 사람의 초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그중에서도 보도의 자유와 관련된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초상이 방영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결국 보도를 위한 초상권의 침해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가는 그 초상권 보호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그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초상의 촬영 및 공표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위 보도목적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을 가지는 때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방송은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위 방송 목적상 원고 회사 홈페이지 및 원고의 프로필 사진을 방영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3 방송은 방영된 원고의 추상부위가 미혼 여성인 원고로서는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부끄러운 부분임에도 피고 회사가 방송을 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방송 목적상 원고의 추상부위까지 방영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구비하였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3 방송을 함으로써 이를 시청한 원고의 주위 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제1, 3 방송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제1, 3 방송이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제1, 3 방송의 방법, 방송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결 2

수차례에 걸친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론보도 요구문의 내용이 유사하다면 게재 횟수와 동일하게 반론문이 게재될 필요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2008카기296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정청래(전 국회의원, 이하 원고)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를 상대

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가 요구한 반론보도문을 기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 한

초등학교의 행사장에서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퍼부었으며, 이후 김 모 교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피고가 4차례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4건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반론보도 내용이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반론보도가 반드시 당해 기사의 게재 횟수와 동일하게 게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반론보도청구 내용 중 보도내용이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피고 언론사는 한 차례 반론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8카기2967 반론보도

신 청 인 : 정 청 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김문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변 론 종 결 : 2008. 7. 16.

판 결 선 고 : 2008. 8. 1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이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조선일보 A10면 상단부분에 별지 기재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게재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안에 위 반론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위 의무이행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1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1반론보도 요구문을, 그 반론보도 게재일 이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35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반론보도 요구문을, 그 반론보도 게재일 이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10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3반론보도 요구문을, 그 반론보도 게재일 이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10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4반론보도 요구문을 각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각 게재하라. 만일 피신청인이 위 각 반론보도 요구문을 하나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위 각 반론보도 요구문 게재의무일부터 각 이행완료일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각 3,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2008. 4. 5.자 A11면에 별지 제1기사를, 2008. 4. 7.자 A35면 사설에 별지 제2기사를, 같은 날 A10면에 별지 제3기사를, 2008. 4. 9. A10면에 별지 제4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위 각 기사들의 주요한 내용은 ‘신청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마포구 소재 서교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행사장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 학교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하고 이후 김 모 교감의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소갑 제1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위 각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초등학교 행사장에서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하거나 사과를 강요한 바 없고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위 각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반론보도 요구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 요구문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판단

가. 반론보도청구의 일반론

(1)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은 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함으로써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 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나 법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이 심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독자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및 제한에 대한 법률의 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5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상당한 이익이 없는 때, ②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④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라고 규정하면서 제16조 제3항에서는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반론보도에 준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반론보도의무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게재한 위 기사는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일선학교의 교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사과를 강요하였다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응 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의 반론보도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기사에서 신청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보도된 당사자인 ○○초등학교 교감 ○○○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신청인이 “교감이 건방지게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건방지고 거만하다”, “바지에 손 넣고 있는 것도 거만하고, 작년에도 나만 홀대하고 안 부르고 올해도 안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문 중 신청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부분, 즉 신청인이 “교감과 교장을 모두 자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 신청인이 자신을 찾아온 서교초등학교 교장에게 ‘김 교감이 직접 오지 않았으니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교감의 직접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부분, 신청인이 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바 없다는 부분, 신청인이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비를 삭감하겠다’ 또는 ‘학교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없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소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부분들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들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론보도문의 내용 및 게재횟수 등의 변경

언론중재법 제27조 제3항은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라고 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 게재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비록 피신청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반론보도내용이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반론보도가 반드시 당해 기사의 게재횟수와 동일한 횟수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는 점, 신청인이 4회에 걸쳐 게재를 요구하는 반론보도 요구문이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언론사인 피신청인의 지면편집사정을 고려할 때 유사한 반론보도문을 4회나 게재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신청인으로서의 이후 정정보도청구를 통해 다시 명예회복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기재 각 반론보도 요구문을 종합하여 별지 반론보도문과 같이 고쳐서 게재하고 그 게재횟수, 게재지면, 게재시기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

〈반론보도문〉

우리 신문은 2008. 4. 5.부터 2008. 4. 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정청래 전 국회의원(당시 통합민주당·서울 마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마포구 소재 S초등학교

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행사장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 학교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하고 이후 김 모 교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당시 김 모 교감에게 ‘교장, 교감 다 모가지를 자르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바 없고, 사과를 위해 방문한 위 학교 교장에게 ‘김 모 교감이 직접 오지 않았으니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김 모 교감의 직접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이후 위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단체를 통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비를 삭감하겠다’ 또는 ‘○○초등학교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없다”고 밝혀왔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끝.

〈별지1~4〉

제1~제4반론보도 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일본 판결1

평소 자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한 인물이라도
불륜행위를 했다고 적시한 사실에 대해서까지 공개를
용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 X주식회사
원 고 : 甲野太郎
피 고 : 주식회사 光文社
피 고 : 乙川一郎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해 별지1 기재의 사죄광고를, 피고주식회사 光文社가 발행하는 「FLASH」지에 별지2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X주식회사에 대해 1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5년 8월 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甲野太郎에 대해 3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5년 8월 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4.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를 원고들의 부

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2항, 3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사 실

제1. 당사자가 청구한 재판

1. 청구의 취지

(1) 주문 제1항과 동일한 취지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해 별지3 기재의 사죄광고를, 주식회사 일본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별지4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X주식회사에 대해 3,0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5년 8월 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甲野太郎에 대해 3,0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5년 8월 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청구의 취지(3), (4)에 대해 가집행선언

2. 청구의 취지에 대한 피고들의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 사안의 개요 등

본건은 원고들이 피고주식회사 光文社(이하「피고 光文社」로 한다)가 발행하고, 피고 乙川一郎(이하「피고 乙川」으로 한다)이 편집인을 맡고 있는 잡지「FLASH」(이하「본건잡지」로 한다)의 2005년 8월 16일호(이하「본건잡지1」로 한다) 및 동월23·30일호(이하「본건잡지2」로 하고, 본건잡지1과 합쳐서「본건잡지각호」로 한다), 그리고 본건잡지1에 관한「요미우리(讀賣)신문」및「日刊ゲンダイ」(일간현대)에 게재된 신문광고(이하「본건신문광고」로 한다)에서 원고 X주식회사(이하「원고회사」로 한다) 및 원고 甲野一郎(이하「원고 甲野」로 한다)의 명예를 훼손한 기재(記載)가 각각 있었다는 이유로 ① 피고들에 대해 명예회복조치로 별지1 기재의 사죄광고를, 피고 광문사가 발행하는 본건잡지에 별지2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고, 그리고 별지3 기재의 사죄광고를, 주식회사 일본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일본경제신문」조간에 별지4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할 것을 청구하는 동시에 ② 원고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로 피고들에 대해 연대하여 3,000만 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5년 8월 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③ 원고 甲野에 대한 3,000만 엔 및 이에 대한 본건잡지2의 발행일인 2005년 8월 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각각 청구한 사안이다.

이 유

1. 청구원인 (1), (2) 및 (4)에 관해서는, 본건잡지, 요미우리신문 조간의 발행부수 및 일간현대의 발행부수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원인 (1)은 당사자 등, (2)는 본건잡지 각호 및 본건신문광고의 반포, (4)는 본건잡지1의 표지의 기술과 본건잡지각호의 편집 및 본건신문광고의 기술에 대한 결정은 피고 乙川이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증거(갑4의 1 내지 3)에 의하면 본건잡지, 요미우리신문 주간 및 일간현대의 발행부수는 각각 41만8,053부 정도, 1,015만8,949부 정도, 168만2,000부 정도로 인정된다. 본건잡지의 실제 판매부수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봐야 할 정확한 증거는 없다.

2. 그리고 청구원인 (3) (본건기사 등의 내용의 위법성)에 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본건기사 등의 기재내용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1) 본건기사1

(가) 원고甲野에게만 관련된 부분

(ㄱ) 본건표지 및 본건기사1 중 별표1(1) 내지 (3), (5) 내지 (7)의 각 기술은, 이를 종합해서 읽으면, 원고 甲野가 丙山花子와의 혼인중에 2명의 상대와 불륜행위를 가졌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므로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ㄴ) 또한 별표1(8), (17)의 각 기술은, 이를 종합해서 읽으면 원고 甲野는 채무를 지고 있는데다가 배우자였던 丙山花子에 대한 발언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적시한 것으로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이 명백하다.

(나). 원고회사 및 원고 甲野 쌍방에 관한 부분

(ㄱ) 별표1(9) 내지 (14)의 각 기술은, 이를 종합해서 읽으면, 작크(ジャック)사가 제3자 할당(割當)증서를 발행했을 때, 원고회사가 설립한 본건투자사업조합이 원고 甲野의 권고 등에 의해 투자가로부터 거액의 금전출자를 받고, 작크사가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여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투자사업조합에 출자한 「S」를 포함한 투자자의 대반에게 금전을 분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까지 원고 甲野가 관계하여 이익을 올리지 못했던 투자안건의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S」가 출자한 2억 원을 포함하여 본건사업조합에 투자된 금전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원고회사 및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ㄴ) 별표1(15)를 읽어보면 원고 甲野가 어떤 회사의 「매수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모은 것인데, 결국 「매수펀드」가 호지브지 없어졌을 때, 투자자에게 금전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회사의 신용, 사회적 평가 및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본건기사1 중, 독점스쿠프② (별표1(10)) 이후의 기술에서는, 원고회사를 원고 甲野가 이끄는 펀드회사라고 기술하는 등 (갑1의3) 투자관계에 관한 기재에서는 원고 甲野 및 원고회사를 혼연일체인 것처럼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표1(15)의 기재는, 그 행위주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원고회사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완곡하게 원고 甲野의 행위인 동시에 원고회사의 행위라는 것도 적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ㄷ) 한편 별표1(16), (18) 및 (19)의 기술에 관해 원고들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해부분에서의 적시사실은 원고 甲野가 자신의 태생을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원고회사가 관계하는 「펀드」에 금전을 투자시키는 것이었으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는 것까지 적시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관련있는 기재 자체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본건신문광고

(가) 원고 甲野에 관한 부분

(ㄱ) 별표2의 본건신문광고는, 원고 甲野가 「白石美帆似의 애인」과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 명백한 바, 그 문장의 바로 뒤에 「또 レスクイン(레이스퀸)도…」라고 기재한 것은 「레스퀸」의 애인과도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완곡하게 적시했다고 할 수 있어,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음은 명백하다.

(ㄴ) 또 「출자자가 고발! 『甲野펀드에 2억 엔 편취 당했다』」는 기재에 대해서는, 「甲野펀드」라는 「펀드」에 출자된 2억 엔을 「甲野펀드」가 무엇인가의 방법으로 편취했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바, 본건신문광고의 전반(前半)에서는 원고 甲野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는 것, 그 명칭에 원고 甲野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반드시 정확한 법률관계에 정통하다고는 할 수 없는 본건신문광고의 일반독자에게는, 「甲野펀드」와 원고 甲野가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이라고 해도 그 구별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甲野펀드」란 원고 甲野가 주도적 내지는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펀드」 내지는 원고 甲野 본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음은 명백하

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 원고회사에 관한 부분

한편 본건신문광고의 일반독자 대다수는 반드시 원고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회사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독자에게 있어서도, 본건신문광고에는 원고회사의 명칭은 일체 사용되지 않았고, 또한 앞서 검토한 것들에 의하면 「甲野펀드」란, 본건신문광고의 일반독자는 원고 甲野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甲野펀드」를 원고회사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회사의 주장은 다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것 까지도 없이 이유가 없다.

(3) 본건기사2에 대하여

(가) 본건기사2에 포함되는 별표3(1) 내지 (5)의 각 기술은, 원고 甲野가 4000만 엔의 채무를 갖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채무에 관한 원고 甲野의 丙山花子에 대한 발언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원고 甲野의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다.

(나) 별표3(1), (6) 및 (7)의 각 기술은, 원고 甲野가 「A」라는 도내(都内)의 컬처스쿨(カルチャースクール)에 근무하는 여성과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다) 별표3(8)의 기술은, 원고 甲野가 허위의 발언(본건기사2의 다른 기재를 종합해서 읽으면 여성관계 내지 금전관계에 관한 허위발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을 거듭해 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라) 별표3(9)의 기술은,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에 의하면, 원고 甲野가 자신의 차입금채무의 변제에 丙山花子を 이용하려고 한 것을 내용으로 한 것

이며,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3. 이상과 같은 읽기를 전제로 피고가 주장하는 항변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1) 항변(1) (원고 甲野의 승낙) 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甲野가, 예능인이며 원고 甲野와의 혼인이전부터 자신의 과거사에 관해, 일반인의 감각으로는 공표를 원하지 않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공표해 온 丙山花子和 혼인했던 일, 丙山花子和 혼인을 했을 때도, 丙山花子は 원고 甲野와 알게 된 경위, 즉 프로포즈의 장소 및 연사, 일상생활 등에 관해 그 내용을 계속 공표했다.

원고 甲野 자신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丙山花子の 결혼특집으로 구성된 텔레비 프로에 얼굴은 숨겼다고는 하지만 출연했으며, 피로연의 영상, 원고 甲野 자신의 스포치 내용도 공개한 사실, 혼인 후 丙山花子は 원고 甲野와의 혼인 생활에 관해 상세히 공개했고, 이에 대해 원고 甲野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 甲野가 본건기사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이를 수인(受忍)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령 상기 피고들의 주장대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甲野가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실을 본건각잡지와 같은 소위 사진주간지(공지의 사실이다)에 공개되는 것을 승낙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혼인의 경위, 혼인생활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실과, 그 명예를 훼손하는 불륜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은,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전자의 사실 공개를 용인했다고 해서, 바로 후자의 사실 공개를 용인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증거(갑5의 1, 2)에 의하면, 원고 甲野는 丙山花子が 원고 甲野의 불륜행위를 포함한 사적사항에 관해 공개하는 것을 일정한 경우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

(2) 항변(2) (원고 甲野 및 丙山花子에 관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진실성 내지 오신(誤信)상당성의 항변)에 대하여

(가) 우선 공공성, 공익목적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 보면, 원고 甲野는 연예인이나 공무원 등과 같이 공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다, 본건기사 등의 표현내용 가운데 원고 甲野 및 丙山花子の 혼인 생활 등에 관한 부분의 기술 (전기2(1) (가)(ㄱ), 2(1)(가)(ㄴ), 2(2)(가) 및 2(3) 각항)은 모두 사적생활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애당초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항변(2)는 이유가 없다.

(나) 진실성 내지 오신상당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피고들은 春野기자가 丙山花子와 수십년동안 교제가 있는 「예능관계자」로부터 본건기사 등에 기재된 내용을 취재했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증거도 있으나(증인 春野), 당해 인물이 누구인지는 본건증거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구체적인 속성이나 丙山花子와의 관계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당해 인물의, 원고 甲野의 불륜행위 및 원고 甲野의 자기채무에 관한 丙山花子에 대한 발언 등 丙山花子の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식의 유무 내지 정도 등은 전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발언내용이 진실이라든가, 그러한 오신을 갖게 했다는데 대해 상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 피고들은 본건기사에 「A」라고 기재된 원고 甲野의 불륜행위의 상대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다고 주장하나, 증인 春野의 진술을 전제하더라도, 「A」라는 인물은 원고 甲野와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고 진술한데 불과하며, 그 진술태도에서 원고 甲野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데, 이러한 취재를 가지고 원고 甲野가 「A」와 불륜행위에 이른 것은 진실이라든가, 그러한 오신에 대해서도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丙山花子에 대한 취재에서도, 애당초 증인 春野는 丙山花子에 대해 원고 甲野와 「A」와의 불륜행위에 관해서는 들은 일도 없었으며, 레이스퀸 (レースクイーン)의 「B」와의 불륜행위에 대해서도, 丙山花子가 관련있는 적시사실에 관해 인식한 내용, 경위 등은 하등 구체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객관적인 입증도 없었고, 혼인관계의 일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륜행위 여부, 혹은 그 양태(樣態)에 대해 반드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재를 가지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든가 그 오신에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부분에 관해 그 내용이 진실이라든가, 그 오신에 상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들의 항변(2)는 이유가 없다.

(3) 항변(3) (본건투자사업조합 등에서 원고들의 투자사업에 관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진실성 내지 오신상당성의 항변)에 대하여

(가) 당해부분의 기재가 공공성을 가졌다는 것, 공익목적성을 갖고 기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면 관련부분의 기재가 진실성 내지 오신상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피고는 夏川기자가 「S」로부터 본건기사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다, 秋山으로부터 「OO투자사업유한회사의 안내(안)」, 원고회사 작성에 관련한 투자펀드예의 「조합가입신청서」의 복사, 골판지상자에 가득 찬 펀드의 계획서 등 관련서류의 실제적 확인을 한 사실, 본건기사1 중 잭코스(ジャック社)의 주식에 관해 쓰여진 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근거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이므로, 관련내용이 진실이든가 진실이라고 오신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증거도 있다 (을4, 증인夏川).

그러나 「S」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당해인물이 누구인지 본건증거상 명확하지 않으며, 그 속성이나 원고들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발언내용의 신용성을 검토할 수가 없다.

秋山에 관해서도, 해외교류촉진협회 이사 및 재단법인 전일본청소년육성회 이사 겸 사무총장을 자칭하고 있는데, 갑7의1 내지 5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秋山은 당 재판소로부터의 두 번에 걸친 소환에도 수검할만한 이유도 없이 계속 출두하지 않았고, 동인 작성의 진술서(을4)는 도저히 신용할 수 없다는 사실, 양자(兩者)로부터 취재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건기사 등에 있어서 본건투자사업조합 등에서의 원고들의 투자사업에 관한 기재가 진실이라든가, 그렇게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달리 관련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4) 이상 검토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의 항변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본건기사1은 원고들 양자에 대한 관계에서, 본건신문광고 및 본건기사2는 원고 甲野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손해 및 명예회복조치의 필요 여부

(1)(가) 원고회사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와 같이 투자사업에 관해 기재된 내용은, 투자자로부터의 금전의 편취라고 하는, 투자사업에 관계하는 회사로서 그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진실이라든가, 그렇게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본건잡지1의 발행부수가 41만8053부 정도로 적지 않다는 사실, 기타 본건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손해액은 100만 엔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원고 甲野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살펴보면, 본건기사 등의 내용 중, 丙山花子와의 관계가 기재된 내용은 사적인 영역에 관한 사항인데다가, 그 내용에 관해서도 진실성, 오신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 투자사업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은 투자자로부터의 금전의 편취라는, 투자사업에 관계하는 인간으로서 그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키는 내용인데다가, 그 내용은 진실이라든가, 그렇게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본건잡지, 요미우리신문 조간, 일간현대의 발행부수는 각각 41만8,053부 정도, 1,015만8949부 정도, 168만2,000부 정도로 어느 것도 적지 않은 부수라는 사실, 기타 본건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손해액은 본건잡지1에 대해서는 100만 엔, 본건잡지2에 대해서는 100만 엔, 요미우리신문 조간, 일간현대에 게재된 본건신문광고 각각에 대해서는 50만 엔씩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명예회복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가), (나)에서 검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정 정도 손해가 위사(慰謝)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명예회복조치로서 본건잡지에 별지1 내용의 사죄광고를 별지2의 조건으로 게재토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나, 별지3 기재의 사죄광고를 「일본경제신문」에 게재하는 것까지 명할 필요는 없다.

5. 결론

이상에 의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들에게 원고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100만 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후일인 2005년 8월 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원고 甲野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300만 엔 및 이에

대한 본건 잡지2의 발매일인 2005년 8월 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명예회복조치로서 피고들에 대해 별지1 기재의 사죄광고를, 본건잡지에 별지2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할 것을 각각 청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며, 다른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4 <생략>, 별표1~3 <생략>

출 처 : 『판례타임즈』 1275호 PP. 223~230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일본 판결2

잡지에 게재된 코멘트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여, 코멘트를 한 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

본소원고(반소피고) : 오리콘주식회사

본소피고(반소원고) : 甲野太郎

손해배상 등 청구, 반소(손해배상) 청구사건

도쿄지법 2006(7) 25832호 · 동19(7) 2665호

2008. 4. 22. 민12부 판결, 본소 일부인용 · 일부기각

반소(反訴)기각 (항소)

주 문

1. 본소피고(반소원고)는 본소원고(반소피고)에 대해 100만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3월 1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본소원고(반소피고)의 다른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공히 이를 6등분하여 그 5를 본소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그 나머지를 본소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당사자가 청구한 재판

1. 본소사건

(1) 청구의 취지

(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한다)는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한다) 에 대해 5,0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3월 1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별지 2의 1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별지 2의 2 기재의 요령에 의해 주식회사 인포번(インフォバン) 발행의 잡지 사이조오(サイゾ-)에 1회 게재하라.

(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 상기 (가)에 대해 가집행선언

(2)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반소(反訴)사건

(1) 청구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해 1,1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11월 17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해 원고의 홈페이지인 「oricon STYLE」(<http://www.oricon.co.jp/>) (이하「원고 홈페이지1」로 한다)에 게재된 별지 3의 (1) 내지 (3) 기재의 각 기사를 모두 삭제하라.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별지4의1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별지 4의 2(1) 기재의 요령에 의해 원고의 홈페이지인 「oricon」(<http://www.oricon.jp/>) (이하「원고 홈페이지2」로 한다) 및 원고홈페이지1에 각각 1개월간 게재하라.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별지 4의 1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별지 4의 2(2) 기재의 요령에 의해 원고발행의 잡지 「ORIGINAL CONFIDENCE」에 1회 게재하라.

(마)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바) 가집행선언

(2)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 당사자의 주장 등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음악시장조사 등을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독자적인 조사로 음악 히트차트(ヒットチャート)를 수시로 발표하고 있으며, 피고는 포퓰러(ポピュラー) 음악 등의 분야에서 평론활동을 하는 저널리스트이다.

2. 본소사건은 주식회사 인포번 발행의 월간지 「사이조오」 2006년 4월호 (이하 「본건잡지 사이조오」로 한다)에 게재된 『자니즈(ジャニーズ)는 초VIP대우?! 사무소와 오리콘의 밀월관계』라는 제하의 기사 (이하 「본건기사 (사이조오)」로 한다) 중에, 별지 5의 1 기재의 피고의 코멘트가 게재되었다.

그런데 그 피고의 코멘트 가운데 별지 5의 2 기재의 각 코멘트 (이하 일괄하는 경우에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로 한다)가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5,000만 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6년 3월 1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과 사죄광고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애당초 피고가 「본건기사 (사이조오)」에 관한 취재에 응했다는 것과 「본건코멘트 (사이조오)」가 「본건기사 (사이조오)」에 게재되어 그것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것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항변으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적시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피고에게 있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다투게 된 사안이다.

더구나 원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의한 명예 및 신용훼손 (이하 「명예훼손」으로 한다) 외에도 주식회사 아사히신문사 발행의 주간지 「AERA」 2003

년 2월 3일호 (이하 「본건잡지 AERA」로 한다)에 게재된 별지 6의 1 기재의 피고집필과 관련있는 「오리콘(オリコン) 독점 사라진 후 차트는 어떻게 읽나?」 제하의 기사 중 별지 6의 2 기재의 각 문장 (이하 일괄할 경우에는 「본건문장 (AERA)」로 한다.) 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3. 반소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본건본소가 피고의 언론을 억압할 목적으로 나온 현저히 상당성이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홈페이지1에 게재된 별지 3의 1(1) 내지 (3)기재의 각 기사 중 별지 3의 2 기재의 각 문장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상기 위법제소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1,100만 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6년 11월 17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하고 또한 상기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별지 3의 1(1) 내지 (3)기재의 각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한편 상기 위법제소의 불법행위 및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사죄광고를 청구한 사안이다.

제3. 당 법원의 판단

1. 본소사건에 대하여

(1) 청구원인(가)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의한 명예훼손)의 (ㄱ) (「본건잡지 (사이조오)」의 발행 및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의 게재), 청구원인(나)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의 (ㄱ) (「본건잡지 (AERA)」의 발행 및 「본건문장 (AERA)」의 게재)는 모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와 「본건문장 (AERA)」의 관계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의한 명예훼손 (청구원인(가)) 과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 (청구원인(나)) 은 일련(一連) 또는 단일의 불법행위로 동일한 소송물을 구성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애당초 「본건코멘트 (사이조오)」는 인포변 발행의 「본건잡지 (사이조오)」에 게재된 것으로, 「본건문장 (AERA)」이 게재된 아사히신문사 발행의 「본건잡지 (AERA)」와는 매체를 달리하고 있다. 더욱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의한 명예훼손은 2006년 3월에 있는데 반해,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은 2003년 1월에 일어나, 그 시기에 3년여의 간격이 있다. 또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의한 명예훼손은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관한 취재에 응한다는 양태(樣態)로 이루어진데 반해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고 스스로가 기사를 집필하는 양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행위양태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그 표현내용을 보더라도,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는 공예약 문제, 통계수법의 공개성 문제에 관한 지적이 있는데 반해, 「본건문장 (AERA)」에는 그런 취지의 지적이 없는가 하면, 「본건문장 (AERA)」에는 레코드회사가 원고발행의 잡지에 광고를 냈다거나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에서 CD를 대량구입하는 문제 등에 관한 지적이 있는 반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와 「본건문장 (AERA)」는 그 표현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와 「본건문장 (AERA)」는 원고의 음악히트차트의 신용성에 의심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는 궤(軌)를 같이 하나, 그 이외의 점에서는 공통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잡지에 게재된 복수의 기사가 동일인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잡지 및 그 게재시기가 다르면, 그 기사에 의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별개로 발생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와 「본건문장 (AERA)」는 그 내용과 양태도 다르므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와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련 또는 단일의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양자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원고는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독립된 소송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해 검토한다.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3) 사회적 평가의 저하에 대하여

(가)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에 대하여

(ㄱ)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읽기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은, 「오리콘(オリコン)」은 예약매수도 카운트에 넣고 있다. 예약만을 넣어 두었다가 후에 해약하는 공예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 원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은 「공예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공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를 기준으로 할 때,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은 공예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단정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한데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한편 피고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논평이라고 주장하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증거 등을 가지고 그 존재여부의 결정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논평은 아니고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도 채용할 수가 없다.

(ㄴ)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유무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을 읽었을 경우, 독자는 원고의 음악 히트 차트의 매상매수에는 예약만 넣어놓고 후에 해약하는 공예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통계학적인 정확성, 신용성이 낮다는 인상을 받는다.

따라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은 「본건기사 (사이조오)」의 다른 부분과는 관계없이 그것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나)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에 대하여

(ㄱ)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읽기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는 「오리콘의 숫자는 레코드회사에 의해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원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는 「오리콘의 숫자는 오리콘 자신 또는 레코드회사에 의해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를 기준으로 하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는 레코드회사원의 말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레코드회사에 의한 조작에 관해 기술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는 「조작가능」이라는 가능성을 기술한데 불과하므로 논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를 기준으로 하면 「조작가능」이란 것은 어떠한 가능성을 기술한 것이 아니고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술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도 채용할 수가 없다.

또 피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는 「레코드회사원이 「오리콘의 숫자는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자는, 레코드회사원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레코드회사원이 말한 내용 그 자체, 즉 「오리콘의 숫자는 어느 정

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식한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도 채용할 수 없다.

(ㄴ)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유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를 읽었을 경우 독자는 원고의 음악히트차트는 레코드회사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신용성이 낮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므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는 「본건기사 (사이조오)」의 다른 부분과는 관계없이 그것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다)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에 대하여

(ㄱ)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의 읽기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는, 「오리콘은 불가사의한 단체」라는 논평,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에 관해〈오리콘의 독자적인 통계수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한 사실,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한 사실, 「보통의 통계조사는 그 수법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할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공개된 데이터는 통계학적인 신용도가 낮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논평을 각각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원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은 「오리콘이 발표하고 있는 음악히트차트 분야에서, 보통의 통계조사는 그 수법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게끔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 및 「오리콘, “오리콘 독자의 통계수법이 다”라고 주장. 당해업계에서 같은 취지의 차트를 공개하고 있는 타사 (즉 사운드스캔=サウンドスキャン)와 비교하면서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는 불가사의한 단체」라는 사실을 각각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실적시라고 주장하는 상기 문장 중, 「보통의 통계조사는 그 수법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할 여지가 없음을 강조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부분 및 「오리콘은 불가사의한 단체」라는 부분은 모두 증거 등에 의한 증명이 어려운 비평이나 논의에 해당하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논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적시 부분은 「당해 업계에서 같은 취지의 차트를 공개하고 있는 타사 (즉 사운드스캔)와 비교하여」 기술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는 이러한 동업타사와의 비교의 취지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의 전제인 「일본에는 오랫동안 오리콘 외에 히트차트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계학적 정확도가 과대평가 되기 쉽다」는 코멘트 부분을 종합해서 읽으면, 이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독자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한 전제코멘트를 읽는 것 만으로는 원고 이외의 음악히트차트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없을 것이며, 하물며 그것이 사운드스캔일 것이라는 인식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즉 일반독자는 이와 같은 동업타사와의 비교 취지를 읽어낼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는, 「오리콘이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는 논평을 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증거 등을 가지고 그 존재여부를 밝힐 수 있는 사항으로, 논평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주장도 채용할 수가 없다.

(ㄴ)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유무

a. 우선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중 「오리콘은 불가사의한 단체」라는 논평 및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에 관해〈오리콘의 독자적인 통계수법〉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b. 한편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및 「보통의 통계조사는 그 수법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할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공개된 데이터는 통계학적인 신용도가 낮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논평은, 전자의 적시사실을 전제로 하여 후자의 논평을 한 것이므로, 일반독자는 원고의 음악 히트차트는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신용성이 낮다는 인상을 받는다. 따라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의 상기 부분은 「본건기사 (사이조오)」의 다른 부분과는 관계없이 그것만으로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4) 피고가 취재에 응한 사실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잡지기사의 편집권은, 당해잡지의 출판사에 있으며, 출판사는 그의 책임과 권한하에 갖가지 취재를 한 후 취사선택하여 기사내용을 구성, 이를 게재한다. 또한 불특정다수의 독자에게 배포되는 잡지의 출판사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특정정보원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정확성의 확보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판사로부터의 취재에 응한 자는, 출판사가 독자적인 입증취재나 편집작업을 한 후 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통상이며, 자기의 코멘트 내용이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되는 것을 예견하지 않는 것이 또한 통상이다. 그러므로 출판사로부터의 취재에 응한 자의 코멘트 내용이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가 취재에 응한 사실과 그 코멘트 내용이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되어 그것으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과의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출판사로부터의 취재에 응한 자가, 자기의 코멘트 내용이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한 경우, 또는 자기의 코멘트 내용이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굳이 당해출판사에 대해 코멘트를 제공한 경우는, 그 자가 출판사로부터의 취재에 응한 사실과 그 코멘트 내용이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되어, 그것에 의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과의 사이에는 예외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이를 본건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는 본건본소 제기 전인 2006년 6월 30일 원고의 대리인 변호사로부터의 통지서(甲4의1)에 대해 「2006년 3월 6일 甲野는 〈사이조오〉 편집부의 甲田夏夫로부터 전화로 코멘트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甲野가 전화로 甲田씨의 질문에 답하고, 甲田씨가 甲野의 발언을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코멘트 부분은 메일로 甲野에게 다시 보낸 뒤 수정·편집이 가해지고 약간의 의견교환을 한 후 게재하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라고 FAX문서로 회답하고 있다(甲5). 이 FAX문서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기사 (사이조오)」의 편집자가 작성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의 원안에 직접 수정 및 편집을 한 후 편집자와의 사이에 약간의 의견교환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의 코멘트인 「본건코멘트 (사이조오)」가 그대로의 형태로 「본건기사 (사이조오)」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취재에 응한 사실과 「본건코멘트 (사이조오)」가 「본건기사 (사이조오)」에 게재되어 그것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이 점에 관해 피고는, 상기 FAX 문서에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나 이를 채용할 수가 없다.

(5) 진실성, 오신상당성, 공정한 논평의 항변에 대하여

(가)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에 대하여

항변(가)(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진실성, 오신상당성에 대하여

(ㄱ)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 (「오리콘은 예약매수도 카운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약에만 포함시켰다가 뒤에 해약하는 공예약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항변(나)(ㄱ)a 내지 f의 근거를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어느것도 그것에 의해서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a. 대형 레코드회사 사원에 대한 취재 결과

피고 본인은 복수의 대형 레코드회사 직원들이 피고의 취재에 대해, 원고의 음악 히트차트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에서의 CD의 공예약을 넣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어느 협력점에서 어느 CD에 대해 공예약을 넣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레코드회사 직원들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상기 대형레코드회사 직원들에 대한 취재결과는, 그러한 취재결과의 존재여부와는 관계없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b. 乙山에 대한 취재 결과

피고 본인은, 당시 원고의 광고기획부에 소속된 乙山이, 피고의 취재에 응했을 때 원고의 음악 히트차트의 매상매수에 대해 ‘예약도 카운트에 들어갑니다’라고 진술했으며, 乙2의 1, 2, 乙4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진술면에서 일관성이 없고, 또한 乙山이 ‘예약도 카운트에 들어간다’고 진술했다면, 그 후에 질문사항을 기재한 FAX 문서를 원고에게 송부할 때에는, 그 점에 관한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FAX 문서(을13)에는 그러한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예약도 카운트에 들어간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c. 에스·아이·비 (エス・アイ・ビ-)사에 대한 취재 결과

피고본인은, 사운드스캔을 운영하는 에스·아이·비사의 담당자가 피고의 취재에 대해 구체적인 악곡명,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사운드스캔의 추정매상매수와 원고의 추정매상매수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원고의 추정매상매수에는 예약매수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乙12의 1, 2에도 이에 따른 기재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에스·아이·비사의 일방적인 비판의 언사를 가지고 그것을 바로 진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에스·아이·비사에 대한 취재결과는, 그 존재여부와는 관계없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d. 丙川에 대한 취재 결과

피고 본인은, 당시 원고의 홍보기획부장인 丙川이 피고의 취재에 응했을 때, 피고의 질문에 부정할 것은 명확하게 부정하면서도 원고의 매상매수에 예약매수가 들어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본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丙川은 원고의 매상매수에 예약매수가 들어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丙川에 대한 취재결과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e. 피고소송대리인에 의한 조사결과

乙6 및 7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본소가 제기된 후에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 5점 (A점 내지 E점)의 점장에게 청취조사를 했으며, 이 조사보고서에는 그 중 2점 (B점 및 E점)의 점장이 예약매수를 매상매수에 넣어 원고에게 매상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기재가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乙6 및 7의 청취조사보고서는, 본건본소의

제기 후에 피고소송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신용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으며, 애당초 조사대상인 A점 내지 E점이 원고의 매상 조사협력점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 이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기술내용 생략) 그 청취조사의 결과 자체도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f. 丁原에 의한 취재결과

乙8 (저널리스트 丁原가 작성한 진술서) 에는,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의 전 종업원이 丁原의 취재에 대해,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이 예약매수를 매상매수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매상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乙8에는 丁原이 취재했다는 전 종업원이, 어느 매상조사협력점에서, 어느 CD에 대해 예약매수를 매상매수에 포함시켜 매상보고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그 전 종업원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 乙8에 의하면, 그 전 종업원은 1988년경의 종업원으로, 당시는 POS데이터조차 보급되지 않은 시기로 추측되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발표가 있었던 2006년 3월 당시의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기 丁原에 의한 취재결과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a, c 및 d의 취재결과는, 상기의 설시와 같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로서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 취재방법도 피고 자신이 그 부정확성을 자인하는 전화취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취재시기도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발표시부터 3년 이상 더 이전으로 상당히 오래전이었다. 따라서 피고가 상기 a 내지 d의 취재결과에 근거하여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적시사실 (「오리콘의 숫자는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a. 우선 상기 적시사실은, 단순히 원리적으로, 「매상매수의 숫자는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오리콘의 숫자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하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각 근거에 대하여 검토한다.

b. 우선, 항변(나)(ㄴ)a (대형레코드회사 사원에 대한 취재결과), 항변(나)(ㄴ)b (피고소송대리인에 의한 조사결과) 및 항변(나)(ㄴ)c (丁原에 의한 취재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기 설시와 같다.

또한 항변(나)(ㄴ)d의 乙16 (웹사이트상의 기사 복사) 에는, 레코드회사의 전 사장(戊田)이 원고의 음악 히트차트의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레코드회사가 레코드 등의 대량구입을 했다고 말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그 戊田의 말에는 매상조사협력점, 레코드 등의 대량구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다, 애당초 戊田이 대량구입했다는 시기는 1970~80년대이며, 또한 레코드회사가 원고의 음악 히트차트의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레코드 등의 대량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이 어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乙山의 증언도 단순한 풍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상과 같이 피고가 제시하는 상기 각 근거는 모두가 박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적시사실 (「오리콘의 숫자는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 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c. 또한 피고는 상기 a의 취재결과 (대형레코드회사 사원에 대한 취재결과) 에 근거하여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취재결과는 상기 설시와 같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로는 불충분하며, 또한 그 취재시기도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발표시로부터 3년 이상이나 이전이어서 상당한 과거이다. 따라서 피고가 상기 a의 취재결과 (대형레코드회사 사원에 대한 취재결과) 에 근거하여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ㄷ)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의 적시사실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에 대하여

甲8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 (「ORIGINAL CONFIDENCE」·2003년 7월 7일호) 지상에 「조사협력점 일람」, 「POS테일리데이터 & FAX 데이터 제공점」, 「오리콘차트는 하기 SHOP의 데이터 제공에 근거하여 집계되고 있습니다」라는 기재아래,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의 명칭 (단 전부는 아니다.) 및 합계수를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의 적시사실 중 원고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는 부분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공정한 논평에 대하여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중, 「보통의 통계조사는 그 수법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되는 데이터는 통계학적인 신용도가 낮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부분은, 그 전제사실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과 더불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키는 논평에 해당하는 바, 상기 전제사실은 상기 설시와 같이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에게 있어서는 상기 전제사실을 진실로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입증도 없다. 따라서 상기 논평은 공정한 논평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손해에 대하여

「본건잡지 (사이조오)」는 전국적으로 배포되어 다수의 독자를 갖는 월간지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 또한 원고가 전개하는 사업은 음악 히트차트에 관련된 것이 그 중핵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록상 살필 수 없고, 원고 자신도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명예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명예훼손에 의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100만 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7) 사죄광고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상기의 설시와 같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가 원고의 음악 히트차트 관련사업에 현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록상으로는 살필 수 없으며, 또한 원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원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대한 반론을 올려 자신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상기의 금전적 배상에 더해 사죄광고를 명할 필요는 인정될 수 없다.

2. 반소(反訴)사건에 대하여

(1) 위법제소에 대하여

(가) 원고가 「본건잡지 (사이조오)」의 발행자나 「본건기사 (사이조오)」의 편집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가지고, 본소의 제기를 위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소송에서는 손해액이 비교적 고액으로 설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원고가

5,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본소의 제기를 위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더욱이 본건사건에 있어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본건코멘트 (사이조오)」는 원고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제기는 이를 위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또한 원고가 사전교섭이나 대항언론을 하지 않고 본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본소의 제기를 위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마) 그러므로 위법제소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피고의 각 청구는 손해액이나 사죄광고의 가부 등의 문제를 검토할 것 까지도 없이 이유가 없다.

(2) 명예훼손에 대하여

(가) 본건문장(원고HP)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명백한 사실오인에 근거하여 저널리즘의 이름 아래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통계수법으로 근거없는 중상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乙5의 1 내지 3에 의하면, 상기의 적시사실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말이 나지 않았다는 전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했기 때문에, 일반독자는 그 적시사실이 어디까지나 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문장(원고HP)은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러므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피고의 각 청구는 기사 삭제의 필요 여부나 사죄광고의 필요 여부 등의 문제를 검토할 것 까지도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어

이상과 같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1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3월 1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의 지불 한도에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다른 나머지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전부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64조 본문, 61조를, 가집행의 선언에 관해서는 동법 259조 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다음의 별지(別紙) 기록은 모두 생략한다.>

▲별지1의1 원고소송대리인 목록 ▲별지1의2 피고소송대리인 목록 ▲별지2의1 사죄광고 ▲별지2의2 사죄광고 게재조건 ▲별지3의1(1)~(3) ▲별지3의2 ▲별지4의1 사죄광고 ▲별지4의2 ▲별지5의1, 2 ▲별지6의1, 2.

출 처 : 『판례시보』 2010호 PP. 78~92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영국사례

**자살 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모방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Workshop 지역의 Entwistle 부부는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 Workshop 「Guardian」이 내부 실천 규범 중 제4조(괴롭힘)와 제5조(슬픔이나 충격에 대한 침해)를 위반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들은 「Guardian」이 사적 공간에 있는 Entwistle 부인을 촬영함으로써 제3조(사생활)와 제10조(도청과 속임)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아들인 Neil Entwistle 씨는 그의 어린 딸과 아내 Rachel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 후 Entwistle 부인의 공식 진술에 대해 「Guardian」은 적대적인 (독자의) 편지를 여러 편 실었으며, 이는 실천 규범에 위반됨은 물론 부부의 슬픔을 무시한 것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Entwistle 부인은 “내 아들은 결백하며, 머느리인 Rachel이 우리 손자를 죽이고 자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기에 우리 부부는 망연자실해 있다. 나는 Rachel이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우리 아들은 부인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감옥에 가야한다”고 진술했다.

신청인은 「Guardian」이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독자의 편지를 실은 것은 자신들을 위협하여 진술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또한 기자가 세 번에 걸쳐 그들의 집을 방문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Entwistle 씨의 답변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기자들은 판결이 나던 날 Entwistle 부인이 근무하는 학

교로 찾아가 학부모와 학생들을 몰아세웠으며, Entwistle 부인이 학교에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것은 실천 규범 제3조와 제10조 위반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Guardian」은 이에 대해 Entwistle 부인의 진술 후 받았던 독자의 편지 중 대표적인 것을 실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기자는 신청인을 두 번 방문했으나 두 번 다 재판 전이었고 이러한 방문 후 신청인이 「Guardian」에 자신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 「Guardian」은 Bassetlaw 지역 의회가 필요한 회의 참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이유로 Entwistle 씨의 의원 자격 박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그에게 한 번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Guardian」은 기자 한 명이 학교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들으려고 시도는 했지만 학부모나 학생을 몰아세운 적은 없으며 Entwistle 부인의 사진은 20-25야드 떨어진 거리의 차 안에서 찍은 것으로, 그 당시 신청인은 정문 가까운 도로에 서있었다고 설

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은 비록 그들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기사와 관련된 인물이며, 신문은 사건의 다양한 시각을 보도할 자격이 있고 Entwistle 부인의 진술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아들이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위원회는 언론사가 이 진술을 기사화하기로 한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기사화하는 것 또한 규범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제4조는 기자의 물리적 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적대적인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4조에 관해서 위원회는 「Guardian」이 실친 규범을 준수하면서 신청인에게 접근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재판 전 기자가 신청인의 집에서 그들을 취재하려 했지만 위협적으로 대했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기자가 직접 Entwistle 부인의 학교에 갔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때 다른 사람들을 취재하려 했던 것은 위원회에 대한 불만 제기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이 7월 7일 「Guardian」에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Entwistle 씨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 규범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Entwistle 씨의 지역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활동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형식을 갖춰 이메일을 한 장 보냈을 뿐이라는 점에서도. 위원회는 뉴스와 관련된 사람이 취재를 한 번 거부했다고 해서 기자가 다시는 그들에게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규범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취재 접근이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공익이나 사건의 진행 정도에 달려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 Entwistle 씨에게 추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합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한편 동의 없이 사적인 장소에서 개인의 사진을 찍는 것을 금하는 제3조와 관련, 위원회는

Entwistle 부인을 촬영한 것은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곳에서 공사 구역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례에서는 사진이 찍혔을 당시 민원인이 학교 구역에 있었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민원인이 사진이 찍혔을 때 길거리로부터 가시적이며 구별이 가능한 곳에 있었느냐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원인이 공공 도로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위원회는 사생활의 합리적 기대가 있는 곳에 민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제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부부를 괴롭힌 결과로 찍은 것이 아니며, 기자가 차에 남아서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 역시 곧 제10조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결정했다. □

호주사례 1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은 인정할 수 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Camden Advertiser」에 대해 제기한 Andrew Wannet 씨의 불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Camden Advertiser」가 Camden 지역에 무슬림 학교를 세울 계획이 있었

고 이에 대해 지역 의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사실에 기반했음을 주목했다.

Wannet 씨는 무슬림 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Camden / Macarthur 주민 모임의 회원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의회 결정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공정하게 보도되지 못했고, 의회의 결정에 대한 청원 관련 기사에서 통계적인 오류가 있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2007년 10월 Quranic Society가 학교 설립을 신청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논란이 된 끝에 지역 의회가 소집됐다. 3천 건이 넘는 청원이 의회에 접수됐고, 탄원서는 물론 연방과 주 정치인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됐다. 「Camden Advertiser」를 비롯한 지역 언론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이에 관해 많은 기사를 썼다.

Wannet 씨는 2008년 2월 6일 1면에 실린, 의회의 결정에 대한 ‘무슬림의 반응’이라는 기사가 학교 설립 제안에 대한 공익을 대변하는 Quranic Society의 시각은 다뤘음에도 자신이 속한 모임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으며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신문사는 Wannet 씨와 그가 속한 모임의 의견을 포함, 많은 독자의 편지를 이미 다뤘고, Wannet 씨는 신문사 블로그에 여러 이름으로 댓글을 단 적이 있으며, 가명으로 신문사에 독자의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신문사는 무엇이 보도될 가치가 있나 판단하는 것은 편집장의 권한이며 신문사가 받은 모든 편지나 의견을 일일이 보도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의회의 결정 후인 5월 28일, 6월 4일자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Wannet 씨는 대다수의 청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를 설립하는 데 반대했다는 ‘분노’라는 제목의 5월 28일자 기사를 문제 삼았다. 6월 4일자 ‘세계는 우리가 인종주의자라고 생각 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Camden 주민들에 대해 무슬림을 반기지 않는 ‘인종주의자’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 기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의 독자의 편지가 6월 4일자에 보도됐다. 독자 편지가 문제 삼은 내용은 ‘기사에서 인용된 내용이 청원의 99 퍼센트를 대표 한다’, ‘몇 몇 계획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지만, 대다수는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 설립을 반대했다’고 보도한 것이었다.

Wannet 씨는 청원한 다수는 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반대한 것이며, 이는 지역 의회 공무원들의

요약본에도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문평의회는 Camden 의회 공무원들이 청원의 반대 이유를 종교, 계획 내용,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판단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했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dvertiser」는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몇 몇 두드러지는 여론을 선택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여러 논란의 목소리를 하나의 주제로만 한정시켰다고 비난받을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도 ‘99 퍼센트’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문평의회는 과장된 한 번의 표현 때문에 논란에 대한 보도가 전반적으로 불공정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신문사가 매우 논란이 심했던 주제에 관해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

호주사례 2

언론은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를 알릴 의무와 그 문제를 사진과 함께 설명할 권리를 갖는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Queensland Country Life」의 5월 1일자 기사에 대한 호주육우협회 (ABA) 회원

John Carter 씨의 불만제기를 받아 들었다.

문제된 기사는 ABA가 호주경

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식료품 가격에 대한 조사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ABA는 의견서는 ‘호주 소비자가 미국 소비자에 비해 슈퍼마켓에서 소고기를 살 때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미국 농무부 출처의 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기사는 ‘명목 수치는 미 농림부 수치가 믿을만하고 관련된 자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슈퍼마켓 환경에 대한 간단한 조사 내용에서조차 미국 측 수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의 몇몇 슈퍼마켓 가격에 대한 인터넷 조사 결과와 호주 전역 1백여 곳의 소고기 아울렛에서 조사한 소매 가격도 함께 보도했다.

기사는 또 ABA의 의견서에 대한 반응도 함께 다루면서, ACCC의 위원장인 Graham Samuel 씨가 ABA가 슈퍼마켓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적절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Carter 씨는 조사 기간 중 Samuel 위원장의 발언을 비난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논박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Carter 씨의 조직이 미국과 호주 소고기 판매업자들의 세전 총 수익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신문사나 신청인 양쪽 모두 Samuel 위원장의 발언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신문사는 인터넷에서 인용한 통계 자료가 적절하며, 다른 자료는 호주 축산업 조사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Carter 씨는 기사에서 소고기 생산자인 David Byard 씨를 ABA의 이사로 소개하며 그의 발언을 인용했으나, 실제 그는 ABA의 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신문사가 이 부분을 정정하긴 했지만, 신청인은 Byard 씨의 발언을 기사에 담은 것은 ABA를 부정적으로

로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언론사가 논란이 있는 통계를 보도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통계의 출처를 확실히 밝혀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는 신문사가 ABA를 비판함에 있어 최소한의 적절한 통계적 분석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 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인다고 최종 결정했다. □

뉴질랜드 사례

관련정보가 공공의 영역에 속할 경우,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좀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Wai-mea Weekly」가 2008년 7월 2일 보도한 기사에 대해 Penny Griffith 씨가 제기한 불만을 기각했다.

Penny Griffith 씨는 Richmond 지역 공연 예술 센터를 위한 Tasman 지역 의회의 기금 조성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센터 계획은 세기의 협상’이라는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기사는 그녀를 ‘테러리스트 무리’ 중 하나로 묘사했다.

기사는 센터의 설립 주체인

Grace 교회가 기금 조성 철회 요청을 한 것은 프로젝트에 대해 소규모 납세자 그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실망한 프로젝트의 찬성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회의 참여가 불발된 것은 “기회를 잃은 것이며 ‘테러리스트 무리’에 의해 이는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Griffith 씨는 사실과 의견 그리고 진술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는 신문평의회 제6원칙을 기사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가 기금 조성을 반대

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기사에서 인용된 것들은 출처가 없다고 말했다. Richard Kempthorne 시장이 했다는 진술은 ‘약 여섯 명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Nelson Mail」에 투고했으며, 반대자들은 Richmond 지역 포럼과 의회 회의 등을 포함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지출을 문제삼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교회가 기금 조성 요구를 철회하도록 한 것이 그 사람들이라는 암시를 준다.

Griffith 씨는 기사가 밝혀지지 않은 출처를 인용, ‘한 무리의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밀어붙인 데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을 천박하게 일컫는 기사를 지역 신문이 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사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비판 하면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강화된 국제 안보 속에서 그러한 용어는 불필요한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Griffith 씨는 그가 기금 조성 제안에 반대하는 주요 투고자, 발언자, 혹은 공식 청원자 중 하나로 쉽게 밝혀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또 그를 묘사하면서 ‘테러리스트’라는 용어를 쓴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며, 품위가 떨어지고, 잠재적으로 자신의 안전 상태와 자유롭게 여행할 능력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서 그러한 발언을 철회할 것과 1면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편지는 2008년 7월 16일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별 다른 언급 없이 신문에 실렸다. 7월 9일 한 차례 더 사과를 요구했으나 다른 반응이 없자, 그는 그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불만을 제기했다.

신문사의 편집자는 두 가지 불만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신문사가 테러리스트라는 발언과 관련해 Griffith 씨의 이름을 함께 엮어 실지 않았으며, 또한 그와 다른 민원인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어떤 힌트도 제공하지 않았고 반박했다. 테러리스트 언급은 논란이 된 양측에서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 있는 후 ‘상황에 깊이 연루되어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 거론된 의미라고 해명했다. 편집자는 Grace 교회가 의회에 대한 기금 조성 요구를 철회한 이유는 “심한 부정과 협박” 때문이라며,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느낀 절망감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찬반 양측은 기사가 발행되기 전 각각 의견

을 개진할 기회를 얻었으며, 반대측에서는 단지 한 사람만이 취재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양측에서 격렬한 논의와 감정이 촉발된 지역의 문제다. 양측은 교회가 기금 조성 신청을 철회한 것이 Tasman 지역 의회의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때문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지역 신문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다룰 의무를 가진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는 왜 교회가 기금 조성 요구를 철회했는가 하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신문사가 소위 ‘패배자’의 반응을 취재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한 무리의 테러리스트”는 실망했던 기금 조성 찬성자 중 익명의 한 사람이 발언한 것이다.

기사는 “한 무리의 테러리스트”가 누구인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편집자 칼럼에 대한 편지나 뉴스 기사를 계속 읽어왔던 독자라면 그 모임 회원의 이름을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Griffith 씨는 그가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신문사의 주장에 대해,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그와 연합했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기사에 대해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테러리스트 무리”라는 표현은 과장된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 논란과 관련

된 다른 표현들과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표현은 지역 기금에 대한 싸움과 관련된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그 기사를 읽은 어떤 사람도 이 발언을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고, 기사의 첫 번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술만 담은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테러리스트가 Richmond에 공연 센터가 들어선다는 희망을 앗아갔다”는 맥락을 함께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테러리스트 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 해외여행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위원회는 논의를 촉진시키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식하는 것이 신문사의 의무임을 믿는다고 설명하면서 위원회의 원칙들 중,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불만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명예에 관한 범죄’ 증가추세..1만4천 명 입건

대검찰청은 올해 1~9월 ‘명예에 관한 범죄’로 1만4천여 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세분화하면 명예훼손 혐의 입건자가 7천3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모욕 혐의 4천300여 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온라인) 1천800여 명,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691명, 사자(死者) 명예훼손 32명 등이다.

명예에 관한 범죄 입건자는 2006년 1만7천여 명에서 2007년 1만9천여 명으로 증가추세이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입건자는 2006년 3천100여 명, 지난해 3천600여 명인 반면 올해 9월까지 1천

800여 명으로 월별 평균 입건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을 계기로 불법 사실정보지(속칭 찌라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2008년 10월 6일

법원 “‘BBK 의혹 보도’ 한나라당 명예훼손 아니다”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원이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한나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8일 ‘이명박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이 과거에 회사를 세우고 투자하는

등 사적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가 후보가 됐다는 등 한나라당의 업무에 관한 문제제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당선 가능성이 떨어져 소속 정당의 집권 가능성이 작아지는 등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기사 때문에 당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직접 저하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와 BBK투자자문을 거쳐 이명박 후보가 설립한 LKe뱅크 등에 투자됐고 BBK와 LKe 사이의 금전 거래로 미뤄볼 때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이 후보와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후보 추천에 관한 당의 내부 검증 과정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2008년 10월 8일

프랑스, 명예훼손에 엄격 ... 타인 비방하면 가중처벌

프랑스에선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 한국 같은 개념의 포털이 없고 댓글 문화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출판물 등 수단을 불문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모욕죄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인터넷 댓글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은 특히

국적이나 인종, 출신 지역, 성별, 성적 경향, 신체 장애 등을 거론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경우 가중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6월 이하의 징역이나 4,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결은 더욱 엄격하다.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허락받지 않은 사생활 공개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다.

올 초에 공개된 ‘거액 배상 톱 10’에는 프랑스의 ‘국민 앵커우먼’인 클레르 샤잘 등 유명 방송인들이 다수 포함됐는데 금액이 수억~수십억 원에 이르렀다. 여름 휴가 기간 중에 애인과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했다거나 그들의 이혼 스토리를 세세하게 공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중앙일보 2008년 10월 10일

법원, 허경영 항소심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 선고

지난 해 17대 대선에 출마해 술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 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9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 씨가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표와 결혼설을 주장하지만 박 전 대표의 결혼의사가 없고 박 전 의원과 찍은 사진도 편집된 것으로 판단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며 “행사장에서 박 전 대표와 허 씨가 찍은 사진도 박 전 대표가 주변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허 씨가 몰래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정치인 중 유일하게 초청돼 북핵 문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 5분간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허 씨의 주장도 당시 허 씨 말고 또 다른 한국 인사가 초청됐다는 점, 초청장의 문법이 틀리는 등 자료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점, 당시 허 씨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부시 대통령과의 독대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허 씨가 항소심 마지막에 와서야 취임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2,500달러의 금전을 지급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허 씨 발언의 신빙성은 더욱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는 허 씨의 주장도 입증할 자료들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관련자들도 사실관계를 부정해 사실 무근인 것으로 보인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북핵 정책 비밀 보좌관이라는 주장 역시 당시 의전 일지에 허 씨에 대한 기록이 없고 박 전 대통령 시절 고등학교를 졸업한 허 씨가 북핵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갖췄을 것이라고도 예상되지 않아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계속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허 씨 주장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믿지 않을 것으로 추측돼 원심의 판결보다 중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허 씨는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수십 명의 지지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입장한 뒤 시종일관 여유로운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오히려 허 씨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흥분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허 씨 측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함께 초청됐다는 손길승 전 전경련 회장과 당시 주미대사였던 한승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와 기사를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하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2008년 10월 9일

‘내부고발’ 감사원 前직원 무죄 확정

1996년 ‘효산론도 특혜’ 감사 중단 의혹을 폭로한 전 감사원 직원에 대해 수차례 재판이 반복된 끝에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감사원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준희(55) 전 감사원 직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씨는 1996년 총선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국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감사를 중단시켰

다.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감사원에 의해 고소를 당한 현 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02년 대법원은 “현 씨의 기자회견은 감사원 간부 등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원 간부가 콘도 승인 관련 부분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해 더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뚜렷한 이유 없이 감사가 중단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간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씨가 ‘외압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어 공표 내용이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씨의 양심선언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 간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 주장은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2008년 11월 14일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 인터넷매체 보도는 명예훼손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인터넷 언론 매체 프런티어타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8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언론이 보도를 할 때는 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의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외에는 원고 일행이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사건발생 6일이나 지나서야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던 기자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다”며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7회에 걸쳐 반복하는 등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지난 2005년 12월 27일자 기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전북지역 폭설피해현장에서 양주파티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양주가 아닌 복분자병인 것으로 밝혀지자 보도 3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매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은 500만 원을 2심은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률신문 2008년 11월 28일

일본, 포털에 댓글 관리 책임

일본에선 댓글을 올리는 개인보다 인터넷 사이트 관리·운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과 악플 등 피해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2002년에 만든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때문이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사이트 운영자는 악플 등을 삭제하고, 이를 올린 발신자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터넷상의 인권 침해 보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법무성에 따르

면 지난해 418건으로 2002년의 5.6배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개별적으로 만든 사이트(10만5000여 개 추산)는 악플과 집단 따돌림(이지메)의 온상이 됐고, 이로 인해 등교 거부·자살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그러자 문부과학성은 피해 사례·해결책을 담은 ‘인터넷 이지메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올 7월에는 ‘정보 도덕지도 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 또 학생

들의 비공식 사이트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 경찰청은 초·중·고 학교를 돌면서 매년 한 차례씩 ‘안전교육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교통안전·유괴 예방 방법을 소개했으나 2년 전부터 만남 사이트·악플·사기 등 인터넷 범죄 예방 방법과 인터넷 댓글 매너 중심으로 바꿨다. 사이버 범죄 상담실과 관련 비영리법인 상담 전화번호 등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중앙일보 2008년 10월 10일

동아 ‘국감향응 성접대’ 소송 패소

지난해 10월 국감의원들이 피감기관에서 거액의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지난 8일 당시 논란의 당사자였던 임인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동아일보 오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등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저녁식사

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성접대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위보도로 인해 임 전 의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기자가 성 접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내보내 임 전 의원이 공천에 탈락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감의원들의 향응

제공 보도는 공익적인 문제인데다 임 전 의원도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해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동아일보가 국감의원들이 거액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보도 때문에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되는 징계를 받아 소송을 냈다.

미디어오늘 2008년 10월 15일

포털업계, 악플과의 ‘전쟁’

포털업계가 악플과의 전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N의 인터넷포털 네이버는 최근 명예훼손과 저작권침해 등 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물 의 열람을 임시로 차단하는 게시중단 서비스 신청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편했다.

기존에는 게시중단을 신청하려면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 만에 간편하게 게시중단 서비스 요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게시중단을 요청한 뒤 직접 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으로 악플을 만들어내는 ‘재료’ 격인 각종 악성 루머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

다.

다음 또한 최근 뉴스 댓글 서비스를 개편, 악플의 부작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다음 뉴스 서비스에서는 댓글 내용이 뉴스 화면 하단에 그대로 노출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댓글 내용 대신 댓글 수만 보이도록 바뀌었다. 이용자 들이 댓글 내용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의견보기’를 클릭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인터넷 윤리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퀴즈 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 윤리교육에도 나서기로 했다.

2006년부터 싸이월드를 통해 인터넷 안전실명제를 실시해온 SK커뮤니케이션즈 역시 회원들이 직접 참가하는 ‘선플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싸이월드는 캠페인 미니홈피에서 홍보용 이미지를 스크랩하고 댓글을 다는 회원에게 미니홈피 꾸미기 아이템을 증정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하루에만 25만 명이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싸이월드는 선플달기국민운동 본부와 함께 선플달기 서명운동도 벌이는 등 다양한 회원 참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KTH의 과란 역시 온라인 토론 서비스 ‘티위’에 악플 필터링 및 검색 기능을 개편하고 댓글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상습적으로 악플을 남기는 회원들 ‘공개수배’, 발언권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2008년 10월 22일

출판사 및 저자들, ‘국방부 불온서적’ 관련 2억 원 손해소

국방부가 북한찬양 및 반자본주의 등을 이유로 군 반입을 금지한 ‘불온서적’들의 저자와 출판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출판업계 및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녹색평론사, 후마티나스 등 11개 출판사와 ‘불온서적’의 저자 11명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금서조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행위”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불온서적’의 지정이 언론에 보도돼 전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마치 해당 저자들 및 출판사들의 사상이 반사회적, 반정부적인 것으로 낙인 찍혔다”며 “이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출판사 및 단독 저자 16명에게는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공동저자 6명에게는 500만 원씩 모두 1억9000만 원을 배상하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신문광고도 게재토록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7월 ‘불온 서적’의 군내 반입 차단을 전군에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가 선정한 ‘불온서적’은 시인 ‘김남주 평전’과 동화작가 권정생의 ‘우리들의 하느님’, 조선소 여성노동자 출신인 김진숙의 ‘소금꽃 나무’, 프레시안 특별취재팀의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세계화의 그늘과 해법을 담은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미국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 23권이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는 2003년 한 방송의 책 소개 프로그램에서 권장도서로 뽑혀 수십만 부가 팔렸으며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지난해 10만 부 이상이 판매했다. 또 ‘북한의 우리식 문화’는 대학 교양수업 교재로도 널리 쓰이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 책을 북한찬양서적으로 분류했다.

이 중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책들은 ‘지상에 순가락 하나’, ‘소금꽃나무’, ‘해과 한반도’ 등 모두 18권으로, 중북출판사와 저자 등을 포함해 11개 출판사와 11명의 저자가 소송에 참여했다.

뉴시스 2008년 10월 27일

- 강경근(2008. 가을). 포털 뉴스 피해구제에 관한 언론 중재법 검토. 언론중재, 통권 108호, 4-17.
- 권헌영(2008. 가을). 법원의 판단으로 본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 언론중재, 통권 108호, 18-32.
- 김경호(2008. 가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의 자유와 법적, 윤리적 한계. 언론중재, 통권 108호, 57-71.
- 김상훈(2008. 9월). 광고불매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 민주주의 근간 위협하는 지나친 소비자운동. 신문과 방송, 통권 453호, 162-165.
- 김성곤(2008. 가을). 포털 뉴스서비스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찰. 언론중재, 통권 108호, 4-17.
- 김영주(2008. 11월). 미디어 산업 내 비대칭 규제 : 현황과 쟁점들. 미디어 인사이드, 통권 8호, 2-50.
- 김진웅(2008).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성. 한국방송학회 주최 디지털 시대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무 세미나 발제문. 2008. 12. 4.
- 김창룡(2008. 가을). 개인미디어와 인격권. 언론중재, 통권 108호, 82-89.
- 남재일(2008). 언론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대전지방토론회 발제논문. 2008. 9. 23.
- 문재완(2008. 10월). 18대 국회 미디어 법안 쟁점과 전망 - 인터넷 포털, 언론중재법 적용 여부에 관심. 신문과 방송, 통권 454호, 32-35.
- 박기옥(2008. 9월). 사행확보도 강화하는 법원, 제약받는 저널리즘 활동(일본) - NHK, 위안부프로그림 소송 최고재판소 승소. 신문과 방송, 통권 453호, 180-183.
- 박소라,우형진,이재진(2008). 케이블TV방송 디지털 법제화 필요성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8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디지털 시대 공정경쟁 환경에서의 케이블TV 방송의 생존전략과 법제도화 방안 발제문. 2008. 11. 15.
- 박주연(2008. 9월). IPTV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 그 현안과 전망. 미디어 인사이드, 통권 6호, 54-79.
- 성낙송(2008). 언론관례상 면책법리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위원회·법원 언론법 분야 연구회 공동 주최 세미나 발제논문. 2008. 11. 21 ~ 22.
- 심재웅(2008). 온라인에서의 자아표출(self-expression)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방송과 뉴미디어 분과 주최 UCC와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발제문. 2008. 11. 21.
- 안현우(2008. 10월). 방통위 방통기본법안 무엇이 담겨 있나. 방송문화, 통권 325호, 10-13.
- 양재규(2008. 9월). 법을 알고 기사쓰기 30 - 연예보도에 관한 법적 쟁점 살펴보기(2). 신문과 방송, 통권 453호, 140-143.
- 양재규(2008. 10월). 법을 알고 기사쓰기 31 - 기업보도에 관한 법적 쟁점 살펴보기. 신문과 방송, 통권 454호, 118-121.
- 양재규(2008. 11월). 법을 알고 기사쓰기 32 - 미성년자 보도에 관한 법적 쟁점 살펴보기. 신문과 방송, 통권 455호, 128-131.
- 유선영(2008. 10월). 10대의 미디어 이용, 사회적 소통과 현실인식. 미디어 인사이드, 통권 7호, 2-37.
- 윤석년(2008). 방송 공공성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 한국언론학회 주최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추진과 방송 공공성 세미나 발제문. 2008. 10. 9.

- 이남표(2008, 10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과 방송의 공공성. 방송문화, 통권 325호, 14-17.
- 이동후(2008). 국내 UCC 관련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 및 관련 사례분석. 한국언론학회 방송과 뉴미디어 분과 주최 UCC와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발제문. 2008. 11. 21.
- 이영주(2008). 미디어의 공공성, 공정성, 공익성? - 개념들의 경합, 모호한 미디어 사상.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미디어 공공성의 이론적 조명 세미나 발제문. 2008. 11. 28.
- 이재진(2008).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변화와 법적 쟁점. 언론중재위원회·법원 언론법 분야 연구회 공동주최 세미나 발제문. 2008. 11. 21 ~ 22.
- 이종욱(2008, 9월). 사생활보호 강화하는 법원, 제약받는 저널리즘 활동(유럽) - F1 회장 섹스 파티 보도에 영국법원 배상금 지급 판결. 신문과 방송, 통권 453호, 175-179.
- 전영우(2008, 9월). 광고불매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 미국서도 당연히 인정받는 소비자들의 표현 자유. 신문과 방송, 통권 453호, 158-161.
- 정동훈(2008). 프라이버시 침해 경고메시지 노출효과 분석. 한국언론학회 방송과 뉴미디어 분과 주최 UCC와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발제문. 2008. 11. 21.
- 정용준(2008). 수평적 규제 패러다임에서 지상파방송의 위상과 역할. 한국언론학회 주최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추진과 방송 공공성 세미나 발제문. 2008. 10. 9.
- 정용준(2008).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 한국방송학회 주최 디지털 시대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무 세미나 발제문. 2008. 12. 4.
- 정준희(2008). 공공가치(Public Value) 개념을 통한 영국 공공서비스 방송의 정당화 기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미디어 공공성의 이론적 조명 세미나 발제문. 2008. 11. 28.
- 주재원(2008, 10월). 영국은 지상파방송 수직적 결합 예외적 허용. 방송문화, 통권 325호, 18-23.
- 최민재(2008, 10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규제정책. 미디어 인사이드, 통권 7호, 38-74.
- 최영목(2008).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본 통합법제화의 의미와 문제점. 한국언론학회 주최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추진과 방송 공공성 세미나 발제문. 2008. 10. 9.
- 한국언론재단(2008, 10월). 세계의 언론법제 - 정보공개와 언론, 2008년 하권, 통권 제24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상혁(2008, 10월). 판례로 보는 방송과 법 이야기 3 -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상당성 판단. 방송문화, 통권 325호, 66-69.
- 함석천(2008, 가을). 공적사항·공인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에 대한 소고. 언론중재, 통권 108호, 45-56.
- 홍수원(2008, 9월). 사생활보호 강화하는 법원, 제약받는 저널리즘 활동(미국) - '탄저균 테러 용의자 사건'에 휘말려 곤혹 겪는 기자들. 신문과 방송, 통권 453호, 170-174.
- 황치성(2008, 9월). 수용자가 본 '촛불정국과 언론'. 미디어 인사이드, 통권 6호, 2-52. □